

#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2006. 12.

연구책임자: 서 문 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미 화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 은 설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 세 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농 립 부  
육 아 정 책 개 발 센 터



#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림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욱



# 목 차

요약 .....	ix
<b>I. 서론 .....</b>	<b>1</b>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2
4. 선행연구 .....	6
4. 연구의 제한점 .....	10
<b>II. 농어촌 육아지원 정책 .....</b>	<b>11</b>
1. 농어촌의 특성 .....	11
2.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 .....	14
3. 외국의 육아지원 .....	26
<b>III.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b>	<b>33</b>
1. 보육시설 설치 .....	33
2.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	36
3. 정책시사점 .....	43
<b>IV.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 .....</b>	<b>45</b>
1. 일반 보육시설 운영 현황 .....	45
2.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	70
3. 정책시사점 .....	80
<b>V. 보육서비스 이용과 욕구: 의성군과 화순군의 사례 .....</b>	<b>83</b>
1. 일반적 특성 .....	83
2.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	93
3. 보육교육기관 이용 .....	96
4. 개인양육 지원 .....	115
5. 보육 관련 요구 및 의견 .....	117
6.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이용 및 요구 .....	129
7. 정책시사점 .....	135

<b>VI. 농어촌 보육 정책방안</b> .....	<b>137</b>
1. 기본방향 .....	137
2. 접근성 제고 .....	139
3. 비용 부담 완화 .....	144
4.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	145
5. 보육시설 운영 .....	147
6. 보육 지원체계 .....	149
7. 보육시설 공급 우선 고려 지역(안) .....	150
<b>VII. 맺는 말</b> .....	<b>167</b>
<b>참고문헌</b> .....	<b>169</b>
<b>부록</b> .....	<b>171</b>

# 표 목 차

〈표 I-3- 1〉 조사완료 보육시설의 특성 .....	4
〈표 I-3- 2〉 주민등록 아동 및 조사 대상 아동 .....	5
〈표 I-3- 3〉 조사완료 아동의 특성 .....	5
〈표 II-1- 1〉 도시화율 변화추이(1960~2000년) .....	11
〈표 II-1- 2〉 연도별 0~5세아 거주지역 비율 .....	11
〈표 II-1- 3〉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의 변동추이 .....	12
〈표 II-1- 4〉 농업부문의 생산과 성장률 .....	13
〈표 II-1- 5〉 도시근로자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율 .....	14
〈표 II-2-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	15
〈표 II-2- 2〉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	16
〈표 II-2- 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	18
〈표 II-2- 4〉 유치원 및 유치원 취원아동 현황 .....	19
〈표 II-2- 5〉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2004~2006) .....	21
〈표 II-2- 6〉 보육·교육비 지원체계: 2006 .....	21
〈표 II-2- 7〉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	22
〈표 II-2- 8〉 여성농어민센터 위탁자 .....	23
〈표 II-2- 9〉 여성농업인센터 위탁 시작년도 .....	23
〈표 II-2-10〉 여성농업인센터 건물 소유형태 .....	23
〈표 II-2-11〉 여성농업인센터 직원 수 .....	24
〈표 II-2-12〉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사업 비중 .....	24
〈표 II-2-13〉 농촌 보육·정보센터 사업 현황: 2006 2/4분기 .....	25
〈표 III-1- 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	33
〈표 III-1- 2〉 연령별 보육시설 아동 정원 분포 .....	34
〈표 III-1- 3〉 유치원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	34
〈표 III-1- 4〉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현황 1 .....	35
〈표 III-1- 5〉 보육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복수응답) .....	35
〈표 III-2- 1〉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현황 2 .....	36
〈표 III-2- 2〉 군내 보육시설 충분 여부 .....	37
〈표 III-2- 3〉 보육시설 설치 필요 여부 .....	37
〈표 III-2- 4〉 보육시설 설치 불필요 이유 .....	37
〈표 III-2- 5〉 보육시설 설치시 걸림돌 .....	38
〈표 III-2- 6〉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및 추가 설치 필요에 대한 공무원 의견 .....	39

〈표 III-2- 7〉	공립보육시설 설치시 가능한 기존 건물 .....	42
〈표 III-2- 8〉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	42
〈표 III-2- 9〉	영유아별 기존건물을 활용해 보육시설 설치 시 적합한 건물유형 .....	43
〈표 IV-1- 1〉	보육시설 건물형태 .....	45
〈표 IV-1- 2〉	지역별 설립유형 및 지역별 임대여부 .....	46
〈표 IV-1- 3〉	보육시설 위치 층 .....	47
〈표 IV-1- 4〉	영아정원 충족 현황 .....	47
〈표 IV-1- 5〉	유아정원 충족 현황 .....	48
〈표 IV-1- 6〉	취학아동 정원 충족 현황 .....	48
〈표 IV-1- 7〉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다고 답한 이유 .....	49
〈표 IV-1- 8〉	보육시설 총 운영시간 .....	50
〈표 IV-1- 9〉	운행 차량 수 .....	50
〈표 IV-1-10〉	차량 운행 읍·면 수 .....	51
〈표 IV-1-11〉	차량운영 경우 1일 운행거리 및 월평균 소요비용 .....	52
〈표 IV-1-12〉	보육시설의 차량 소유 특성 .....	52
〈표 IV-1-13〉	차량이용 최장 등원 시간 .....	53
〈표 IV-1-14〉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유무 .....	53
〈표 IV-1-15〉	12개월 미만 영아의 보육료 .....	54
〈표 IV-1-16〉	만1세아의 보육료 .....	54
〈표 IV-1-17〉	만2세 영아의 보육료 .....	55
〈표 IV-1-18〉	만3세 이상 유아의 보육료 .....	56
〈표 IV-1-19〉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비용 .....	56
〈표 IV-1-20〉	평가인증 계획 .....	57
〈표 IV-1-21〉	난이도가 높은 평가인증 기준 .....	58
〈표 IV-1-22〉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 최종학력 특성 .....	58
〈표 IV-1-23〉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 소지자격 특성 .....	59
〈표 IV-1-24〉	미자격 교사수 .....	59
〈표 IV-1-25〉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의 근무연수와 급여 .....	60
〈표 IV-1-26〉	경력이 가장 긴 교사의 근무연수와 급여 .....	61
〈표 IV-1-27〉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의 월평균 보수 .....	61
〈표 IV-1-28〉	교사채용이 어려웠던 경우 .....	62
〈표 IV-1-29〉	교사채용이 힘든 이유 .....	62
〈표 IV-1-30〉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동 .....	64
〈표 IV-1-31〉	어머니가 미취업모인 아동 .....	64
〈표 IV-1-32〉	조손가정 아동 .....	65
〈표 IV-1-33〉	0~만4세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전체) .....	66
〈표 IV-1-34〉	지원유형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 .....	66



〈표 IV-1-35〉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	67
〈표 IV-1-36〉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 아동 .....	67
〈표 IV-1-37〉	보육료 장기미납 아동유무 .....	68
〈표 IV-1-38〉	보육료 부담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유무 .....	69
〈표 IV-1-39〉	시설장의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움점 .....	69
〈표 IV-1-40〉	공무원이 인식한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움의 정도 .....	70
〈표 IV-1-41〉	공무원이 인식한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움의 이유 .....	70
〈표 IV-2- 1〉	여성농업인센터장의 보육시설장 겸직 .....	71
〈표 IV-2- 2〉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장 자격 .....	71
〈표 IV-2- 3〉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사용 층 .....	71
〈표 IV-2- 4〉	여성농업인센터 면적 중 보육시설 면적 .....	72
〈표 IV-2- 5〉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보육 운영시간 .....	72
〈표 IV-2- 6〉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정원 충족 .....	73
〈표 IV-2- 7〉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정원 미충족 이유 .....	73
〈표 IV-2- 8〉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월 보육료 .....	74
〈표 IV-2- 9〉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보육교사 자격, 연수 및 급여 .....	74
〈표 IV-2-10〉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교사 수급의 어려움과 이유 .....	75
〈표 IV-2-11〉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차량 운행 현황 .....	75
〈표 IV-2-12〉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차량 프로그램 .....	76
〈표 IV-2-13〉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인식한 인근지역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	76
〈표 IV-2-14〉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및 평가인증의 어려움 .....	77
〈표 IV-2-15〉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의견 .....	77
〈표 IV-2-16〉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특기교육 .....	78
〈표 IV-2-17〉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 현황 .....	78
〈표 IV-2-18〉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아동 수 .....	79
〈표 IV-2-19〉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보육료 미납 아동 및 지원 비해당자 .....	79
〈표 IV-2-20〉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인식한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	80
〈표 IV-2-21〉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인식한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	80
〈표 V-1- 1〉	경상북도 의성군 조사지역 일반현황 .....	84
〈표 V-1- 2〉	경북 의성군 조사지역 영유아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	84
〈표 V-1- 3〉	전라남도 화순군 조사지역 일반현황 .....	86
〈표 V-1- 4〉	전라남도 화순군 조사지역 영유아 인구 .....	86
〈표 V-1- 5〉	가구원수 및 자녀수 .....	87
〈표 V-1- 6〉	영유아 가구의 농가여부 .....	87
〈표 V-1- 7〉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	87

〈표 V-1- 8〉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	88
〈표 V-1- 9〉 영유아의 출생순위 .....	88
〈표 V-1-10〉 영유아별 부모와의 거주 현황 .....	89
〈표 V-1-11〉 영유아별 부 또는 모와 거주하지 않은 이유 .....	89
〈표 V-1-12〉 영유아별 부모와 별거 가정의 부모 양육비 지원 현황 .....	90
〈표 V-1-13〉 영유아별 부모의 최종 학력 .....	90
〈표 V-1-14〉 영유아별 부의 직업 형태 .....	91
〈표 V-1-15〉 영유아별 모의 직업 형태 .....	91
〈표 V-1-16〉 아동연령 구분별 모의 취업여부 .....	92
〈표 V-1-17〉 전국 아동구분별 현재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	92
〈표 V-1-18〉 영유아별 가정 내 보육 시간이 가장 많은 보호자 유형 .....	93
〈표 V-2- 1〉 영유아별 보육·교육 기관의 경험 및 형태 .....	94
〈표 V-2- 2〉 영유아별 기관의 첫 이용의 이유 .....	94
〈표 V-2- 3〉 영유아별 보육시설 이용 중 중단한 경험의 유무 .....	95
〈표 V-2- 4〉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중 중단한 이유 .....	95
〈표 V-3- 1〉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 유형 .....	96
〈표 V-3- 2〉 연령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 유형 .....	97
〈표 V-3- 3〉 읍면지역 기관 이용 이유 비교: 2004 .....	98
〈표 V-3- 4〉 영유아 및 기관별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다니는 이유 .....	98
〈표 V-3- 5〉 지역별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다니는 이유 .....	99
〈표 V-3- 6〉 영유아별 현재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선택한 이유 .....	99
〈표 V-3- 7〉 영유아별 현재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선택한 이유 .....	100
〈표 V-3- 8〉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선택 기준 .....	100
〈표 V-3- 9〉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선택 기준 .....	101
〈표 V-3-10〉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 빈도 .....	102
〈표 V-3-11〉 영유아 이용 기관 등원시간 .....	102
〈표 V-3-12〉 영유아 이용 기관 퇴원시간 .....	102
〈표 V-3-13〉 제 특성별 보육시설 등원부터 하원까지 시간 .....	103
〈표 V-3-14〉 특별활동 실시 비율 .....	103
〈표 V-3-15〉 특별활동 이수시 비용 지불 .....	104
〈표 V-3-16〉 영유아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실태 .....	104
〈표 V-3-17〉 영유아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수급 대상 유형 .....	105
〈표 V-3-18〉 영유아별 보육·교육비 .....	105
〈표 V-3-19〉 영유아별 보육·교육료에 대한 부담 정도 .....	106
〈표 V-3-20〉 영유아별 보육·교육료에 대한 부담 정도 .....	107
〈표 V-3-21〉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방법 .....	107
〈표 V-3-22〉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방법 .....	108

〈표 V-3-23〉	기관별 아동 등·하원 방법 .....	108
〈표 V-3-24〉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소요시간 .....	109
〈표 V-3-25〉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소요시간 분포 .....	109
〈표 V-3-26〉	연령별 보육·교육 시설(기관)과 아동 거주지와의 관계 .....	110
〈표 V-3-27〉	영유아별 이용 시설(기관)의 근접도 .....	110
〈표 V-3-28〉	영유아별 이용 시설(기관)의 근접도 .....	110
〈표 V-3-29〉	영유아별 가까운 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11
〈표 V-3-30〉	영유아별 이용 중인 시설(기관)의 서비스 질적 만족도 .....	112
〈표 V-3-31〉	영유아별 이용 중인 시설(기관)의 서비스 질적 만족도 .....	112
〈표 V-3-32〉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만족도 .....	112
〈표 V-3-33〉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만족도 .....	113
〈표 V-3-34〉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불만족의 이유 .....	113
〈표 V-3-35〉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불만족의 이유 .....	114
〈표 V-3-36〉	영유아별 이용중인 시설(기관)을 그만둔 후 선호기관 .....	114
〈표 V-4- 1〉	영유아별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유형 .....	115
〈표 V-4- 2〉	영유아별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장소 .....	116
〈표 V-4- 3〉	영유아별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비용의 지불 유형 .....	116
〈표 V-4- 4〉	영유아별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집을 비우는 경우의 유무 .....	117
〈표 V-5- 1〉	영유아별 일반적 보육시설 설치수의 만족도 .....	118
〈표 V-5- 2〉	주변에 아이를 위탁할 만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수 .....	118
〈표 V-5- 3〉	조사대상자 전체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충분성에 대한 의견 요약 .....	119
〈표 V-5- 4〉	영유아별 취학전까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희망 이용도 .....	119
〈표 V-5- 5〉	영유아별 현재 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20
〈표 V-5- 6〉	영유아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21
〈표 V-5- 7〉	연령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21
〈표 V-5- 8〉	영유아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22
〈표 V-5- 9〉	연령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22
〈표 V-5-10〉	영유아별 자녀 양육지원 방안의 선호도 .....	124
〈표 V-5-11〉	취약보육 필요성 .....	125
〈표 V-5-12〉	영유아별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	125
〈표 V-5-13〉	영유아별 야간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	125
〈표 V-5-14〉	영유아별 24시간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	126
〈표 V-5-15〉	영유아별 휴일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	126
〈표 V-5-16〉	영유아별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도 .....	127
〈표 V-5-17〉	보육모 파견에 대한 의견 .....	128
〈표 V-5-18〉	주민 단기교육후 보육모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128
〈표 V-5-19〉	이동식 보육차량에 대한 의견 .....	128

〈표 V-6- 1〉 초등학생 학년별 귀가 시간 .....	129
〈표 V-6- 2〉 초등학생 학년별 귀가 후 활동 .....	130
〈표 V-6- 3〉 초등학생의 총 일반학원 이용 .....	131
〈표 V-6- 4〉 초등학생 학년별 방과 후 활동 소재지 .....	131
〈표 V-6- 5〉 초등학생 학년별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여부 .....	132
〈표 V-6- 6〉 초등학생 공부방 및 보육기관의 필요성 인지도 .....	132
〈표 V-6- 7〉 초등학생 학년별 공부방 및 보육기관을 원하는 이유 .....	133
〈표 V-6- 8〉 초등학생 학년별 아동들만 집에 남게 되는 경우 .....	134
〈표 VI-6- 1〉 농어촌 보육정책 방향 개요 .....	150
〈표 VI-7- 1〉 보육시설 미설치 및 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	151
〈표 VI-7- 2〉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	152

## 그림 목차

〈그림 II-1- 1〉 도시근로자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교 .....	13
〈그림 V-1- 1〉 경북 의성군 특성 .....	84
〈그림 V-1- 2〉 전라남도 화순군 특성 .....	86
〈그림 VI-2- 1〉 농어촌 복합센터의 주요 기능 .....	140
〈그림 VI-7- 1〉 경기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59
〈그림 VI-7- 2〉 강원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0
〈그림 VI-7- 3〉 충청북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1
〈그림 VI-7- 4〉 충청남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2
〈그림 VI-7- 5〉 전라북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3
〈그림 VI-7- 6〉 전라남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4
〈그림 VI-7- 7〉 경상북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5
〈그림 VI-7- 8〉 경상남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166

# 연구요약

## 1. 서론

###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농촌지역 영유아의 과소화, 접근성 제한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지역 특성과 보육 관련 제도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한다.
  -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다.
  - 농어촌 일반 및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 농어촌 아동의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 농촌지역 아동 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 등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나.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및 통계 수집 및 분석, 네 가지 종류의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보육시설과 관련된 기존문헌,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수집·분석
  -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와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344개소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북 의성군, 전남 화순군 각 3개면 거주아동 261명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조사 실시
    - 여성농업인센터 3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자우편으로 조사
    - 86개 군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보육실태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 다. 선행연구

- 농어촌 보육 정책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로,
  - 농림부 지원으로 김경희(2000)가 농촌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보육기관, 양육 책임자

인 부모지원, 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지성애(1997, 1999, 2003)는 보육이 발전되고 변화되어 감에 따라 각 시기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 지성애 외(1998), 홍혜경 외(1997)는 농어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를 살펴보았다.
  - 지성애·박희숙(2000)은 농촌이 도시보다 보육 이용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 농어촌 보육 모형 연구(서문희 외, 2004)에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보육을 농어촌 복지의 일환으로 다룬 연구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명채 외, 199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조홍식 외,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대식 외, 2001; 박대식 외, 2004; 박대식 외,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백화종 외, 2003) 등이 있다.

## 2. 농어촌 육아지원 정책

### 가. 농어촌의 특성

- 도시화로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
- 0~5세 인구의 읍·면 거주 비율은 2000년 읍 9.3%, 면 9.2%로 모두 18.2%이다. 이는 1980년 40.8%, 1990년 20.0%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을 나타낸다.
-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

### 나.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

#### 1) 여성가족부 농어촌 보육정책

- 읍·면에는 법인보육시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불균형하다.
- 2006년 6월 현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은 4,149개이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14.4%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250개소이고, 법인보육시설이 578개소이다.
  - 보육아동 정원은 모두 228,345명으로 전체 보육정원의 18.25%이다.
  - 2개 읍, 474개 면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여성가족부의 농어촌 보육정책은 일반 보육정책에 차량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일부 정책이 추가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은 월 20만원이다.

## 2)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 유치원은 8,292개소 중 농어촌 지역에 39.8%인 3,30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농어촌 지역 유치원 중 82.3%, 도서벽지는 유치원 중 93.7%가 공립유치원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6월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2004년부터는 만 3, 4세도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 3) 농림부 정책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의 50%(만5세아는 100%) 수준이고,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 4) 지방정부 사업

- 여성농업인센터가 2006년 현재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다.
  -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두고 있다.
  - 여성농업인센터 중 73.5%가 보육사업이 센터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은 민간 시설이다.
- 농촌보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가 11개시군에 걸쳐 현재 12개소를 설립하였다.
  -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하였고, 이외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적정한 모형으로 인식된다.

#### 다. 외국의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국가의 농촌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보여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둘째, 구체적 보육확충 방안으로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 친인척보육 등 소규모 보육이 우선시 되고, 기존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셋째, 농촌보육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3.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현황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은 차량을 운행하며, 여러 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 농촌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한 개의 보육시설이 최대 15개,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최대 11개의 면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거리는 편도 133km로 월 16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 영아반은 유아반보다 정원미달이 적고 정원초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반의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다고 보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 및 교사인력 등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아 보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아의 보육을 맡고 있는 소수의 시설에 영아가 집중됨으로써 정원초과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방과후 보육 역시 정원초과가 많아, 보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영아 및 방과후 보육의 수요에 근거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을 융통적으로 가능케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 농어촌 보육시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료보다 낮은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장기간 미납 아동과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또한 많았다.
  - 농어촌에 거주하나 농어업 직군에 속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읍면 소재지가 아닌 등의 이유로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보육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기본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요 부담도 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한데, 주요 이유가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문화환경과 급여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아동대 교사 비율, 반 운영, 평가인증 기준 등의 탄력적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조사된 보육시설 중 25.0%는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1%, 34.2%로 높았다.
- 농어촌은 일하는 여성 비율이 높고, 조손가정, 국제 결혼 가정의 아동이 상당수이다. 특별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은 임대시설로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 개보수가 수월하지 않으며, 민간시설로 운영되는 등 운영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조사 결과 농어촌 보육시설은 도시보다 교류와 접근성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으며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많은 터에,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수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의 보육시설과는 차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 4. 보육서비스 이용과 욕구 현황

- 농어촌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등 퇴원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아동조사에서는 차를 타는 시간은 평균 최대 90분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기관조사에서는 120분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면 지역 아동의 17%가 편도 1시간 이상 차를 탄다.
  - 부모의 99%가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가거나 볼 일을 보러가는 경우가 많다. 응답자들 대다수도 가까운 거리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 농어촌의 유치원은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운영시간, 차량운행의 적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수의 아동이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아직도 비용이 보육기회의 장애가 되는 아동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 조사지역 아동의 65~70%가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이고 보육료·교육비 혜택이 없는 아동은 18%이다. 그러나 약 40%의 보호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다. 유아 미이용자 중 25.0%는 비용부담을 미이용 이유로 들었다. 의성군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이동 중 29.0%가 비용이 비싸서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제공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실태는 야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요구 비율이 높고, 특히 농번기 때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며, 휴일 및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농어촌에도 특수보육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농번기 등에는 별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농어촌에 보육대체 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는 대리보호 이외에 자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어촌 부모의 아동 발달 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확보 측면에서 일정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 의성군에서는 아동 사회성 발달을 이유로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보다는 다른 면의 조금 큰 병설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 동거조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 기관 미이용 이유가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농어민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수요 발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시설에 영아보육 대기아가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농어촌에는 모 및 부가 없는 아동의 비율이 높다.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산다는 아동은 의성군 21.9%, 화순군 13.5%로 높다. 또한 편부 편모의 비율도 높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가 있다. 단순한 비용 지원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면 지역 아동 가구의 농가 비율은 71.4%이다. 농어촌 지역 아동 모의 일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전업주부가 의성군 15%, 화순군 30%이고 그 이외는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특성상 가족무급종사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하는 형태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농번기 등 시기별로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방과후 학원 이용은 약 반 정도가 타 면에 위치한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의성군은 17.0%의 이동이 학교 정규 이후에 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고, 특히 학습지도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다.

## 5. 농어촌 보육 정책방안

### 가. 기본방향

-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affordability) 질 높은(quality) 보육 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accessability)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더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첫째, 읍·면 지역은 관할지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에의 접근성이 도시보다 떨어지므로 이를 제고하여야 한다.
- 둘째, 비용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료 지원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료를 장기간 미납 아동,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
- 셋째,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확보,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넷째,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모의 취업 특성, 조손가정, 국제 결혼 가정 아동 등 특별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농번기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어야 하며,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제 규정의 탄력적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 나. 접근성 제고 방안

□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시설의 설치

- 농어촌에 센터 형태의 복합시설을 설치한다. 단독기능 보다는 복합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2~3개면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용하도록 한다.
  - 복합시설의 기능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동시에 이들 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과, 여기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두는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 정부가 초기 설치비와 설치 후 운영비를 지원한다. 폐교나 초등학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교실은 정부가 설치 주체인 국공립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복합시설의 주체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설치비 확보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로 지원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내 보육시설 설치

- 초등학교 활용방안은 부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부처의 이원화로 인하여 중앙정부 결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협력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 유치원의 활용성 증대

- 농어촌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보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운영시간, 차량운행 등에서 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도록 한다.

□ 가정보육도우미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등 법규에 의하여 해당 지역 거주 인력 중 일정 학력 이상자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보육도우미 자격을 부여하고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지원기구로는 복합시설이나 인근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적절하다. 일주일에 아동과 함께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보육활동을 함께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차량 지원 및 안전

- 유류비용을 현재 20만원에서 차량수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아동의 차타는 시간을 일정 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소규모로 운영되는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거리는 편도 133km로 월 16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2004년 조사에서는 하루 6시간 운행에 월 200만원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 차량에는 교사가 동승하여 승하차시 안전과 차량 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정부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병설 유치원은 영유아 전용 소규모 차량을 마련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 집 가까이 와서 데려가고 데려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농번기 기간 동안에 한하여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한하여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및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을 마련한다.

다. 비용 부담 완화 방안

□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농어촌 거주 아동에 한하여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점차 전체 아동의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 만5세아 무상보육은 농어촌 거주 모든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 농어민 자녀 무상보육

- 부모나 보호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0~4세아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방안이다. 농림부 농어민 자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조부모·친인척 보호 아동 보육료 지원

- 조부모나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어도 시설장의 확인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방과후 보육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초등학교를 이용한 방과후 보육의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농어촌 아동의 교육 기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 농번기 특수보육 확충 및 비용 지원

-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제공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실태는 야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요구 비율이 높고, 특히 농번기 때 이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농어촌에도 특수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특히 농번기 등에는 별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번기에는 가정보육도우미 운영, 야간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와 더불어 아동보육료와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

□ 환경의 개선

- 농어촌 보육시설은 설비 등 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므로 이들 보육시설에 시설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의 지원 없이 열악한 시설을 단시일에 개선하기 어렵다.

□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보육시설들이 앞으로 마련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 다양한 활동 기회의 제한을 감안하여 전체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은 화순군 아동 7.7%, 의성군 아동 25.7%로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이용아동 평균 47.1%나 유치원 이용아동 42.3%보다 훨씬 낮다.
  -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의 일반학원 이용비율은 대도시 8.5%, 중소도시 10.1%, 읍면 6.7%이었다. 본 조사 지역인 면에 학원 이용 영유아는 없었다.

□ 인력관리

- 농어촌 지역의 보육인력 확보 및 이들의 사기양양 및 서비스의 질 도모를 위하여 보육인력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보육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하나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보조교사의 활용, 자원봉사의 활용 및 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 마. 보육시설 운영

##### □ 정원 및 교사대 아동 비율

- 아동의 연령 분포 특성 때문에 각 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으므로 농어촌에 한하여 아동 연령별 구분반 정원보다는 총 정원의 개념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정원을 초과하는 범위도 1인을 넘는 경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탄력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혼합반 운영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혼합반은 전체 아동 정원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 평가인증

- 농어촌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없는 시설도 다수이므로, 별도의 조력팀을 구성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을 방문 조력한다.
-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경우 농어촌 보육시설은 적용 시점을 몇 년 늦추어 도시와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교사 자격

- 농어촌 지역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를 통하여 해당 지역 보육시설에 서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사를 두는 방안이다.
  - 보육시설장 등 주변의 추천을 받아 일정학력 이상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군 인정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 이러한 교사로 인한 서비스의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보육교사 중 이러한 교사의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바. 협력 및 지원체계

- 지역사회 아동보육과 교육 부서의 협력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안한 가정보육도우미에게는 국공립보육시설, 복합센터 등이 지원체계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안)

-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을 검토하여 보육시설 미설치 면이 2개 이상이고, 이들 면이 밀집되어 있고 읍이나 인근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되

는 83개 시군구 140개 읍면에 우선적으로 보육시설, 복합센터의 설치 등 보육서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에 1개면, 인천시에 6개면을 우선 검토 지역으로 제안하였다. 인천시 옹진군은 대부분이 섬지역으로 아동수가 적어도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도는 강원도에 5개면, 충북에 11개면, 충남에 12개면에 우선 검토가 요구되고, 전라도는 전라북도 19개면, 전라남도 30개면이고, 경상도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29개면, 27개면으로 모두 133개면에 서비스 공급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 6. 맺는 말

- 농어촌 보육정책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인접 거리에서 보육기회 제공하여야 하는 과제 해결 방안으로 복합시설의 설치, 초등학교 유휴공간 및 유치원 활용, 가정보육도우미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 아동의 수, 농어촌 보육시설 교사 확보 어려움 등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 보육시설 미설치 면 중 우선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제시하였다. 실제 공급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읍·면지역은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아동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어 아동인구 밀도가 낮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나가게 되면서 농촌 인구 중 아동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출산수준이 낮아지면서 농촌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동인구 밀도는 더욱 더 희박해 지고 있다. 농어촌 가구의 소득수준은 도시 가계 평균소득 수준보다 낮고, 소득이 생기는 시기도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매달 균등하게 월급을 받는 도시와는 차이가 있다. 12세 미만 아동모의 취업률은 51.0%로 40% 수준인 도시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이들 취업자의 종사상의 위치를 보면 무급가족종사자가 17.6%를 차지하여 대도시 6.7% 및 중소도시 7.8%보다 훨씬 높고, 자영업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도 도시보다 약간씩 높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형태도 농번기, 농한기로 근로시간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육시설이 없는 면들도 많아서 개별 아동의 보육시설에의 접근성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시와는 차별성 있는 보육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차별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일부 정부의 보육정책과 유아교육 정책 중 농어촌에만 적용하는 정책들이 있다. 보육의 경우 농어촌 보육시설이 차량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전제에서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1인 및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100%(자부담 포함) 추가 지원한다. 유아교육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이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2004년부터는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다.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 규모 이하 농지 소유 농·어업인에 대해 부가적으로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지원 대상 산정 기준은 농지 5ha미만이며, 지원 금액은 5세 미만아는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다. 또한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sup>1)</sup>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희박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대규모 보육시설의 설치 등으로 보육시설에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농어촌의 독특한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지역은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위주로 운영

---

1) 지원액은 0세아 월 87.5천원, 만1세아 월 77천원, 만2세아 월 63.5천원, 만3~4세아 월 39.5천원, 만5세아 월 79천원임.



되고 있으나, 2005년말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474개 읍·면으로 1,420개 읍·면의 34%이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보육교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 신축이 저조하다. 특히 지역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체제가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면 지역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출산후 양육부담 등으로 출산기피 및 탈농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시와는 차별되는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및 도서벽지 거주 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 영유아의 과소화, 접근성 제한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운영 등 보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 보육 실태와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영유아 복지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지역 특성과 농어촌지역 보육 관련 제도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한다.

둘째,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농어촌 아동의 보육시설을 포함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 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미이용 이유 및 요구를 파악한다.

다섯째,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농촌지역 아동 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아울러 농어촌에 적절한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및 통계 수집 및 분석, 네 가지 종류의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기존 문헌 및 통계 분석

보육시설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지원부, 농림부, 각 시도 및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관련 통계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 나. 기존 자료의 재분석

2004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실시한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실태조사와 2004년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일부 재분석하여 농어촌 아동과 보육시설의 제 특성 및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다.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의 제 특성,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지역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여성농어민센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보육시설 조사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시설 실태조사 표본은 전국의 면 및 읍 지역 소재 보육시설이었다. 보육시설의 명단은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2004년도 보육시설 일람표를 이용하여 86개 군에서 각 보육시설 유형별로 임의로 1개씩 총 4개의 보육시설이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정 유형의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타 유형의 시설로 대체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사전 확인을 거쳐 최종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보육시설 조사는 전화조사이므로 문항수에 제한이 있어서, 허용된 문항수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사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조사내용은 보육시설 환경 및 설비, 운영 및 종사자 관련 사항, 프로그램, 영양·건강·안전, 보육비용 및 기타 의견으로 구성하였다(부록 I 농어촌 보육시설 조사표 참조).

보육시설 전화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 전화조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모두 344개의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중의 3일 간이었다.

조사된 보육시설 특성은 <표 I-3-1>과 같다. 조사된 시설 중 50.6%는 읍에 위치하고 49.4%는 면 지역에 위치하며, 시설유형은 민간시설이 34.6%로 가장 많고 다음 법인 시설 29.7%이며 국공립시설과 가정시설이 각각 18.0%, 19.7%이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전산화 작업이 실시되었다. 전산화 작업은 전문조사원으로 경력이 많은 인력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자료는 양은 많지 않았고 조사표가 비교적 간단하였으나, 전산화된 자료는 다시 연구진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에서의 오류 등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한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3-1〉 조사완료 보육시설의 특성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전체	344	100.0
지역		
읍	174	50.6
면	170	49.4
시설유형		
국공립	62	18.0
법인	102	29.7
민간	119	34.6
가정	68	19.7

## 2) 아동 보육 이용 및 욕구 조사

농어촌 아동 보육이용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조사는 연구의 제약 상 두 지역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개 지역은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구 명단을 참고하여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을 선정하고 이들 군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면들이 인접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각각 3개면씩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의성군은 비안면, 단밀면, 구천면이 선정되었고, 화순군은 남면, 동북면, 한천면의 3개면이 선정되었다.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에서 멀지는 않지만 농업 이외의 별 다른 활동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의성군은 도시에 인접하고 과수 등 농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두 지역은 차별성을 갖는다.

조사는 농림부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조사팀이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팀은 지도원 1인과 조사원 4인의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3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이를 모두 포함하되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의 수가 없도록 하였다. 조사표는 연구진이 초안을 마련한 후, 자문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개별 아동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의 교육정도, 취업상태, 가구소득, 종사상 지위 등 가구 및 부모 특성, 과거 보육서비스 이용, 현재 보육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앞으로 이용할 의사, 시간제, 24시간제, 야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도 및 정책 선호도 등으로 구성하였다(부록Ⅱ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표 참조).

조사 대상은 조사지역내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부모로 아동 개별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표가 이용되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초등학생이 거주할 경우 초등학생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전산화 작업이 실시되었다. 전산화 작업은 시설조사와 동일하게 전문조사원으로 경력이 많은 인력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문항은 비교적 짧으나 조사표 기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전

산화된 자료는 다시 연구진에 의하여 일부 범주 및 논리적 오류의 수정작업을 실시한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두 지역 모두 주민등록 상 아동수와 실제 거주 아동의 차이는 컸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은 모두 조사하였다(표 I-3-2 참조). 분석 대상 영유아 261명과 초등학교 128명의 지역 및 연령별 특성은 <표 I-3-3>과 같다.

<표 I-3-2> 주민등록 아동 및 조사 대상 아동

단위: 명

구분	화순군			의성군			계
	남면	동북면	한천면	비인면	단밀면	구천면	
<b>영유아</b>							
주민등록아동	114	69	78	56	42	38	397
실제거주아동	56	38	62	36	37	32	261
조사완료아동	56	38	62	36	37	32	261
<b>초등학생</b>							
주민등록아동	114	75	70	86	98	71	514
조사완료아동	29	16	31	20	20	12	128

주: 아동연령은 조사시점이 기준으로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통계 기준과는 다름.

<표 I-3-3> 조사완료 아동의 특성

단위: 명

	화순군			의성군			계
	남면	동북면	한천면	안계면	단밀면	구천면	
가구수	38	28	45	30	27	24	192
<b>영유아수</b>							
전체	56	38	62	36	37	32	261
0세	8	6	5	2	2	4	27
1세	6	4	10	5	2	7	34
2세	7	3	10	4	10	2	36
3세	7	6	8	5	4	3	33
4세	8	5	5	5	10	2	35
5세	10	6	12	3	5	8	44
6세	10	8	12	12	4	6	52
<b>초등학생</b>							
전체	29	17	30	20	20	12	128
1학년	6	2	4	2	3	1	18
2학년	8	4	4	2	5	3	26
3학년	3	2	10	5	6	3	29
4학년	5	2	4	3	3	1	18
5학년	3	4	2	5	2	2	18
6학년	4	3	6	3	1	2	19

주: 아동연령은 조사시점이 기준으로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통계 기준과는 다름.

### 3)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현황과 보육시설 운영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신과 여성농업인센터 온라인 모임을 이용하여 전수 조사를 시도하였다. 조사시 전국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회장과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명의의 조사 협조 공문을 첨부하였으며, 원활한 협조와 수거를 위하여 센터당 2~3회씩의 전화로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다.

총 38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 중, 영유아 보육이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제반 여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1개 센터와 2006년 11월 말에 개소한 1개 센터를 제외한 36개 센터가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2개 센터의 조사표는 수거되지 않아 응답한 총 표본 수는 34개소이다.

### 4) 군 보육담당자 조사

86개 군지역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내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및 보육시설 운영과 이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5)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현황과 보육시설 운영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 등 직원과 면담을 하였다. 또한 경북 농촌보육·정보센터의 현황과 보육사업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시도하였다.<sup>2)</sup>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초기 단계에서 보육시설 및 이용자 조사표 구성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위한 연구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4. 선행연구

농어촌 보육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 일반 보육시설 연구에서 지역별 분해 자료로서 언급되고 있고, 또한 농어촌의 복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보육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 보육에만 연구의 초점을 둔 자료는 많지 않다. 제한적이지만 본 절에서는 보육만을 별도로 다룬 연구와 보육을 일반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보육 전반적인 정책 방안 연구

김경희(2000)는 농림부 지원으로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보육기관, 양육 책임자인 부모지원, 그리고

2) 경북 농촌보육·정보센터의 개수도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소가 운영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보육기관과 관련된 정책 제안은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사립형 대안 보육기관 설립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부모지원에 관한 정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실시에 따른 소득지원,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 정책, 보육비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보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보육형태의 다양화 정책, 농촌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보육 실시, 자유선택 활동 프로그램과 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촌형 혼합연령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촌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시설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가장 유사성이 높으나 연구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에 지성애의 일련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지성애는 보육이 발전되고 변화되어 감에 따라 각 시기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보육발전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농어촌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모형 제시」(지성애, 1997)에서 대상연령, 보육일과, 물리적 환경, 안전, 건강, 영양, 교육, 교사의 역할 및 태도, 부모서비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모형으로 재정지원,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혼합연령 및 등·하원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적 자극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학지도, 건강 안전에 대한 배려 및 역동적 물리적 환경 고려, 순회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부모 및 영유아 요구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 부모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1999년도에는 「농촌보육사업의 실태와 과제」(지성애 외, 1999)에서 농어촌 보육시설수급의 효율성, 재정관리, 행정감사, 인사관리, 보육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농촌 보육프로그램,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으로는 농촌 보육수요의 효과적 충족 방안으로 보육시설 분교 등의 고려를 제안하였으며, 재정자원의 강화, 합리적 행정,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강화, 영아프로그램 및 부모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2003년도 「농어촌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지성애 외, 2003)에서도 102개 보육시설 및 120명의 부모조사를 통하여 시설관리, 인사관리, 교사 전문성, 부모교육, 보육프로그램 및 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은 설립된 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원, 농업여성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배려, 통원거리를 고려한 행정,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활동 범위와 근거 명확화, 특별프로그램 실시, 환경 및 교재교구의 개선으로 역동적 환경 창출, 건강·영양 관리 개선, 지역사회 연계 및 부모교육 강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규모나 지역적 대표성 등은 한정되어 있다.

서문희 외(2004)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농어촌의 유아보육 및 교육기관 인프라 특성과 농어촌 아동의 공식, 비공식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절한 모형을 제시하고, 농어촌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서는 기관 접근성, 비용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아동보육, 교육, 여성농업인 지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접근성이 높은 병설유치원이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소규모 가정보육과의 연계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농어촌보육시설 안전 관련 연구

홍혜경 외(1997)는 242개 보육시설 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육시설의 농어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를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보육시설의 70% 정도가 한 달에 1~2건의 안전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하였다. 사고는 2층 이상 및 전용놀이터가 없는 시설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였으며, 장소는 1/2은 실외, 1/3은 보육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고처리는 2/3 정도가 응급처리, 병원 방문을 한 뒤에 부모에게 알리고 있고, 사고에 대한 기록은 1/3 정도만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사고 예방은 시설장, 교사 등이 주로 육안으로 하고 2.6%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성애 외(1998)는 농어촌 보육시설의 열악성과 시설의 안전대책의 미흡한 실태 하에서, 농어촌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점검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안전점검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등 척도로서의 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내안전' 90개 항목, '실외공간안전' 53개 항목, '주변안전' 64개 항목의 3개 영역 총 20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280명의 보육교사에게 설문 실시한 결과, '농어촌 보육시설 안전점검 척도'는 전체 항목들의 상관계수가 .920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영역별 신뢰도는 .7266~.8567, 척도의 3개 영역 점수와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상관계수는 .7224~.8525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 역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척도의 농어촌 보육시설에서의 실제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 다.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 부모 만족도 연구

지성애·박희숙은 도시와 농촌의 부모 만족도 비교(2000)에서 전반적으로 부모만족도는 도시가 농촌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물리적 환경,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교육활동 지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운영관리나 영양, 건강, 안전관리, 상호작용, 아동의 반응, 부모교육은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인터넷을 이용한 농어촌 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숙희 외(2001)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환경 및 다양한 환경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자녀 양육을 위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농촌지역의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요구분석을 통해 혼합연령 보육 프로그램,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농촌지역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였고,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마. 농어촌 복지 정책의 일부로 실시된 보육 관련 연구

농어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연구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연구팀(1991)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와 농촌간의 성장격차,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압력 및 농·어업지원제도의 감축 등에 따라 요구되는 농업구조개편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신분이동, 직업변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농어촌사회보장정책의 개발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육은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조흥식 외, 2001)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복지실태를 생활환경, 보건의료, 소득 및 경제활동,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보화 및 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생활전반에 대한 농어촌거주자의 욕구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고 조사 자료나 이에 기초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박대식 외, 2001)는 현행 농촌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의료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 보육 및 교육서비스, 농어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농촌문화 진흥과 정보화, 여성 및 노인복지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농촌복지수준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가칭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분야 중 하나로 보육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일반적인 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년 뒤 실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박대식 외, 2004)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복지·교육·지역개발 세 부분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농산어촌 복지증진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 9가지 중의 하나로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 및 보육비 지원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



화,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농산어촌지역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 및 농산어촌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농번기 보육 등의 특수보육 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식 외(2006)는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를 총괄하여 나타낼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을 개발하였는데, 삶의 질 지표체계는 3개 대분류(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및 복합 산업 활성화)로 하고, 복지기반 확충 분야는 사회안전망, 건강 보건의료,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여성복지, 기타 복지관련 지표로 구성하였다. 영유아 복지는 농산어촌 보육지원 강화,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만 5세아 보육지원,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한편 영유아교육분야는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9개 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 지수를 전체 49.26, 도시 53.17, 농촌 47.58로 산출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화종 외(2003)의 연구에서는 WTO/DDA의 협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협상 타결시 협상결과가 우리의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고, 아울러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DDA 협상 타결시 발생하게 될 농가경제의 악화 및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게 될 보건복지수요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지역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농촌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보육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로서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대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농어촌 무상보육, 초등학교의 활용, 가정보육모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나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규모 등을 추계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농림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이미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지리적으로 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우선 검토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보육시설 설치하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은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또한 면 단위 병설유치원 이용이 어떠한 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에서 지역 통계자료와 지역 수요와 유사 기능의 공급 등에 근거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II. 농어촌 육아지원 정책

제2장에서는 농어촌의 인구 및 경제적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의 농어촌 육아지원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그리고 외국의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농어촌의 특성

#### 가. 인구학적 특성

농어촌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농어촌은 아동 및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sup>3)</sup>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 읍·면 거주 인력은 계속 감소하여 왔다. 전체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도시화율은 1960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74.4%, 2000년에는 79.7%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1-1〉 도시화율 변화추이(1960~2000년)

단위: %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도시화율	28.0	41.1	57.2	74.4	79.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표 II-1-2〉 연도별 0~5세아 거주지역 비율

단위: 명, %						
구분	읍	면	동	계		
1970	아동수	484,675	2,743,556	1,945,685	5,173,916	
	(비율)	(9.4)	(53.0)	(37.6)	(100.0)	
1980	아동수	583,562	1,291,663	2,719,528	4,594,753	
	(비율)	(12.7)	(28.1)	(59.2)	(100.0)	
1990	아동수	321,195	470,986	3,152,970	3,945,151	
	(비율)	(8.1)	(11.9)	(79.9)	(100.0)	
2000	아동수	356,105	351,659	3,108,714	3,816,478	
	(비율)	(9.3)	(9.2)	(81.5)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 각 연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였다. 2000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0~5세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동부 81.5%이고, 읍 9.3%, 면 9.2%로 읍·면이 18.5%이다. 즉, 보육대상 영유아의 18% 정도가 농어촌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도시에 살고 있다. 이는 1980년 40.8%, 1990년 20.0%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을 나타

3) 고령화에는 출산율 저하 및 보건의료기술의 발전도 요인으로 작용함.

낸다(표 II-1-2 참조).

〈표 II-1-3〉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의 변동추이

단위: %

구분	1960		2000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9세	28.0	29.9	14.7	12.8
10~19세	22.2	20.3	15.2	12.8
20~29세	17.9	16.4	18.1	13.9
30~39세	13.5	11.3	18.8	15.0
40~49세	9.0	8.8	15.6	13.0
50~59세	5.3	6.6	8.9	11.1
60~69세	2.7	4.3	5.5	12.4
70세 이상	1.4	2.4	3.2	8.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장세훈, 「도시화」,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pp. 231~262의 <표 14-5>와 <표 14-6> 재편집.

<표 II-1-3>은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나타낸다. 농어촌은 9세 이하 인구가 1960년 29.9%에서 2000년에 12.8%로 낮아졌으며 반면에 60세 이상은 1960년 6.7%에서 2000년 21.3%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도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도시화는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에서 비롯되었고, 낙후성의 가속화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면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기반 및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도시에 비해 크게 뒤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성은 산업화에 따르는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탈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되어 농촌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 나. 경제적 특성

<표 II-1-4>는 국내총소득(GNI)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농·어업부분 GDP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국내총소득(GNI)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5년에는 3.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농업의 성장률은 1990년 -6.0%의 성장률을 보인 이후 1995년에는 5.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적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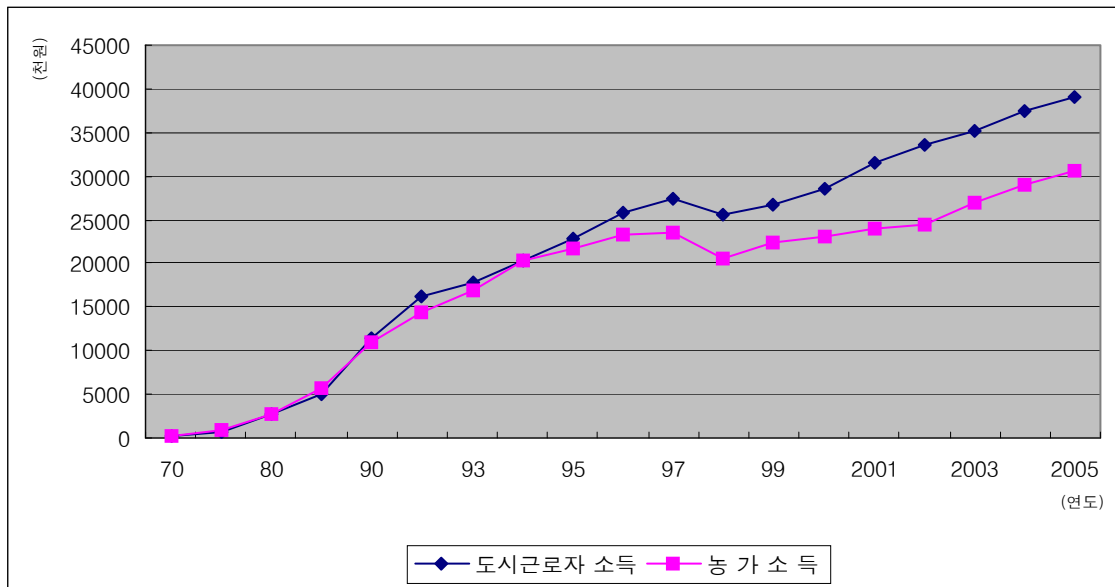
<표 II-1-4> 농업부문의 생산과 성장률

단위: 10억원, %

연도	국민총소득 (GNI, 명목)	농림어업 (명목)	국민총소득 대비 농림어업 비율	GDP성장률	농어업 성장률
1970	2,800	737	26.3	-	-
1975	10,278	2,560	24.9	5.9	4.0
1980	38,118	5,576	14.6	-1.5	-19.0
1985	82,033	10,174	12.4	6.8	5.0
1990	186,560	14,998	8.0	9.2	-6.0
1995	397,459	22,829	5.7	9.2	5.3
1996	446,856	23,962	5.4	7.0	2.3
1997	488,457	23,896	4.9	4.7	4.6
1998	476,245	22,356	4.7	-6.9	-6.4
1999	523,355	24,812	4.7	9.5	5.9
2000	576,160	25,030	4.3	8.5	1.2
2001	621,028	24,806	4.0	3.8	1.1
2002	685,069	24,655	3.6	7.0	-3.5
2003	725,420	24,166	3.3	3.1	-5.3
2004	781,174	26,246	3.4	4.7	9.2
2005	805,886	24,036	3.0	4.0	-0.1

자료: 농림부(2006). 농림업 주요통계.

<그림 II-1-1>은 근로자, 농가 및 어가의 연간소득 변화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는 근로자, 농가 및 어가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992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I-1-1> 도시근로자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교

〈표 II-1-5〉 도시근로자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율

단위: 천원, %

연도	도시근로자 소득	농가소득	비율
1970	338	256	75.7
1975	786	873	111.1
1980	2,809	2,693	95.9
1985	5,085	5,736	112.8
1990	11,319	11,026	97.4
1995	22,933	21,803	95.1
1996	25,832	23,298	90.2
1997	27,448	23,488	85.6
1998	25,597	20,494	80.1
1999	26,697	22,323	83.6
2000	28,643	23,072	80.6
2001	31,501	23,907	75.9
2002	33,509	24,475	73.0
2003	35,280	26,878	76.2
2004	37,360	29,001	77.6
2005	39,010	30,503	78.2

자료: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한 농가소득 비중은 1980년 95.9% 수준에서 1990년에는 97.4%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01년에는 75.9% 수준까지 감소하였다(표 3-1-5 참조).

대외적으로 세계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이 타결된 이후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농업부문의 무역자유화는 1995년 WTO체제의 출범,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FTA의 추진 등으로 진행속도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은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의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악화는 농가에 농촌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백화중 외, 2003).

## 2.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

### 가. 보육비용 지원

#### 1)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받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어촌에 민간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1999년 10월 농지법시행령(제57조)을 개정하여 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에는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2006년 6월 현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은 4,149개이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14.4%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250개소이고, 법인보육시설이 578개소이다. 보육아동 정원은 모두 228,345명으로 전체 보육정원의 18.25%이다.

〈표 II-2-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총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b>보육시설</b>								
총계	28,761	1,507	1,484	995	12,860	49	11,575	291
대도시	12,017	826	413	394	5,472	22	4,738	152
중소도시	12,595	421	493	260	5,505	25	5,783	108
농어촌	4,149	260	578	341	1,883	2	1,054	31
<b>아동 정원</b>								
총계	1,252,877	124,096	147,837	67,144	698,296	1,309	195,867	18,328
대도시	512,162	72,530	44,581	23,389	282,924	649	79,146	8,943
중소도시	512,370	34,197	47,638	20,022	304,661	629	98,142	7,081
농어촌	228,345	17,369	55,618	23,733	110,711	31	18,579	2,304

자료: 보육통계(2006. 6). 여성가족부.

2) 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중전의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심이었으나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가) 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sup>4)</sup>,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표 II-2-2〉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 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 추가지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40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 보육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5만원 - 방과후 16~20명 보육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90%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 특수교사 수당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 원장(1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인건비 100% - 농어촌 시설은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20만원 - 특수교사 수당 -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 교재교구비: 500~1,200천원/개소당·년 -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 방과후 20명 이상 보육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인건비 90% 지원
직장보육시설		- 교재교구비: 500~1,200천원/개소당·년

주: 지원율은 국고(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80%, 지방: 50%)임.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사업안내.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전담시설에는 원장과 교사 인건비 이외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농어촌 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장애아보육시설은 원장<sup>5)</sup>과 보육교사 인건비 80%, 취사부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특수교사 수당 등을 지원받는

5) 6개반 이상에 한함.

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 인건비 지원시설은 장애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사 수당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한편 민간개인 및 가정 시설은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정부 지원시설에만 지정하고 있는데,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시 5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보육시설<sup>6)</sup>에 대해서는 아동 16~20명 보육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아동 3명 기준으로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 지원시설이나 민간 가정 시설 모두 동일하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한편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sup>7)</sup>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sup>8)</sup>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고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조정하였다.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다. 유아 기본보조금은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보조금 확대를 통하여 민간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2010년까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맞추어 간다는 방침이다.

다) 보육료 차등 지원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拂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연대성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 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

6) 2004년 3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7) 제79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6조, 제194조의6제2항, 제207조임.  
 8) 자부담 10%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36만원임.



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새싹플랜」이나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는 이를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까지로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sup>9)</sup>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sup>10)</sup> 2006년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90%<sup>11)</sup>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II-2-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층	법정저소득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	-	-	-	-	-	30	3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명이었으나 2003년 12월 기준으로 21만명, 2004년 28만명, 2005년 43만 8천명, 2006년 6월 현재 62만 2천명에 달한다.

9)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환산율 4.17%), 금융재산(환산율 6.25%), ‘승용차 등’(환산율 100%)이 포함되는데, 2005년에는 10년 미만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였는데, 2006년에는 7년 미만인 2000cc 차량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4.17%를 적용하여 차량의 배기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음.

10)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11) 2006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90%는 318만원이고, 월평균소득 100%는 353만원임.

나. 유아교육 지원 제도

1) 설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여 저렴한 교육비로 저소득 아동의 유치원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확대하였다. 유치원은 8,292개소 중 농어촌 지역에 39.8%인 3,30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은 51.6%인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은 82.3%, 도서벽지는 유치원 중 93.7%가 공립유치원이다. 학급수로는 전체 학급수의 28.0%가 공립인데, 농어촌이 61.1%, 도서벽지 85.4%의 학급수가 공립이다.

〈표 II-2-4〉 설립주체별 유치원 및 유치원 취원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총계	국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소계	법인	개인	군부대
<b>유치원</b>							
총계	8,290	3	4,457	3,830	509	3,302	19
대도시	2,357	-	549	1,808	228	1,573	7
중소도시	2,711	1	1,203	1,507	168	1,333	6
농어촌	2,763	2	2,261	500	107	387	6
도서벽지	459	-	444	15	6	9	-
<b>취원아동</b>							
총계	1,091,371	545,812	121,071	424,488			
대도시	227,722	-	27,181	200,541			
중소도시	221,840	110	47,935	173,795			
농어촌	89,621	143	40,289	49,189			
도서벽지	6,629	-	5,666	963			

자료: 교육통계연보(2006. 4). 한국교육개발원.

2) 비용 지원

가) 시설별 지원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유치원의 설립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비와 시설비도 지역 교육청에서 국·공립유치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는 수면실, 주방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당 500~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 나) 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sup>12)</sup>, 2004년부터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이 현행 저소득층 만 5세아에서 만 3, 4세로 확대되어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전체아동의 25.7%인 6만 3천명이었고, 만 3, 4세 아동의 8.5%인 저소득층 만 3, 4세아 2만 5천명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만 5세아 8만 6천명, 만 3, 4세아 약 5만 7천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2006년에는 만 3, 4세아 40만명, 만 5세 아동 15만4천으로 전체 아동의 약 50%가 넘는 아동이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다. 농어민 자녀 양육지원

##### 1) 양육비 지원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13)</sup>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sup>14)</sup>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12) 이는 보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13) 농림부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일조하고자 20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음.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가 기준은 농·어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임.

14)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임.

<표 II-2-5>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2004~2006)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농지소유기준	1.5ha	2.0ha	5.0ha
아동수(명)	27,000	31,109	27,286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지원 금액은 5세 미만아는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다.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군·구 농정부서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시설에 수납하게 한다.

3개 부처에서 실시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비교하면 <표 II-2-6>과 같다.

<표 II-2-6> 보육·교육비 지원체계: 2006

구분	보 육 (0~4세)			교 육 (3~4세)		
	도시, 5ha 이상 농어촌	5ha 미만 농어촌		도시, 5ha 이상 농어촌	5ha 미만 농어촌	
도시평균소득 70%이상	-	50%(농림부)		-	50%(농림부)	
도시평균소득 70%미만	40% (여성가족부)	40% (여성가족부)	50% (농림부)	40% (교육인적자원부)	40% (교육인적자원부)	50% (농림부)
차차상위 (도시평균소득 50%미만)	70% (여성가족부)	70% (여성가족부)		70% (교육인적자원부)	70% (교육인적자원부)	
차 상 위 (기타저소득층)	100% (여성가족부)	100% (여성가족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수 급 자 (법정저소득층)	100% (여성가족부)	100% (여성가족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0~4세 보육의 경우 5ha 이상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에게는 도시 거주 아동과 동일하게 도시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법적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보육료의 100%, 차차상위계층(도시평균소득 50% 미만)은 70%, 도시평균소득 70% 미만 계층은 40%를 지원한다. 5ha 미만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에게는 농림부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다.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며, 도시평균소득 70% 미만 계층에게는 여성가족부가 40%를 지원하거나 농림부가 50%를 지원한다. 도시평균소득 70% 이상 계층은 농림부가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3~4세 교육의 경우 보육과 같은 비율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가 지원한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단, 5세아는 50%)이다.<sup>15)</sup>

참고로 농지소유 3~5ha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005년 3742만원 수준이다.

〈표 II-2-7〉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구분	전국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7.0	7.0~10
2001	23,907	18,380	19,865	23,259	26,895	30,230	36,459	50,205	-
2002	24,475	20,080	21,541	23,593	28,026	30,177	36,256	51,087	-
2003	26,878	22,426	20,946	24,505	27,816	31,333	30,834	34,735	50,875
2004	29,001	24,930	23,551	25,040	28,060	31,291	36,063	38,636	56,805
2005	30,503	25,045	25,628	28,614	30,253	33,181	37,427	40,007	51,158

주: 95년까지는 2.0ha이상으로 분류, 96년부터 2.0~3.0, 3.0~5.0, 5.0ha이상으로 분류, 03년부터 5.0~7.0, 7.0~10, 10ha이상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2) 보육 관련 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재 농어촌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건강한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로는 여성농업인센터와 경상북도의 농어촌 보육·정보센터가 있다.

### 가)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업·농촌기본법<sup>16)</sup>, 여성농어업인육성법<sup>17)</sup>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및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2001년 전국 4개 지역(영동, 서천, 안동, 진주)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확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

15) 2006년도 월 지원 금액은 0세아 87.5천원, 만 1세아 77천원, 만 2세아 63.5천원, 만 3~4세아 39.5천원, 만 5세아 79천원임.

16)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제13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역 및 센터의 특성에 따라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 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의 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2006년도에 개소당 109,03만원이며,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비가 85%, 자비 15%이다.<sup>18)</sup> 2007년도에는 110백만원씩 37개소에 지원할 예정<sup>19)</sup>에 있다.

〈표 II-2-8〉 여성농어민센터 위탁자

구분	단위: 개소, %		
	개인	단체	계
수	28	6	34
비율	82.4	17.6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표 II-2-9〉 여성농업인센터 위탁 시작년도

년도	단위: 개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수	3	12	3	9	5	2	34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여성농업인 센터는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82.4%로 대부분이며, 2001년도 4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2년도에 도 별로 1개소씩 설립이 추진되어 가장 큰 양적 증가를 이루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2-10〉 여성농업인센터 건물 소유형태

구분	단위: 개소, %					
	시군구 소유건물임대	개인 소유건물임대	농협 건물 임대	센터장 자가 소유 건물 사용	법인/개인 소유 건물 무상 사용	기타
수	9	11	4	4	2	4
비율	26.5	32.4	11.8	11.8	5.9	11.8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개인 위탁의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 및 임대 형태에 있어서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차용한 경우가 32.4%이고, 시군구 건물을 임대 26.5%이며, 그 밖에 구농협 및 교육청의 건물 등 사용하지 않는 공공의 건물을 이용하거나 개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표 II-2-10 참조).

센터의 직원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그 밖에 필요 인력

18) 예산 총액 및 지원 내용과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경상남도는 2006년 9월부터 보육교사 1호봉 급여에 기준하여 시설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자부담의 비율이 10%임.

19) 2006년 상반기 기준. 2006년 11월에 개소한 공주센터는 별도 집행 예정.

등 평균 7.5명이 한 개소 당 유지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보육교사가 평균 2.9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상으로 볼 때 센터에서 보육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2-11 참조).

〈표 II-2-11〉 여성농업인센터 직원 수

단위: 개소										
구분	센터장	원감	보육교사	영양사	취사부	운전기사	사무원	공공근로	기타	계
평균	1	0.4	2.9	0.0	1.0	1.0	0.4	0.6	0.9	7.5
표준편차	0.2	0.5	1.6	0.0	0.3	0.4	0.7	0.2	1.0	2.4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여성농업인센터 전체 사업의 내용상 및 예산상에 있어 보육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평균 비중이 63.7%이었고, 응답 센터 73.5%가 보육사업이 센터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I-2-12 참조). 이는 위에서 센터인력 비율이 보육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표 II-2-12〉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사업 비중

단위: 개소, %							
구분	0~25%	26~50%	51~75%	76~100%	계	평균	표준편차
수	1	8	18	7	34	63.7	18.2
비율	2.9	23.5	52.9	20.6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나) 농촌보육·정보센터

농촌보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가 로또 복권 기금 등 총 31억을 투입(도비 20억원, 시·군구비 11억원)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촌노동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문화·복지공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5년 3월에 개소한 상주농촌보육·정보센터를 시작으로 대부분 2005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경상북도 11개시군에 걸쳐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원형으로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보육시설과 정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 형태로 설치하여 보육기능을 담당하며 이외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연간 1,092백만원이고, 도비 50%, 시·군비 50%로 1개소당 연 9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72평의 면적의 공간에서, 주요 사업 외에도 부정기 사업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여성 및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컴퓨터, 서예, 한글 등의 특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은 평균 1명씩의 상담원, 지도교사, 보육교사, 운전원, 취사원을 두고 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개소당 평균 15.8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며 공부방은 평균 33.4명이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다.

〈표 II-2-13〉 농촌 보육·정보센터 사업 현황: 2006 2/4분기

시군	건물(평)		직원현황(명)					이용아동(명)		부정기 사업
	규모(평)	형태	상담원	지도교사	보육교사	운전원	취사원	공부방	어린이집	
안동(임하)	64	2층	1	1	1	1	1	43	8	- 생활영어교육 - 한방진료
안동(예안)	64	2층	1	1	1	1	1	35	14	- 농부병 관리 체조
영천	65	단층	1	1	2	1	1	48	18	- 풍물놀이 강습 - 인터넷검색 활용 - 노인 한글교육 - 노인 서예교실
상주	100	1층	1	1	2	1	1	37	19	- 한글·숫자교실 - 문화교실-한지공예 - 컴퓨터교육
경산	64	1층	1	1	1	1	1	34	20	- 민요교실 - 한글교실, - 체험교실 - 요가교실
의성	64	단층	1	1	1	1	1	25	17	- 풍물교실(2개월) - 천연염색강좌 및 비누 만들기 - 지도력개발프로그램 교육
청송	100	단층	1	1		1	1	40(중7)	12	- 한글교실
영양	64	단층	1	1	2	1	1	30	16	- 컴퓨터 교실
고령	90	단층	1	1	2	1	1	38	22	- 여성농업인 상담사업 - 공부방교실 영어 특강
성주	64	1층	1	1	1	1	1	28	12	- 수공예 - 이주여성 교실: 컴퓨터 교육, 천연염색
칠곡	70	단층	1	1	1	1	1	35	8	- 수지침 요법 강의
울진	55	2층		1	2		1	15	23	- 아동 방과후 수업지도 - 비즈공예교실 - 컴퓨터 교실

자료: 농촌보육·정보센터 협의회(2006). 내부자료.

센터 운영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보육의 탄력적인 운영, 국제 결혼 가정 아동에 대한 고려, 주변 유치원과의 협력체계 등 농촌 지역에 실정에 맞는 보육 사업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적정한 모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경상북도 독자적으로 복권 기금이라는 일시적 기금을 통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향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더 이상 두고 있지 않으며, 위에서 살펴 본 전국 단위의 여성농업인센터와의 교류 체계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 라. 육아비용 세제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이외에 또 하나의 방식은 조세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다. 보육료 조세 지원은 소득에서 소득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조세 납부액에서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sup>20)</sup>,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는 초기에는 연간 100만원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학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소득액공제제도는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이 매우 낮다. 연 소득 3,000만원 기준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공제 시 200만원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1,097,500원, 1,267,500원으로 연 17만원의 차이가 날 뿐이다.<sup>21)</sup> 또한 현재 세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sup>22)</sup> 면세계층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표기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득 역진성이 있고, 과표기준액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으로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 3. 외국의 육아지원<sup>23)</sup>

본 절에서는 주요 외국의 농촌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및 보육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취하고자 한다.

### 가. 미국

미국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며, 가정과 부모의 직장 그리고 보육시설 간의 거리가 멀고,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부모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 부모에 비하여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20)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현재 세액공제는 없음.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 이 조세지원 방식을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 주는 보육료 아동별 보조금 지원을 하는 중앙정부 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는 다른 주와는 달리 아동별 보조금 지원 없이 세액공제제도로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21) 국세청 홈페이지(<http://nta.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 이용하여 산출

22) 2006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1천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초과는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임.

23) 이 부분은 서문희 외(2003). 농어촌 보육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의 아동이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육서비스는 대부분 정부의 관리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관련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가정보육(Family day care) 이외에 가장 일반적인 보육의 형태는 친인척이 보육하는 경우이다.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보육료 부담이 적거나 없고 아동들이 기관보육시설에 비하여 개별적인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보육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농촌 등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경우, 그 대안으로서 친인척 보육서비스 또는 가정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자치기관이나 지방정부는 친인척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보육프로그램의 일정 구성과 적절한 보육방법, 아동학대의 예방, 그리고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및 건강한 발달 등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인척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은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맞게 계획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농촌가정보육프로그램(The Rural Family Home Day Care Project)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농촌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같은 성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설비나 구조 및 시설 안전도 측면에서 타 시설에 비해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적절하고, 시설 노년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함으로써 아동과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최소의 보육인력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급식이나 시설운영과 같은 기타 제반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농촌지역의 공립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종일 보육 운영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전·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는 부모교육이나 보육교사와 같은 성인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체기관이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종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농어촌 보육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유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다. 연방정부 중 보육 담당부서인 건강·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육국(CCB: Child Care Bureau)은 연방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저소득가구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공보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sup>24)</sup> 담당기관(Head Start Bureau)에서는 농촌지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내 기획·연구·평가국(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24) Head Start는 미국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공적 보육프로그램임.

Evaluation, OPRE)도 농촌 사회복지 개혁(Welfare to Work)의 필수조건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연방정부 내에 설치된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는 국공립대학, 4-H 청년회, 그리고 지역협력단체들을 중심으로 종합교육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농촌의 영유아와 농어촌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농촌지역의 우수보육시설을 소개하는 한편, 농촌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와 교육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농촌개발위원회(National Rural Development Partnership: NRDP)를 구성하여 연방정부, 지방자치기관 및 영리·비영리 단체 관련자들이 모여서 농촌문제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보육문제는 교통·운송문제와 함께 농촌 사회복지 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인식하고 농촌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협력서비스(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RBS), 농촌주택서비스(Rural Housing Service: RHS), 농촌정보센터(Rural Information Center: RIC) 등에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인식하고 지역기관의 연계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농촌정보센터(RIC)에서는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을 포함한 지역기관의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가정에 대하여 보육관련 정보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주관하는 21세기지역교육센터(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 CCLC)는 특히 교육여건이 제한된 농촌지역에서 별도의 시설확충 없이 기존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외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지역개발국(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OCPD)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농촌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취약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과 가족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유아보육센터를 비롯하여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제반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외에 농촌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미주리 주정부에서 별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농촌가족프로그램(The Illinois Rural Families Program: IRFP), 아이오와주는 농촌경제·지역발전(Iowa Rur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프로젝트, 미주리주는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인 농촌영유아프로젝트(Project Rural Early Childhood Project)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나. 캐나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농림부(the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 OFA)는 농촌 거주 아동<sup>25)</sup>의 보육 및 조기교육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체에

25) 온타리오 농림부(OFA)는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물론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접도시에서 생산직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적정비용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따르는 보육정책의 제도 정비를 위하여 1999년 농촌보육특별팀(the Task Force on Rural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구성하였다.<sup>26)</sup> 농촌보육특별팀은 농촌 보육문제 해결과 양질의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지역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자들이 효과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농촌보육특별팀은 농촌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보육과 관련하여 5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이다. 농촌이 소규모의 학교시설과 많은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실 통폐합 또는 폐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통합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령기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아동·가족관련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폐교상태의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농촌공립학교 시설이 농촌지역 사회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통학버스 운영시간의 연장과 이에 따르는 운영자금의 지원이다. 농촌의 교통문제는 농촌의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통학버스가 일반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부모의 근로시간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로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서비스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적절한 교통수단을 찾지 못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농촌 특성을 반영한 시설운영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정보조가 시도되고 있다. 보육관련 법규와 정책은 도시 보육시설·기관 또는 가정보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농촌지역에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농촌의 보육시설은 소규모이면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운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정보조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시환경에 기초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농촌에 보육시설 설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촌가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정보육을 선택한 경우 보육서비스의 지속성 문제, 보육교사의 자질문제, 가정보육의 모니터링문제 등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부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넷째, 통합된 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기관들의 연계 노력이다. 지역자치단체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의 계획과 시행경험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보육정책 체계가 보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보완·정비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담당 부서간의

이 농촌가정의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26) 온타리오농업연맹(the Ontario Rural Council: TORC)의 요청에 의한 것임.

효율적 연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보육특별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촌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육정책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합의 하에서 기존의 시설과 서비스전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농촌지역 보육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가족의 보육 서비스 욕구와 농촌생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관련 규제와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셋째,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보육업무를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의 보육에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자치기관이 보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촌 가족 담당 전담공무원 및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자치기관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농촌의 보육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연계체제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와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가 상호협력하여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s Supporters: REAPS)을 운영하였다.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의 보육분야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집단(playgroup)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시설 신규 확충이 용이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거단위별 소규모 놀이집단을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놀이집단의 운영은 정규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모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으로부터 보육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정보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워크숍 및 놀이기구나 학습자료 또는 재정 등과 같은 기타 자원을 제공받는다.

둘째,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지역보육지원단(Early Childhood Community Workers)은 농촌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부모들에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경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내 보육서비스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의 적극적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개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편리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는 물론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희망자에 대한 준비교육도 제공함으로써 농촌 보육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보육교사 자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설치의 거리제한으로 농촌보육시설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인허가를 조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설장과 지역기관들의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으며 농촌 보육

시설과 기존의 학교단체, 지역의료보건소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호주

호주는 농촌 아동을 위하여 별도의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이지 못한 지역의 수급조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National Planning System)을 추진하였다. 이는 각 지역에서 아동수, 취업모 비율, 선호하는 보육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공급과잉 지역은 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sup>27)</sup> 특히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 및 공급 확대 시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보육공급 확충 계획을 일정기간 단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종전에는 비영리 및 공공 단체만이 조정자(Coordinator)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가정보육 및 학교 밖 보육, 일시 보육 등에 민간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보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보육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에서 실시되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에 대해서도 제도권 보육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위하여 가정보육 제공자(family care) 및 보육시설(day care center)이 가정내 보육의 조정자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 정책적 시사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4개국에서 농촌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와 차별성 있는 특별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보육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이 취약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농어촌 대상의 특별한 보육정책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 농어촌 보육 확충 방안으로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 친인척보육, 등 소규모 보육이 우선시 되고, 기존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수요를 만족시키는 일이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놀이집단, 이에 대한 지역보육지원단의 방문 지원 등은 농어촌에는 기존의 틀 범주 외의 활동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다음은 농촌보육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기회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촌거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처

27) 호주는 종일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 학교 밖 보육시설의 설치는 주 및 지역정부에 의한 허가에 의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의 경우에도 주에 따라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간,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외국에서 농촌의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지역간 또는 기관간 연계체제를 마련하며, 또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핵심기관이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점은 우리나라의 농촌보육 전달과정과 비교할 때 주목해 볼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 Ⅲ.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제3장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보육시설수와 보육정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국가 전체와 농어촌의 보육시설 설치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다음으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의 적정성 및 추가 설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1. 보육시설 설치

##### 가. 설치 현황

##### 1) 시설수 및 보육아동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어촌에 4,149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보육아동 정원은 228,345명이다. 시설 유형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농어촌에는 법인과 법인의 시설의 비중이 크다. 시설수로는 법인보육시설이 13.9%, 아동수로는 24.4%로 전국 평균치의 2배 이상이다. 법인 외 보육시설도 시설수는 8.2%, 아동수는 10.4%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구분	단위: %, 명							계(수)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보육시설								
전체	5.2	5.2	3.5	44.7	0.2	40.2	1.0	100.0( 28,761)
농어촌	6.3	13.9	8.2	45.4	0.0	25.4	0.7	100.0( 4,149)
보육정원								
전체	9.9	11.8	5.4	55.7	0.1	15.6	1.5	100.0(1,252,877)
농어촌	7.6	24.4	10.4	48.5	0.0	8.1	1.0	100.0( 228,345)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농어촌 보육시설 아동정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영아의 비율이 낮고 유아의 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국 보육정원 통계는 2세미만아가 14.1%, 만2세아 21.1%인데 비하여 농어촌지역은 각각 11.6%, 19.0%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에서 영아보육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표 Ⅲ-1-2 참조).



〈표 III-1-2〉 연령별 보육시설 아동 정원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체								
2세 미만	14.1	10.9	11.6	10.3	11.3	10.8	29.8	11.7
만2세아	21.1	17.4	18.6	17.5	19.3	20.8	32.8	20.8
만3~5세아	61.3	67.6	66.7	64.8	65.8	67.6	35.6	65.3
만6세 이상	3.5	4.2	3.2	7.4	3.6	0.8	1.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52,877)	(124,096)	(147,837)	(67,144)	(698,296)	(1,309)	(195,867)	(18,328)
농어촌								
2세 미만	11.6	8.5	10.2	9.7	10.3	9.7	29.6	9.5
만2세아	19.0	16.8	18.1	18.1	17.8	9.7	32.0	18.6
만3~5세아	65.8	71.9	69.4	69.5	67.1	80.6	36.6	71.9
만6세 이상	3.5	2.8	2.4	2.7	4.7	0.0	1.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8,345)	(17,369)	(55,618)	(23,733)	(110,711)	(31)	(18,579)	(2,304)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표 III-1-3〉 유치원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단설	병설	소계	법인	개인	군부대
대도시	원 수	2,357	-	549	24	525	1,808	228	1,573	7
	학급수	8,858	-	1,112	144	968	7,746	980	6,742	24
중소도시	원 수	2,711	1	1,203	38	1,165	1,507	168	1,333	6
	학급수	8,780	6	2,135	220	1,915	6,639	728	5,893	18
농어촌	원 수	2,763	2	2,261	20	2,241	500	107	387	6
	학급수	4,848	7	2,846	114	2,732	1,995	359	1,614	22
도서벽지	원 수	459	-	444	1	443	15	6	9	-
	학급수	524	-	482	5	477	42	20	22	-
계	원 수	8,290	3	4,457	83	4,374	3,830	509	3,302	19
	학급수	23,010	13	6,575	483	6,092	16,422	2,087	14,271	6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 유치원 현황

한편으로 보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치원은 농어촌 면 지역에 병설유치원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총 국공립유치원 4,457개소 중 2,707개소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 설치되어 있다. 학급수로는 총 6,575학급 중 3,328개 학급이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다.(표 III-1-3 참조).

## 2)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2006년도에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총 516개 읍면동이다.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42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은 474개 읍면이 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은 모두 37,553명이다.<sup>28)</sup>

지역별로 경상북도가 107개 면에 보육시설이 없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상 아동 수는 7,600여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90개 면에 6,277여명, 전라남도 86개 면에 7,000여명, 전라북도 65개 면 4,600여명, 충남 45개면 4,200여명, 충북 35개 면에 2,200명 정도의 순으로 면 지역 및 아동의 수가 많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현황 1

단위: 개소, 명

구분	시·군·구	소계		읍		면		동	
		수	아동수	수	아동수	수	아동수	수	아동수
서울	2	2	821	-	-	-	-	2	821
부산	4	6	777	-	-	-	-	6	777
대구	2	6	1,135	-	-	1	179	5	956
인천	4	11	1,028	-	-	9	703	2	325
광주	1	2	154	-	-	-	-	2	154
대전	1	2	341	-	-	-	-	2	341
울산	1	2	161	-	-	2	161	-	-
경기	9	14	1,402	-	-	9	712	5	690
강원	12	26	2,130	1	58	23	1,652	2	420
충북	8	35	2,251	-	-	35	2,251	-	-
충남	13	45	4,226	-	-	45	4,226	-	-
전북	13	68	4,891	-	-	65	4,605	3	286
전남	20	91	7,836	1	147	86	7,053	4	576
경북	24	113	8,397	-	-	107	7,651	6	746
경남	18	92	6,925	-	-	90	6,277	2	570
제주	1	1	179	-	-	-	-	1	179
총계	134	516	42,654	2	205	472	35,470	42	6,841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및 내부자료

〈표 Ⅲ-1-5〉 보육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보육료 지원의 부족	21	24.4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 등하원 어려움	30	34.9
보육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시간	10	11.6
시설환경 열악	25	29.1
프로그램 취약	14	16.3
질 높은 교사 부족	26	30.2
기타(군인 자녀 잦은 전출입)	1	1.2
별 불편 없을 것임	15	17.4
계	142	-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28) 주민등록상 아동수에 비하여 실제 거주하는 아동수가 적을 것으로 추정됨.

보육시설 미설치 면 지역 아동을 거의 면 마다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육시설이 필요한 아동은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먼 곳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군 보육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보육시설 이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 등하원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교사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시설환경의 취약, 보육료 지원의 부족이다(표 III-1-5 참조).

## 2.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 가. 보육시설 추가설치의 필요성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516개 해당 지역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sup>29)</sup> 대다수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고 국공립시설 설치 의사를 나타내거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응답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현황 2

단위: 개

구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보육시설 설치 준비 및 긍정적 검토 지역
총계	516	23
서울	2	-
부산	6	-
대구	6	1
인천	11	2
광주	2	-
대전	2	1
울산	2	-
경기	14	1
강원	26	3
충북	35	1
충남	45	1
전북	68	1
전남	90	8
경북	113	3
경남	93	1
제주	1	-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및 내부자료

29) 여성가족부가 2006년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400개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주요 이유로는 대체로 병설유치원과 인근보육시설 이용, 실제 거주 아동이 적고 보육수요 부족, 인근 보육시설 정원 미충족 등을 들었다

한편 86개 군 보육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내 보육시설의 충분성을 질문한 조사에 의하면 19.8%의 군에서만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외는 매우 충분 23.3%, 충분 57.0%로 80.3%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Ⅲ-2-2 참조).

그러나 보육담당공무원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면 단위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0.7%, 모든 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3.5%로 44.2%가 해당 군 면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표 Ⅲ-2-3 참조).

〈표 Ⅲ-2-2〉 군내 보육시설 충분 여부

					단위: 개, %
구분	매우충분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	계
수	20	49	17	-	86
비율	23.3	57.0	19.8	-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표 Ⅲ-2-3〉 보육시설 설치 필요 여부

					단위: 개, %
구분	모든 면에 설치 필요	일부 면에 설치 필요	필요하지 않음	모름/비해당	계
수	3	35	39	9	86
비율	3.5	40.7	45.3	10.5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경우 그 이유로는 아동 있으나 타 읍면 시설 이용한다는 비율이 4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5%는 아동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4.6%는 아동이 있으나 소수라고 응답하였다(표 Ⅲ-2-4 참조).

〈표 Ⅲ-2-4〉 보육시설 설치 불필요 이유

			단위: 개, %
구분	수	비율	
아동이 없음	12	25.5	
아동 있으나 타 읍면 시설 이용	22	46.8	
아동 있으나 병설유치원 이용	3	6.4	
아동 있으나 소수임	7	14.9	
잘 모름	0	0	
기타	3	6.4	
계	47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경우 설치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는 78.9%가 부지 비용 및 건축비 부담금을 들었다. 보육시설은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한 원장이나 그 가족이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 거주하기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읍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히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시 중앙정부가 일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건축비의 50%만 지원하고 있고, 부지비용과 이외 건축비는 지방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큼을 반영한다(표 III-2-5 참조).

〈표 III-2-5〉 보육시설 설치시 걸림돌

단위: 개, %

구분	수	비율
부지 비용 및 건축비 부담금	30	78.9
적절한 부지 확보 어려움	2	5.3
군의 의미 부족	0	0
민간 보육시설의 반대	2	5.3
기타	4	10.6
계	38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법인보육시설은 부지 비용을 민간법인이 부담하지만, 건축비 지원, 건축후 인건비 지원 등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다. 최근까지는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을 동일시하여 왔고, 특히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건축비는 국공립보다는 법인보육시설 확충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 지원 정책과 법인보육시설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법인보육시설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었다.<sup>30)</sup> 그 결과 법인보육시설은 설치, 운영이 민간으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설치 주체인 국공립시설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앙정부의 건축비 지원은 국공립시설 설치에 한정하는 추세이다.

〈표 III-2-6〉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명단과 군 보육담당자 조사에서 나타난 추가 시설 설치 필요 여부 응답 결과를 나타낸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에서 국공립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고, 경기도는 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은 없으며, 강원도는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충북은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충남은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의 6개군에서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라도는 전라북도는 순창군과 부안군의 2개군에서만, 전라남도는 곡성군, 보성군, 신안군의 3개군에서만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상도는 경상북도는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의 9개 군에서, 경상남도는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7개 군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30) 2004년 6월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제1차 육아지원 방안이 보고된 이후 아동별 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 등임.

〈표 III-2-6〉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및 추가 설치 필요에 대한 공무원 의견

구분	시·군·구	읍·면·동	수	설치 필요여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1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서도면	6	○
	옹진군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3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삼동면	2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1	-
	안성시	서운면, 고삼면	2	-
	양평군	단월면, 청운면	2	×
	파주시	군내면	1	-
	연천군	미산면, 중면, 장남면	3	×
강원도	춘천시	남면, 북산면	2	-
	강릉시	왕산면	1	-
	삼척시	가곡면, 하장면, 신기면, 노곡면, 미로면	5	-
	홍천군	두촌면, 내촌면, 서면	3	×
	영월군	상동읍, 하동면, 북면, 남면, 수주면	5	○
	평창군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	3	○
	정선군	동면	1	×
	철원군	근남면	1	×
	화천군	하남면	1	×
	양양군	서면, 현북면	2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노은면, 소태면	3	-
	제천시	청풍면, 한수면	2	-
	보은군	내속리면, 외속리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9	×
	옥천군	군북면, 군서면,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동이면	6	○
	영동군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양산면	4	×
	괴산군	감물면, 장연면, 칠성면, 문광면, 소수면	5	○
	음성군	원남면, 맹동면	2	×
	단양군	단성면,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	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1	-
	공주시	이인면, 사곡면	2	-
	보령시	오천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4	-
	논산시	부적면, 벌곡면, 가야곡면	3	-
	금산군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6	-
	연기군	전동면	1	×
	부여군	내산면, 구룡면, 옥산면, 양화면, 초촌면	5	○
	서천군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종천면	6	○
	청양군	운곡면, 대치면, 목면, 장평면, 남양면	5	○
	홍성군	장곡면, 은하면, 서부면	3	×
	예산군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3	○
	태안군	남면, 근흥면, 이원면	3	○
	당진군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3	○

(표 계속)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나포면	2	-
	익산시	웅포면, 성당면, 낭산면, 망선면, 용동면	5	-
	정읍시	소성면, 영원면, 덕천면, 산내면, 이평면	5	-
	남원시	주천면, 수지면, 대강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6	-
	김제시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진봉면, 봉남면, 황산면, 광활면	8	-
	완주군	비봉면, 경천면	2	×
	진안군	웅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천면, 백운면, 정천면, 주천면	7	×
	무주군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3	×
	장수군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3	×
	임실군	청응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9	×
	순창군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금과면, 구림면	5	○
	고창군	성송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4	×
부안군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보안면, 상서면, 위도면	6	○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정면, 삼산면	3	-
	순천시	송주읍, 송광면, 상사면, 월등면	4	-
	나주시	문평면, 산포면, 다도면	3	-
	광양시	진상면, 다압면	2	-
	담양군	봉산면, 고서면, 남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8	×
	곡성군	오곡면, 삼기면, 죽곡면, 목사동면, 고달면, 겸면, 오산면	7	○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광의면	4	×
	고흥군	포두면, 동일면, 점암면, 영남면, 남양면	5	×
	보성군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울어면, 문덕면, 웅치면	6	○
	장흥군	안양면, 장동면, 유치면, 부산면	4	×
	강진군	대구면, 마량면, 신전면, 작천면, 움천면	5	×
	해남군	삼산면, 현산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5	×
	영암군	금서면, 서호면	2	×
	무안군	몽탄면	1	×
	영광군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낙월면	5	×
	장성군	서삼면, 삼서면, 북일면, 북하면, 진원면	5	×
	완도군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3	×
신안군	자은면, 하의면, 팔금면	3	○	
진도군	군내면, 조도면	2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북면, 죽장면	3	-
	경주시	산내면, 서면	2	-
	김천시	농소면, 김천면, 조마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7	-
	안동시	와룡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도산면	5	-
	구미시	무을면, 옥성면	2	-
	영주시	평은면, 문수면, 안정면, 봉현면	4	-

(표 계속)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7	-
	상주시	벌면, 중동면, 낙동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화남면	10	-
	문경시	영순면, 산양면, 동로면	3	-
	경산시	용성면, 남산면	2	-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산성면, 고로면	6	○
	의성군	단촌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12	○
	청송군	부동면, 부남면	2	×
	영양군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4	○
	영덕군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병곡면, 창수면	5	×
	청도군	각남면, 각북면, 운문면, 매전면	4	○
	고령군	덕곡면, 운수면, 개진면, 우곡면	4	○
	성주군	금수면, 대가면	2	○
	칠곡군	기산면	1	×
	예천군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10	×
	봉화군	물야면, 법전면, 소천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6	○
	울진군	서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4	○
	울릉군	서면, 북면	2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진성면, 사봉면	3	-
	통영시	산양읍, 도산면, 옥지면, 한산면	4	-
	사천시	축동면, 곤명면	2	-
	밀양시	상동면, 산외면, 청도면	3	-
	거제시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하창면, 장목면	5	-
	양산시	원동면	1	-
	의령군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봉수면, 공류면, 유곡면	10	×
	함안군	함안면, 법수면, 여항면	3	×
	창녕군	고암면, 성산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9	○
	고성군	삼산면, 하일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동해면	9	○
	남해군	상주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4	○
	하동군	고전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4	×
	산청군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	8	○
	함양군	백전면, 병곡면, 서상면, 서하면, 유림면, 지곡면, 휴천면	7	○
	거창군	웅양면, 고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북면, 북상면	8	○
	합천군	묘산면, 쌍백면,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 울곡면, 쌍책면, 적중면, 덕곡면, 청덕면	10	○

자료: 여성가족부(2006). 내부자료 및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보육담당공무원의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수와 관계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양양군은 보육시설 미설치 면이 2개 지역인데도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에 충북 예천군, 경남 의령군은 미설치 면 10개소, 충북 보은군은 미설치 지역이 9개 면인데도 추가설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는 일률적 판단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과 재정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개개인의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나. 보육시설 설치시 적절한 장소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초기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건물 활용 가능성을 질문하였다. 군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존 건물로는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지적한 비율이 30.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존 초등학교 22.1%, 폐교 18.6%의 순서이다. 14.0%는 활용할 시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공립보육시설 설치시 가능한 기존 건물

단위: 개, %		
구분	수	비율
폐교	16	18.6
기존 초등학교	19	22.1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26	30.2
농협건물	0	0
기타(민간 시설 변경, 임대 아파트 내)	13	15.1
활용할 시설 없음	12	14.0
계	86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기존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22.1%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 20.9%, 어렵다 60.5%로 81.4%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비율은 18.5%이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단위: 개, %		
구분	수	비율
매우 가능	-	-
가능	16	18.6
어려움	52	60.5
매우 어려움	18	20.9
계	86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초등학교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요 이유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관장하는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성격과 설치 기준 등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소수가 소규모 보육시설은 연령별 반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으로 아동 부모들에게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 건물 활용가능성을 질문하였는데, 가장 바람직한 기존 건물로는 초등학교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군은 초등학교 69.6%, 폐교 14.7%, 마을회관 9.8%의 순이고, 화순군은 초등학교 66.0%, 마을회관 19.2%, 농협건물 11.5%의 순이다(표 III-2-9 참조).

초등학교를 지정한 비율이 공무원 조사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은 부모들이 공무원들에 비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의 부처 등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초등학교내 보육시설 설치 실시 가능성의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III-2-9〉 영유아별 기존건물을 활용해 보육시설 설치 시 적합한 건물유형

단위: %(명)

구분	폐교	마을회관	농협건물	초등학교	기타	계(수)	$\chi^2(df)$
전체							
영아	7.3	15.6	7.3	67.7	2.1	100.0( 96)	
유아	4.9	15.4	8.6	67.3	3.7	100.0(162)	1.22(4)
계	5.8	15.5	8.1	67.4	3.1	100.0(258)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18.9	5.4	5.4	70.3	-	100.0( 37)	
유아	12.3	12.3	1.5	69.2	4.6	100.0( 65)	n.a
계	14.7	9.8	2.9	69.6	2.9	100.0(10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22.0	8.5	66.1	3.4	100.0( 59)	
유아	-	17.5	13.4	66.0	3.1	100.0( 97)	n.a
계	-	19.2	11.5	66.0	3.2	100.0(156)	

주: na는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3. 정책시사점

앞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 보육담당자의 상당수가 아동의 장거리 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보육시설 설치 필요를 느끼지만, 민간개인 보육시설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면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부지 및 건축비 분담금, 설치 후 운영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치 방법은 초등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의 확충시 2/3가 초등학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의성군에서는 폐교를 이용

하지는 응답도 15%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군 보육담당공무원들은 다수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병설유치원은 지역 차이가 있으나 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첫째, 아동의 아동거리가 너무 먼 일부 먼 지역에는 반드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정책이 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부처의 이원화로 인하여 중앙정부 결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협력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 IV.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

제4장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은 주로 전화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 86개 군 읍·면지역에 분포하는 344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건물형태 및 사용 층, 정원 충족률, 교사 현황, 보육료, 수입 지출 등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설치된 보육시설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은 농촌의 특성을 그 어느 보육시설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일반 보육시설 운영 현황

#### 가. 일반 현황

##### 1) 건물형태

농어촌 보육시설의 건물형태로는 단독시설이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반주택이 11.7%, 아파트가 10.5%, 타 시설 부설이 9.3%, 상가가 5.2%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1 참조).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읍 지역에서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53.4%로 면지역에서 단독시설을 가진 경우 69.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 타시설 부설, 기타 비율은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보육시설 건물형태

단위: %(개소)

구분	단독시설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	타 시설 부설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1.5	11.7	10.5	5.2	9.3	1.7	100.0(343)	
지역								
읍	53.4	14.4	11.5	8.1	10.9	1.7	100.0(174)	12.5(5)*
면	69.8	8.9	9.5	2.4	7.7	1.8	100.0(16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77.4	-	-	-	21.0	1.6	100.0( 62)	
법인보육시설	86.3	2.0	-	-	9.8	2.0	100.0(102)	n.a
민간보육시설	63.6	16.4	0.9	10.0	6.4	2.7	100.0(110)	
가정보육시설	7.4	29.4	51.5	10.3	1.5	0.0	100.0( 68)	

주: \*  $p < .05$ , na는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 비교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단독시설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타시설 부설인 경우가 21.0%였다. 법인보육시설 또한 단독시설이 86.3%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타시설 부설이 9.8%, 일반주택이 2.0%였다. 민간보육시설은 63.6%가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주택이 16.4%, 상가가 10.0%를 차지했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다른 시설유형과는 달리 과반수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반주택이 29.4%, 상가가 10.3%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의 건물형태는 단독시설이 가장 많다.

2004년 조사 결과, 임대여부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건물일부 임대는 대도시 22.4%, 중소도시 19.1%에 비해 읍면지역이 10.2%로 낮게 나타났다(표 IV-1-2 참조).

〈표 IV-1-2〉 지역별 설립유형 및 지역별 임대여부

단위: %(개소)

구분	자가 (임대 아님)	건물 전체 임대 (전세)	건물 전체 임대 (월세)	건물 일부 임대 (전세)	건물 일부 임대 (월세)	아파트 임대 (전세)	아파트 임대 (월세)	건물 임대 (전세+ 월세)	기타	계
전체	52.1	3.1	3.3	7.7	18.8	5.8	3.5	0.2	5.6	100.0(16,519)
대도시	50.3	2.7	3.2	7.9	22.4	4.5	2.7	0.2	6.1	100.0( 6,684)
중소도시	50.3	3.2	3.2	8.3	19.1	7.1	3.9	0.2	4.8	100.0( 6,722)
읍면지역	59.9	4.0	4.0	5.8	10.2	5.6	4.2	0.2	6.2	100.0( 3,113)

자료: 이미화 외(2004), 2004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2) 보육시설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단일 층 사용시 1층 사용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층을 사용할 경우 2, 3층 사용이 가능하다.

읍면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층은 전체적으로 1층에 위치한 경우가 59.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1층과 더불어 2층 이상을 모두 사용하는 보육시설이 35.2%이고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3.8%였다. 이는 앞의 표에서 단독시설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도 상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읍지역 보육시설 중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가 5.2%이고, 면지역은 2.4%이다. 면지역의 단독시설 비율이 읍지역에 비해 높았던 점을 상기하면 읍지역에서 건물의 일부 즉,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을 사용하는 비율이 면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1층을 포함한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총 96.8%에 이르고 3.2%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에 위치한다. 법인보육시설 또한 1층 34.3%, 1층과 2층 이상 사용은 61.8%로 총 9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간보육시설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이 4.5%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1층만 사용이 91.2%로 월등히 높으나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도 7.4%로 시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표 IV-1-3〉 보육시설 위치 층

단위: %(개소)

구분	1층	1층과 2층 이상	1층 제외한 2층 이상	기타	계(수)
전체	59.0	35.2	3.8	2.0	100.0(344)
지역					
읍	60.9	30.5	5.2	3.4	100.0(174)
면	57.1	40.0	2.4	0.6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51.6	45.2	3.2	0.0	100.0( 62)
법인보육시설	34.3	61.8	1.0	2.9	100.0(102)
민간보육시설	65.8	26.1	4.5	3.6	100.0(111)
가정보육시설	91.2	1.5	7.4	0.0	100.0( 68)

주: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 나. 운영관련 사항

##### 1) 정원 충족률

농어촌 보육시설의 아동 정원대비 현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원이 충족되고 있는지 미달되고 있는지, 혹은 초과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령에 따라 영아와 유아, 그리고 취학아동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V-1-4〉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영아 정원 충족률을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 전체적으로 정원의 100%가 충족되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46.6%이고, 42.5%가 미달이며, 5.9%가 정원을 초과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읍 지역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이 면지역보다 다소 높다.

〈표 IV-1-4〉 영아정원 충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00%충족	정원미달	정원초과	기타	계(수)	x2(df)
전체	46.6	42.5	5.9	5.0	100.0(320)	
지역						
읍	50.9	37.9	5.6	5.6	100.0(161)	3.2(3)
면	42.1	47.2	6.3	4.4	100.0(15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56.7	36.7	5.0	1.7	100.0(60)	
법인보육시설	39.8	52.0	5.1	3.1	100.0(98)	n.a
민간보육시설	47.4	38.1	8.2	6.2	100.0(97)	
가정보육시설	46.9	39.1	4.7	9.4	100.0(64)	

주: n.a는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는, 정원 100% 충족은 국·공립보육시설이 56.7%로 가장 높고,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낮다.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47% 정도가 정원충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원초과가 가장 많은 유형은 민간보육시설로 8.2%이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충족정도를 보면 충족률이 34.3%로 영아의 충족률보다 12.3%p 낮고, 상대적으로 정원미달률은 57.9%로 영아의 경우보다 15.4%p 높았다. 유아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응답한 곳은 2.7%이다. 지역별로 보면, 읍지역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 비율이 38.0%로 면지역 31.0%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정원이 미달된 곳은 각각 54.2%, 61.3%로 면지역에서 많았다. 정원초과 비율은 읍이 3.5%, 면이 1.9%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영아와는 달리, 가정보육시설에서 정원충족 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 41.7%, 민간보육시설 33.0%, 법인보육시설 23.7% 순이었다. 정원 초과율은 민간보육시설 4.0%로 가장 높다.

〈표 IV-1-5〉 유아정원 충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00%충족	정원미달	정원초과	기타	계(수)
전체	34.3	57.9	2.7	5.1	100.0(297)
지역					
읍	38.0	54.2	3.5	4.2	100.0(142)
면	31.0	61.3	1.9	5.8	100.0(155)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41.7	56.7	1.7	0.0	100.0(60)
법인보육시설	23.7	68.8	3.2	4.3	100.0(93)
민간보육시설	33.0	58.0	4.0	5.0	100.0(100)
가정보육시설	50.0	36.4	0.0	13.6	100.0(44)

주: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표 IV-1-6〉 취학아동 정원 충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00%충족	정원미달	정원초과	기타	계(수)
전체	40.9	36.4	13.6	9.1	100.0(22)
지역					
읍	44.4	33.3	11.1	11.1	100.0(9)
면	38.5	38.5	15.4	7.7	100.0(13)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00.0	0.0	0.0	0.0	100.0(2)
법인보육시설	14.3	57.1	14.3	14.3	100.0(7)
민간보육시설	46.2	30.8	15.4	7.7	100.0(13)
가정보육시설	-	-	-	-	-

주: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는 가정보육시설은 없음.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한편으로 방과후 보육은 정원을 충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40.9%이고, 36.4%는 정원 미달이며, 정원초과는 1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지역 보육시설에서 정

원을 충족한 비율이 44.4%로 면지역 38.5%보다 다소 높고 정원미달률은 각각 33.3%, 38.5%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는 100.0%가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46.2%, 법인시설은 14.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보육시설 현원이 인가 받은 정원보다 부족한 이유로 지역내 보육대상 아동이 적다는 것이 46.2%로 가장 많이 꼽혔고 주변에 보육시설이 많다는 이유도 13.1%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반별 정원 맞추기 등 원내 사정을 이유로 든 비율도 30% 이상이었다(표 IV-1-7 참조).

〈표 IV-1-7〉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다고 답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집에서 멀어서	아동이 적어서	보육 시설이 많아서	보육료 부담	보육환경 미비	이용 불필요	반별 정원 등 보육시설 사정	계(수)
전체	2.3	46.2	13.1	3.6	2.3	0.9	31.7	100.0(221)
지역								
읍	1.8	38.5	14.7	3.7	2.8	0.9	37.6	100.0(109)
면	2.7	53.6	11.6	3.6	1.8	0.9	25.9	100.0(112)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4.8	40.5	11.9	2.4	2.4	0.0	38.1	100.0(42)
법인보육시설	2.6	56.4	11.5	1.3	3.8	0.0	24.4	100.0(78)
민간보육시설	-	52.2	15.9	2.9	1.4	1.4	26.1	100.0(69)
가정보육시설	3.2	16.1	12.9	12.9	0.0	3.2	51.6	100.0(31)

주: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결과는 읍·면에 따른 지역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유형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대상 아동이 적어서 16.1%, 주변보육시설이 많아서 12.9%, 부모의 보육료 부담 때문 12.9%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타의 이유를 든 응답자가 평균 31.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보육시설 운영 시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어촌 보육시설의 일일 평균 운영시간은 11.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읍지역은 11.3시간, 면지역은 이보다 적은 10.7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읍지역이 면보다는 평균 운영시간이 더 길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은 모두 평균 10.8~10.9 시간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가정보육시설은 11.5시간으로 운영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11시간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가정보육시설은 11시간 30분을 평균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002년 전국실태조사 자료(서문희 외, 2002)에 의하면 전국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평균 10.8시간으로 대도시 지역 11.8시간, 중소도시 11.4시간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표 IV-1-8〉 보육시설 총 운영시간

단위: 시간(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11.0	1.4	344	
지역				
읍	11.3	1.3	174	11.64**
면	10.7	1.5	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0.9	1.3	62	
법인보육시설	10.9	1.2	102	3.61*
민간보육시설	10.8	1.5	111	
가정보육시설	11.5	1.7	68	

주: \*\* p<.01, \* p<.05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 3) 등·하원용 차량의 운행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행하는 비율이 88.7%이다. 차량 1대를 운행하는 곳은 64.5%였고 차량 2대는 21.8%, 차량 3대 이상은 2.3%였다. 지역별로 보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비율에서 읍지역 14.4%, 면지역 8.2%로 읍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9〉 운행 차량 수

단위: %(개소)

구분	0	1	2	3	계(수)
전체	11.3	64.5	21.8	2.3	100.0(344)
지역					
읍	14.4	62.6	21.3	1.7	100.0(174)
면	8.2	66.5	22.4	2.9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1.3	77.4	9.7	1.6	100.0(62)
법인보육시설	2.0	51.0	43.1	3.9	100.0(102)
민간보육시설	2.7	73.0	21.6	2.7	100.0(111)
가정보육시설	38.2	60.3	1.5	0.0	100.0(68)

주: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공립보육시설 11.3%이었다. 차량 1대를 운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국공립보육시설 77.4%이었고 다음이 민간보육시설 73.0%, 가정보육시설 60.3%, 법인보육시설 51.0%이었다. 차량 2대를 운행하는 비율은 법인보육시설이 43.1%로 가장 높아

법인보육시설의 규모가 커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아동을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3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도 법인보육시설 3.9%, 민간개인시설 2.7%이다.

<표 IV-1-10>은 차량이 운행하는 읍면의 수를 나타낸다. 평균 1개의 읍·면을 운행하는 경우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개의 읍·면 20.6%, 3개는 17.4%, 4개 8.4%, 5개 8.1%로 나타났다. 차량이 15개 면을 돈다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설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11.3%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45.2%가 1개 읍·면, 24.2%가 2개의 읍·면을, 19.4%가 3개 이상 읍·면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민간보육시설은 3개 이상 읍·면을 운행하는 비율이 48.6%였고 법인보육시설은 42.2%였다. 가정보육시설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비율이 38.2%이나 2개 이상 읍·면을 운행하는 비율이 13.3%이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이 비교적 근린 지역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비해 나머지 유형의 보육시설은 3개 이상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0> 차량 운행 읍·면 수

단위: %(개소)

구분	0	1	2	3	4	5	15	계(수)	x2(df)
전체	11.3	33.7	20.6	17.4	8.4	8.1		100.0(344)	
지역									
읍	14.4	30.5	19.5	18.4	6.3	10.9		100.0(174)	10.6(6)
면	8.2	37.1	21.8	16.5	10.6	5.3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1.3	45.2	24.2	9.7	6.5	3.2	-	100.0(62)	
법인보육시설	2.0	26.5	29.4	19.6	9.8	11.8	1.0	100.0(102)	100.1(18)***
민간보육시설	2.7	32.4	16.2	27.0	9.0	12.6	-	100.0(111)	
가정보육시설	38.2	36.8	11.8	5.9	7.4	0.0	-	100.0(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2003년 조사에서 농어촌 보육시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109.8km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면이 120.1km로, 읍 98.3km보다 다소 길다. 시설유형별로는 조사 규모가 적은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민간보육시설이 132.6km로 길고, 법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의 순서이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월 평균비용은 평균 151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거리가 긴 면 지역이 다소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차량대수별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차가 1대는 월 112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대는 평균 198만원, 3대는 평균 244만원이 소요되며, 4대는 279만원, 5대는 303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문희 외, 2003).

〈표 IV-1-11〉 차량운영 경우 1일 운행거리 및 월평균 소요비용

단위: km, 만원, 개소

구분	1일 평균 운행거리	월평균비용	(수)
전체 평균 (표준편차)	109.8 (98.4)	151.2 (84.5)	(598)
읍	98.3	146.3	(286)
면	120.1	155.5	(312)

자료: 서문희 외(2004). 농어촌 보육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어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81.1%의 시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고, 26.2%의 보육시설은 지입 차량을, 6.5%는 기타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를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 대개 1대만 소유하고 그 이외는 지입 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는 면 소재 보육시설에서 지입 차량을 운행한다는 시설의 비율이 29.5%로 읍 22.6%보다 다소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입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이 48.6%로 매우 높고, 다음 법인이 27.6%, 민간이 17.4%이다.

〈표 IV-1-12〉 보육시설의 차량 소유 특성

단위: %, 개소

구분	시설소유	지입	기타	(수)
전체	81.1	26.2	6.5	(598)
지역				
읍	81.9	22.6	7.0	(286)
면	80.3	29.5	6.0	(312)
시설유형				
국공립	51.4	48.6	4.7	(107)
법인	87.6	27.6	8.4	(272)
법인의외	82.4	11.8	5.9	( 17)
민간	91.3	17.4	6.2	(160)
직장	60.0	-	-	( 5)
가정	75.7	-	-	( 37)

주: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중복응답이 있을 수 있음.

자료: 서문희 외(2004).

다음 <표 IV-1-13>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아동 중 가장 장시간 차를 타는 아동의 평균 등원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30.4분, 표준편차 13.9분으로 보고되었고 지역별로는 평균이 읍지역은 32.6분, 면지역은 28.0분으로, 면지역 보육시설 아동의 승차 이동시간이 읍지역 경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는 90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3〉 차량이용 최장 등원 시간

단위: 분(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t
전체	30.4	13.9	3	90	305	
지역						
읍	28.0	13.5	3	80	149	8.69**
면	32.6	14.0	5	90	156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7.8	12.5	5	60	62	
법인보육시설	32.5	13.0	10	70	102	27.68***
민간보육시설	32.9	14.9	7	90	111	
가정보육시설	22.1	11.4	3	55	68	

주: \*\* p<.01,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 비교에서는 가장 차를 길게 탄다는 아동의 평균시간은 민간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 32분 수준이고, 국공립보육시설 28.8분 순이었다. 가정보육시설은 22.1분으로, 장거리 아동이 이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이 거리상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3.9%의 보육시설에서 주변에 그런 경우의 아동이 있다고 응답하여 거리상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상당수 있음을 나타냈다 (표 IV-1-14 참조).

〈표 IV-1-14〉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없음	있음	계(수)	$\chi^2(df)$
전체	76.1	23.9	100.0(343)	
지역				
읍	74.0	26.0	100.0(173)	0.9(1)
면	78.2	21.8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69.4	30.6	100.0(62)	
법인보육시설	73.5	26.5	100.0(102)	3.3(3)
민간보육시설	79.3	20.7	100.0(111)	
가정보육시설	80.6	19.4	100.0(67)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경향은 읍·면 지역에 따른 비교나 시설유형에 따른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대규모 시설이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주변에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3년 농어촌 보육시설조사에서도 시설장 중 보육시설이 거리상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29%이었다.

4) 보육료

종일반 및 반일반 보육료를 연령별로 조사하였다. 12개월 미만의 영아 종일반의 평균 보육료는 314,400원, 표준편차 68,800원으로 읍·면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 시설유형별로도 유의한 평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284,500원으로 가장 낮고 가정보육시설이 339,200원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5〉 12개월 미만 영아의 보육료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종일반				반일반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314.4	68.8	54		226.3	74.0	6	
지역								
읍	312.5	57.1	30	0.05	230.0	81.2	4	0.02
면	316.8	82.4	24		219.0	86.3	2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84.5	73.0	4					
법인보육시설	304.5	82.0	13	1.77	150.0	.	1	1.35
민간보육시설	301.5	71.0	12		300.0	0.0	2	
가정보육시설	339.2	42.5	24		202.7	67.2	3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반일반 보육료를 적용하는 보육시설의 수가 6개소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6개 보육시설의 평균보육료는 226,300원(표준편차 68,800원)으로 나타나 종일반보다는 88,100원 정도가 낮았으며 이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평균이 약간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보다 약간 높았다.

〈표 IV-1-16〉 만1세아의 보육료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종일반				반일반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259.5	57.6	184		215.8	43.5	26	
지역								
읍	268.6	49.7	99	5.39	221.6	40.9	17	0.85
면	249.0	64.2	85		205.0	48.5	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47.4	63.0	34		222.4	41.2	8	
법인보육시설	256.2	59.7	59	1.77	208.3	54.0	7	1.35
민간보육시설	256.4	60.7	45		230.7	41.9	7	
가정보육시설	279.8	35.7	45		190.0	28.3	4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만1세 영아 종일반 보육료 평균이 259,500원, 표준편차 57,600원으로 12개월 미만 영아의 평균 보육료보다는 54,90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 아동의 보육료는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읍지역은 268,600원, 면지역은 249,000원인데 편차가 심했다.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령대 반일반<sup>31)</sup> 보육료는 평균 215,800원, 표준편차 43,500원으로 종일반의 경우보다 43,700원 정도가 저렴하고 만2세 영아의 종일반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비용은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가 190,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2세 영아의 보육료는 평균 212,000원, 표준편차 48,600원으로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지역은 222,300원, 면지역 201,200원으로 읍지역이 평균 21,100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별로는 가장 보육료가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가정보육시설은 26,000원정도가 더 비싼 228,100원을 받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가 21만원 수준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44개 조사대상 중 46개 보육시설이 반일반 보육료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만2세 영아의 반일반 보육료는 평균 168,100원 표준편차 27,500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약간 높았다. 시설유형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근소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있었다.

〈표 IV-1-17〉 만2세 영아의 보육료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종일반				반일반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212.0	48.6	258		168.1	27.5	46	
지역								
읍	222.3	42.3	132	12.69***	173.5	27.5	27	12.21***
면	201.2	52.5	126		160.4	26.2	1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01.9	52.4	54		165.0	25.6	14	
법인보육시설	211.0	50.9	84	2.52	173.6	32.7	11	0.24
민간보육시설	212.3	47.3	74		165.9	31.3	14	
가정보육시설	228.1	34.4	45		170.0	15.3	7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마지막으로 만3세이상 유아의 종일반 보육료는 158,400원, 표준편차 29,400원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정부지원단가와 거의 동일하며 편차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지역이 163,900원으로 면지역 153,000원보다는 10,9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이 가장 낮은 147,9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보육료가 가장 높은 가정보육시설은 183,400원으로 35,500원 차이가

31) 만1세 영아를 보육시설 중 26개소만이 반일반 보육료를 적용하고 있었음.

났다. 법인보육시설은 150,700원, 민간보육시설은 165,500원을 유아 종일반 보육료로 보고 하였다.

〈표 IV-1-18〉 만3세이상 유아의 보육료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종일반				반일반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158.4	29.4	268		142.8	27.5	61	
지역								
읍	163.9	27.5	133	9.51**	143.5	27.6	35	0.05
면	153.0	30.3	135		141.8	27.8	26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47.9	21.1	57	15.17***	132.5	14.9	15	3.49*
법인보육시설	150.7	23.6	94		130.6	24.3	14	
민간보육시설	165.5	32.4	89		152.4	29.0	27	
가정보육시설	183.4	32.0	28		156.0	37.8	5	

주: \*\* p<.01,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만3세이상의 유아 반일반 보육료를 적용하는 곳은 전체 344개소 중 61개소, 17.7%인데, 평균 보육료는 142,800원, 표준편차 27,500원으로 종일반 보육료에 비해서 15,600원이 낮았다. 반일반 보육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설유형별로는 뚜렷한 가격차가 보였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이 132,500원이고 법인보육시설이 130,6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데 비해 민간보육시설은 152,400원, 가정보육시설은 156,000원으로 표준편차를 고려했을 때 최고 46,400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9〉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비용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77.2	35.7	27	
지역				
읍	105.3	38.0	9	11.89**
면	63.1	25.3	18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79.0	.	1	5.83**
법인보육시설	81.1	20.6	6	
민간보육시설	60.5	25.4	15	
가정보육시설	12.2	43.8	5	

주: \*\* p<.01 사례수가 미흡하여 분석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한편으로 방과후 보육반이 운영되고 있는 27개 보육시설 평균 보육료는 77,200원, 표준편차 35,700원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 보육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읍 지역은 105,300원으로 면지역 63,100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장 보육료가 높은 곳인 법인보육시설은 81,100원인데 비해 가

장 보육료가 낮은 가정보육시설은 12,200원에 지나지 않았다. 해당 시설 수가 1군데였던 국공립보육시설은 방과후 보육료를 79,000원으로 보고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은 60,500원으로 조사되었다.

5)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침인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앞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63.1%로 나타났고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도 11.9%였다. 그러나 25.0%는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지역에서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가 16.1%로 면지역 7.6%보다 많았고 앞으로 받을 계획을 없다는 비율은 면지역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비율은 국공립보육시설 32.3%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이 법인보육시설 14.7%, 가정보육시설 4.4%, 민간보육시설 2.7% 순이었다.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1%, 34.2%로 높았고,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도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9~10%가 되어서 농어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 프로그램 등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IV-1-20> 평가인증 계획

구분	평가인증 계획			계(수)	x2(df)
	있음	없음	기 수용		
전체	63.1	25.0	11.9	100.0(344)	
지역					
읍	61.5	22.4	16.1	100.0(174)	6.2(2)*
면	64.7	27.6	7.6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58.1	9.7	32.3	100.0(62)	72.4(6)***
법인보육시설	76.5	8.8	14.7	100.0(15)	
민간보육시설	63.1	34.2	2.7	100.0(111)	
가정보육시설	48.5	47.1	4.4	100.0(68)	

주: \* p<.05,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평가인증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대응하기 힘든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부환경 기준을 43.9%로 제일 많은 시설이 지적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이 어렵다고 답한 시설이 13.7%였고, 교사 등 인력 자격 7.6%, 프로그램 운영 7.0%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응답이 22.4%를 차지하였다.

읍에 비해 면지역이 주변환경, 내부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많이 들었고, 읍지역은 안전장치, 교사 등 인력 자격, 프로그램운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설별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실내 내부환경을 지적한 비율이 32.3%로 비교적 낮은



데 비해 가정보육시설은 5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먼 지역보육이 열악한 시설내외 환경과 아동수의 제약으로 인한 평가인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표 IV-1-21〉 난이도가 높은 평가인증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주변 환경	내부 환경	안전 장치	인력 자격	프로 그램	아동수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3.8	43.9	1.2	7.6	7.0	13.7	22.4	0.6	100.0(344)
지역									
읍	3.4	43.7	1.7	8.0	8.0	12.1	23.0	0.0	100.0(174)
면	4.1	44.1	0.6	7.1	5.9	15.3	21.8	1.2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4.8	32.3	3.2	6.5	4.8	6.5	41.9	0.0	100.0(62)
법인보육시설	2.9	43.1	0.0	6.9	7.8	18.6	20.6	0.0	100.0(102)
민간보육시설	4.5	43.2	0.9	8.1	9.0	13.5	20.7	0.0	100.0(111)
가정보육시설	2.9	55.9	1.5	8.8	4.4	13.2	10.3	2.9	100.0(68)

주: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6) 교사 현황

가) 자격 및 학력

2004년에 조사된 교사 학력은 읍면지역에 고졸자 비율이나 4년제 대학 학력 비율은 도시보다 낮고 전문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표 IV-1-22 참조). 교사 자격도 읍면 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은 1급 보육교사 및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시설은 읍면지역의 시설보다 2급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23 참조).

〈표 IV-1-22〉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 최종학력 특성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 재학	대학교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졸	계
전체	21.2	57.5	6.3	13.2	0.8	0.9	100.0(55,031)
대도시	21.8	52.9	7.1	15.8	1.0	1.3	100.0(24,037)
중소도시	22.9	57.9	6.1	11.8	0.7	0.7	100.0(19,876)
읍면지역	16.9	67.0	4.9	10.1	0.6	0.5	100.0(11,118)

자료: 이미화 외(2004),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표 IV-1-23〉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 소지자격 특성

단위: %(명)

구분	1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1·2급 유치원 정교사	특수 교사	간호사 양호 교사	1·2급 사회 복지사	기타 자격	자격 없음	계
전체	52.3	32.3	12.3	0.8	0.5	0.4	1.2	0.0	100.0(55,182)
대도시	51.0	34.3	11.3	1.1	0.6	0.4	1.4	0.0	100.0(24,155)
중소도시	51.8	33.1	12.3	0.7	0.5	0.5	1.2	0.0	100.0(19,910)
읍면지역	56.4	26.7	14.7	0.3	0.4	0.6	1.0	0.0	100.0(11,117)

자료: 이미화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그런데 본 조사에서 무자격 교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95.3%의 시설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미자격 교사가 1명 있는 보육시설이 2.3%, 2명인 경우가 1.2%, 3명인 경우가 0.6%, 4명과 5명인 경우도 각각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3>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중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는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에서 미자격자가 있다는 비율이 다소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법인보육시설의 교사는 100%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보고되었고 국공립시설은 62개소 중 1곳만이 미자격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한 시설 비율이 높아서, 민간시설은 6.3%로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가정보육시설은 11.8%로 무자격 교사 채용 시설 비율이 가장 높다. 가정보육시설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의 수가 1-2명인 비율이 8.8%, 3-4명인 곳이 3.0%이다.

〈표 IV-1-24〉 미자격 교사수

단위: %(개소)

구분	0	1	2	3	4	5	계(수)
전체	95.3	2.3	1.2	0.6	0.3	0.3	100.0(344)
지역							
읍	94.8	2.9	1.7	0.0	0.6	0.0	100.0(174)
면	95.9	1.8	0.6	1.2	0.0	0.6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98.4	0.0	0.0	1.6	0.0	0.0	100.0(62)
법인보육시설	100.0	0.0	0.0	0.0	0.0	0.0	100.0(102)
민간보육시설	93.7	4.5	0.9	0.0	0.0	0.9	100.0(111)
가정보육시설	88.2	4.4	4.4	1.5	1.5	0.0	100.0(68)

주: 자료의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 나) 급여

본 농어촌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급여와 근무연수를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의 경우와 경력이 가장 긴 교사의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각 보육시설에서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의 경우 평균 근무연수는 평균 1.9년, 표준편차 2.0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비교해 보면, 가정보육시설에서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의 연수가 평균 2.7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국공립보육시설로 2.2년, 법인과 민간 개인보육시설은 1.6년으로 나타나 시설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의 급여는 평균 103만1천원 정도였으며 읍지역이 100만4천원으로 면지역 105만8천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22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법인으로 119만3천원이었다. 가장 급여가 낮은 시설유형은 가정보육시설로 81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보육시설도 9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IV-1-25 참조).

〈표 IV-1-25〉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의 근무연수와 급여

단위: 년, 개소

구분	근무연수				급여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1.9	2.0	339		1031.1	2251.9	340	
지역								
읍	1.7	2.0	170	3.07	1004.7	221.7	171	4.98*
면	2.1	1.9	169		1057.8	226.2	16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2	2.0	62		1222.2	131.5	62	
법인보육시설	1.6	1.3	102	6.07**	1192.6	147.7	102	148.69***
민간보육시설	1.6	1.2	110		899.3	156.3	110	
가정보육시설	2.7	3.2	64		816.0	150.3	64	

주: \*\* p&lt;.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반면, 보육시설에서 경력이 가장 긴 교사의 경우 평균 근무연수는 7.3년, 표준편차 4.2년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최장 경력교사의 근무연수가 10.2년으로 가장 길고 법인보육시설이 8.0년, 민간보육시설이 5.6년,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 5.4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 중 가장 경력이 긴 교사의 급여 평균은 132만8천원이고, 표준편차 31만7천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읍이나 면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역시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은 161만8천원인데 반해 가정보육시설은 가장 낮은 99만7천원으로 시설유형간 급여 차이는 60만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도 차이는 크다고 하겠다.

〈표 IV-1-26〉 경력이 가장 긴 교사의 근무연수와 급여

단위: 년, 천원, 수

구분	근무연수				급여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7.3	4.2	315		1328.1	317.6	315	
지역								
읍	7.0	4.1	157	2.91	1310.7	313.1	157	2.15
면	7.6	4.2	158		1345.3	322.1	158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0.2	4.8	62		1618.3	193.7	62	
법인보육시설	8.0	3.5	101	25.04***	1517.2	170.8	101	142.93***
민간보육시설	5.6	3.4	104		1122.9	234.6	104	
가정보육시설	5.4	3.6	47		996.8	228.5	47	

주: \*\* p<.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교사 급여 수준은 2005년 조사(서문희 외, 2005)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 월 평균 총 수령액은 106만원 정도이다. 보육교사의 급수별로 1급 교사가 평균 118만원 수준이고 2급 교사는 92만원으로 산출하였고, 민간 개인시설은 96만5천원, 가정보육시설 82만5천원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2004년 조사에서는 읍면지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도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IV-1-27 참조). 읍면 보육시설에 법인 등 정부지원 시설이 많고, 1급 교사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표 IV-1-27〉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의 월평균 보수

단위: %(명)

구분	79만원 이하	80~99만원 이하	100~119만원 이하	120~139만원 이하	140만원 이상	계
전체	25.7	27.7	22.7	17.1	6.8	100.0(7,724)
대도시	21.3	29.9	23.3	18.5	6.9	100.0(3,469)
중소도시	36.2	27.5	18.4	13.0	4.9	100.0(2,686)
읍면지역	17.5	23.1	28.6	21.0	9.7	100.0(1,569)

자료: 이미화 외(2004). 2004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다) 교사 채용의 어려움

교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교사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시설장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76.5%로 없다고 답한 경우 23.5%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아 읍·면에 상관없이 교사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설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유형별로 이러한 현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국공립보육

시설은 37.1%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였으나, 이에 비해 기타 유형의 시설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이 훨씬 높다. 즉, 민간보육시설은 85.3%가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법인보육시설은 79.4%, 가정보육시설은 76.4%로 교사채용에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 보육교사 채용 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의 지역 차이가 대도시 56.5%, 중소도시 64.5%, 읍면 65.4%로 중소도시와 읍면이 대도시보다 다소 높았으나(이미화 외, 2004), 본 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표 IV-1-28〉 교사채용이 어려웠던 경우

				단위: %(개소)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 <sup>2</sup> (df)	
전체	76.5	23.5	100.0(344)		
지역					
읍	78.7	21.3	100.0(174)	1.0(1)	
면	74.1	25.9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37.1	62.9	100.0( 62)		
법인보육시설	79.4	20.6	100.0(102)	68.1(3)***	
민간보육시설	85.3	14.7	100.0(111)		
가정보육시설	76.4	23.6	100.0(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 <표 IV-1-29>는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그러한 어려움의 이유를 질문한 응답 결과이다.

〈표 IV-1-29〉 교사채용이 힘든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열악한 농어촌 생활문화환경	출퇴근에 장시간 소요	열악한 급여 및 근무조건	기타	계(수)	χ <sup>2</sup> (df)	
전체	43.7	17.1	34.2	4.9	100.0(263)		
지역							
읍	48.2	8.0	37.2	6.6	100.0(137)	17.4(3)**	
면	38.9	27.0	31.0	3.2	100.0(126)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56.5	13.0	21.7	8.7	100.0( 23)		
법인보육시설	54.3	22.2	18.5	4.9	100.0( 81)	n.a	
민간보육시설	40.0	16.0	40.0	4.0	100.0(100)		
가정보육시설	31.0	12.1	51.7	5.2	100.0( 58)		

주: \*\* p<.01, n.a는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그 결과는 전체응답자 중 43.7%가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문화환경으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열악한 급여 및 근

무조건이 34.2%이고, 출퇴근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응답이 17.1%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서,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이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문화환경이나 열악한 급여 및 근무조건을 지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출퇴근에 장시간 소요가 27.0%로 비율이 매우 높았다. 면지역이 생활문화환경이나 급여 등 근무조건이 읍보다 나은 것은 아닐 것이나 그러한 이유에 더하여 교사들의 생활근거지로부터의 거리라는 요인이 면지역 보육시설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생활문화환경이 각각 56.5%, 54.3%로 가장 큰 이유로 꼽은 반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이와 더불어 열악한 급여 및 근무조건도 각각 40.0%, 51.7%로 어려운 이유로 함께 들었다. 가정보육시설은 농어촌 생활문화환경보다 급여 및 근무조건을 지적인 비율이 19.3%p만큼 더 높았다. 이는 가정보육시설 대부분이 읍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다. 보육아동 특성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환경과 경제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아동이 납부하는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의 수, 보육료 미납 아동,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 1) 가정 환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아동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농어업 가정여부, 미취업모 가정, 조손가정 등을 조사하였다.

##### 가) 농어업가정 아동

먼저 <표 IV-1-30>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육시설 당 평균 29.6%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30.0%로 시설간 차이는 크다. 이 수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읍지역이 17.8%로 비교적 적은데 비해 면지역은 41.7%로 상당히 많았다. 면지역은 표준편차도 32.8%이다. 따라서 면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가 많고 아동도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는 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39.4%이었고 다음이 민간보육시설로 33.3%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25.1%로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은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1%를 농어업 종사자 가정의 아동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소규모인 가정보육시설이 면보다는 읍지역에 많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은 연령이 어린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성 농어민들은 경제활동 특성상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IV-1-30〉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수	F/t
전체	29.6	30.0	100.0	0.0	341	
지역						
읍	17.8	21.1	100.0	0.0	172	64.4***
면	41.7	32.8	100.0	0.0	16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5.1	28.1	95.2	0.0	62	
법인보육시설	39.4	31.4	100.0	0.0	99	11.54***
민간보육시설	33.3	29.5	100.0	0.0	111	
가정보육시설	14.1	23.4	100.0	0.0	68	

주: \*\*\*  $p < .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 2) 미취업모 아동

다음으로는 아동의 주양육자인 모 또는 조모가 취업이나 바깥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인 경우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전체 보육시설의 평균은 20.3%, 표준편차 22.0%이다. 이러한 비율은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이다. 2004년 보육시설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아동 모의 취업률은 39.1%이다(이미화 외, 2005). 즉, 농어촌 여성이 도시여성들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sup>32)</sup>

지역간, 시설유형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에서 미취업모 비율이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나서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과로 인식되었다.

〈표 IV-1-31〉 어머니가 미취업모인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수	F/t
전체	20.3	22.0	94.1	0.0	337	
지역						
읍	20.6	21.3	84.2	0.0	170	0.04
면	20.1	22.8	94.1	0.0	157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26.3	21.9	80.7	0.0	61	
법인보육시설	20.9	23.3	94.1	0.0	99	2.61
민간보육시설	19.5	21.6	86.5	0.0	108	
가정보육시설	15.7	20.2	87.5	0.0	68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32) 그러나 무급종사자가 많음.

3) 조손가정 아동

우리나라 농어촌 아동양육의 문제 중 하나인 조손가정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조손가정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의 수를 조사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로 자녀를 부모나 시부모에게 맡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농어촌 조손가정아동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보육시설 조사 결과, 보육시설 당 조손가정 아동 전체 평균은 8.1%, 표준편차 10.4%로 나타났다. 최대 84%라는 응답도 있다. 지역별로는 읍지역은 평균 5.8%, 면지역은 10.4%로 4.6%p의 차이를 나타냈다. 즉, 조손가정은 읍지역보다 농어업 의존도가 높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면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시설유형별로 수치를 비교해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11.1%로 조손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보육시설이 8.9%, 국공립보육시설이 7.1% 순이었으며, 가정보육시설은 3.1%로 가장 낮은 비율의 조손가정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2〉 조손가정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수	F/t
전체	8.1	10.4	84.0	0.0	343	
지역						
읍	5.8	6.5	35.9	0.0	173	17.82***
면	10.4	12.9	84.0	0.0	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7.1	8.8	50.0	0.0	62	
법인보육시설	8.9	9.7	59.5	0.0	101	9.19***
민간보육시설	11.1	12.8	84.0	0.0	111	
가정보육시설	3.1	5.4	23.1	0.0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4)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가) 0~4세 차등보육료

조사대상 전체 344개소에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 비율은 평균 45.9%, 표준편차 25.4%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읍·면 등 지역별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시설유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나, 가정보육시설이 60.6%로 가장 많았고 민간보육시설이 44.5%, 법인보육시설이 44.1%, 국공립보육시설이 36.7%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IV-1-33 참조).

전액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평균 27.3%, 표준편차 21.9%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시설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보



육시설은 평균 18.4%가 전액 차등보육료 대상으로 보고되었으나 가정보육시설은 35.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었다. 법인보육시설은 28.8%, 민간보육시설은 26.0%가 평균 전액면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3〉 0~만4세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전체)

단위: %,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수	F/t
전체	45.9	25.4	100.0	0.0	344	
지역						
읍	46.0	26.5	100.0	0.0	174	0.02
면	45.7	24.4	100.0	0.0	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35.7	19.1	83.3	0.0	62	
법인보육시설	44.1	19.9	93.8	0.0	102	12.36***
민간보육시설	44.5	27.9	100.0	0.0	111	
가정보육시설	60.6	27.3	100.0	0.0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표 IV-1-34〉 지원유형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

단위: %, 개소

구분	전액지원				일부지원			
	평균	표준편차	수	F/t	평균	표준편차	수	F/t
전체	27.3	21.9	344		19.0	16.3	344	
지역								
읍	26.3	22.5	174	0.82	20.0	17.1	174	1.50
면	28.4	21.2	170		17.9	15.3	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8.4	13.2	62		18.4	13.2	62	
법인보육시설	28.8	18.9	102	7.45***	15.2	10.3	102	4.71**
민간보육시설	26.0	23.4	111		19.5	19.0	111	
가정보육시설	35.7	25.4	68		24.5	19.5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만0~4세인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아 중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평균은 19.0%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대상아동이 많은 곳이 가정보육시설로 평균 24.5%이었고 다음이 민간보육시설 19.5%, 국공립보육시설이 15.2%, 법인보육시설이 15.2% 등의 순이었다(표 IV-1-28 참조).

#### 나)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사 대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의 아동 비율은 평균 13.5%, 표준편차 16.35%이었다.

최대 80%의 아동이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에 따른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 지역은 평균 10.0%이었고 면지역은 17.1%로 면

지역에서 농어민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과 민간개인시설이 약간 높았다.

〈표 IV-1-35〉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수	F/t
전체	13.5	16.3	80.0	0.0	344	
지역						
읍	10.0	13.5	77.8	0.0	174	17.02***
면	17.1	18.1	80.0	0.0	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0.7	11.2	50.0	0.0	62	
법인보육시설	15.8	10.3	80.0	0.0	102	2.02
민간보육시설	14.7	14.9	77.8	0.0	111	
가정보육시설	11.0	19.3	76.9	0.0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 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표 IV-1-36〉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된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 아동 중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비율은 평균 13.4%, 표준편차 12.2%로 나타났다.

읍과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설유형별 비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이 가장 많은 시설유형은 법인보육시설로 16.7%이었고 이어서 민간보육시설 16.2%, 국공립보육시설 15.1% 순이었다. 가정보육시설은 평균 2.7%로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매우 적었으며 이는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표 IV-1-36〉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수	F/t
전체	13.4	12.2	77.8	0.0	344	
지역						
읍	12.4	12.6	77.8	0.0	174	2.87
면	14.6	11.7	62.5	0.0	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5.1	9.9	59.5	0.0	62	
법인보육시설	16.7	10.4	62.5	0.0	102	27.43***
민간보육시설	16.2	13.9	77.8	0.0	111	
가정보육시설	2.7	6.2	25.0	0.0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 5)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농어촌 거주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은 보육료 미납아동과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가) 보육료 미납 아동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보육시설장들에게 해당 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육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장기미납아동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47.1%로 조사되었다. 이는 344개소 중 162개소 정도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보육시설이 보육료 장기 미납 아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료 미납은 보육시설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IV-1-37〉 보육료 장기미납 아동유무

구분				단위: %(개소)	
	없음	있음	계(수)	x2(df)	
전체	52.9	47.1	100.0(344)		
지역					
읍	52.9	47.1	100.0(174)	0.0(1)	
면	52.9	47.1	100.0(170)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51.6	48.4	100.0( 62)		
법인보육시설	44.1	55.9	100.0(102)	45.1(3)***	
민간보육시설	39.6	60.4	100.0(111)		
가정보육시설	88.2	11.8	100.0( 68)		

주: \*\*\* p<.001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법인보육시설이 55.9%, 국공립보육시설이 48.4% 순이었으며 가정보육시설은 11.8%로 가장 낮은 미납아 비율을 보여 시설유형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료가 부담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농어촌 보육시설장의 35.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보육료 차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읍·면 간 차이가 없고, 시설유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영아가 비교적 많은 가정보육시설 유형에서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4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8〉 보육료 부담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없음	있음	계(수)	x2(df)
전체	64.4	35.6	100.0(343)	
지역				
읍	64.4	35.6	100.0(174)	0.0(1)
면	64.5	35.5	100.0(169)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66.1	33.9	100.0( 62)	
법인보육시설	64.7	35.3	100.0(102)	1.5(3)
민간보육시설	66.7	33.3	100.0(111)	
가정보육시설	58.2	41.8	100.0( 67)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임.

라. 운영 애로사항

1) 시설장의 시설운영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장이 인식하는 운영의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보육시설이 도시 보육시설에 비하여 재정관련 문제, 종사자 관련 문제, 시설설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보육시설장들의 응답을 보면 애로사항으로 34.8%가 원아모집 문제, 25.3%가 재정관련 문제, 11.7%가 종사자 관련 문제라고 응답하였는데, 도시는 지역의 시설인 경우 원아모집 문제를 어려움으로 응답하는 곳이 가장 많고, 읍면지역 시설인 경우 재정관련 문제를 어려움으로 응답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관련도 도시 11% 수준, 읍면이 13.6%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시설설비도 전체 평균 7.3%에 비하여 읍면은 9.0%로 다소 높았다.

〈표 IV-1-39〉 시설장의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운점

단위: %(개소)

구분	원아모집	안전	급간식	보육 프로그램	시설 설비	재정 관련	행정 관련	종사자 관련	학부모 관련	기타	계(수)	x2(df)
전체	34.8	8.1	0.8	3.2	7.3	25.3	4.4	11.7	3.8	0.4	100.0(2,385)	
대도시	36.3	9.3	0.5	3.1	8.0	22.2	5.1	11.2	4.0	0.2	100.0( 989)	47.99(18)*
중소도시	37.9	6.5	1.0	3.4	5.9	25.8	3.3	11.4	4.0	0.6	100.0( 962)	**
읍면지역	24.7	8.5	1.2	3.0	9.0	31.3	5.5	13.6	2.8	0.5	100.0( 434)	

주: \*\*\* p < .001

자료: 이미화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 공무원의 시설운영에 대한 인식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25.6%의 공무원이 거의 모든 시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18.6%는 반 정도가, 36.0%는 일부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표 IV-1-40 참조).

〈표 IV-1-40〉 공무원이 인식한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움의 정도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거의 모든 시설이 어려움 느낌	22	25.6
반 정도가 어려움을 느낌	16	18.6
일부가 어려움을 느낌	31	36.0
소수 시설만이 어려움을 느낌	16	18.6
무응답	1	1.2
계	86	100.0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표 IV-1-41〉 공무원이 인식한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움의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아동모집	39	45.3
차량 운행	21	24.4
교사 부족	62	72.1
보육료 미납	20	23.3
연령별 정원 준수	55	64.0
설치 기준 준수	10	11.6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4	4.7
(수)	(211)	-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본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 결과임.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서는 교사 부족이 72.1%의 공무원이 지적하였고, 64.0%가 연령별 아동 정원의 준수를, 아동모집의 어려움은 45.3%가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차량운행의 어려움을 지적한 공무원이 24.4%이고, 보육료 미납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23.3%이다. 즉 공무원이 인식한 농어촌 보육시설의 어려움이 교사부족, 연령별 아동 정원의 준수, 아동모집, 차량운행, 보육료 미납의 순임을 나타낸다(표 IV-1-39 참조). 이러한 응답은 앞에서 제시한 보육시설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 2.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여기서는 전국 34개소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동 센터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가. 시설장 자격

여성농업인센터장의 보육시설장 겸직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1.8%이고 겸직하는 비율이 38.2%로 겸직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센터장이 시설장을 겸직한다는 응답은 소규모 시설이라서 시설장을 보육교사가 겸직하거나 별도로 두었다 하여도 사실상의 시설장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수임을 나타낸다 하겠다.

시설장 자격은 보육교사 1급이 다수이며, 보육교사 무자격으로서 보육시설장을 하고 있는 곳은 1개소로 나타났다.

〈표 IV-2-1〉 여성농업인센터장의 보육시설장 겸직

단위: 개소, %			
구분	겸직	비겸직	비율
수	13	21	34
비율	38.2	61.8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표 IV-2-2〉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장 자격

단위: 개소, %			
구분	보유교사 1급	무자격	비율
수	20	14	34
비율	58.8	41.2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나. 운영관련 사항

1) 보육시설의 층과 면적

보육시설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1층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1층과 함께 그 이상 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결과, 여성농업인센터 중 4개소를 제외한 모든 곳이 1층에만 보육시설을 두고 있거나 1층과 그 이상 층을 이용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외형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이 센터 면적 중 차지하는 공간은 각 센터의 상황에 따라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평균 66.4%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표 IV-2-3〉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사용 층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1층에만 위치	22	64.7
1층과 2층 이상	8	23.5
1층 제외한 2층 이상	1	2.9
기타	3	8.8
계	34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표 IV-2-4〉 여성농업인센터 면적 중 보육시설 면적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0 ~ 25%	3	8.8
26 ~ 50%	8	23.5
51 ~ 75%	8	23.5
76 ~ 100%	15	44.1
계	34	100.0
평균(표준편차)	66.4(27.1)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2) 보육시설 운영시간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은 개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준농번기때는 주로 아침 8시에서 저녁 18시까지 총 10시간 정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번기때는 아침 7시 반~8시에서 저녁 19시까지 11시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농번기와 농번기 때 보육 시간의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표 IV-2-5〉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보육 운영시간

단위: 개소,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준농번기 보육시설 운영시간	10.2	1.8
농번기 보육시설 운영시간	11.0	1.9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2004년 조사에서도 농어촌 보육시설의 평균 운영시간은 10.8시간으로 조사되었다(이미화 외, 2005).

## 3) 정원 충족률

보육시설의 정원 및 현원 여부에 있어서는, 정원을 100% 충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영아에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방과후 보육에서도 높았다. 이 조사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영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원미달이기 보다는 정원초과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보육시설이 많아 영아의 보육을 맡고 있는 시설에 영아가 집중됨으로써 교사대 아동 비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아보육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양쪽 입장에서 모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취학 아동의 방과후 보육 역시 정원초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서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IV-2-6〉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정원 충족

단위: 개소, 명

구분	영아	유아	취학아동
100%	16	10	7
정원 미달	5	15	3
정원 초과	10	5	13
계	31	30	23
정원평균	8.8(8.3)	23.7(18.4)	15.6(20.1)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은 집에서 보육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서, 또는 공급과잉이라기 보다는 보육시설에서 행하고 있는 서비스나 환경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질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한 센터가 많았다.

〈표 IV-2-7〉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정원 미충족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집에서 멈	-	-
주변에 아동이 없음	3	17.6
주변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많음	1	5.9
보육료가 부담됨	1	5.9
서비스 내용과 환경이 부모기대에 못 미침	5	29.4
교사대 아동 비율 등 시설의 사정 등 기타	7	41.2
합계	34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4) 보육료

아동 1인당 수납하는 월 보육료는 종일 기준으로 만 0세반은 평균 20만원, 만 1세반은 19만원, 만 2세반은 16만9천원, 만 3세 이상 유아는 13만 3천원, 방과후 아동은 3만 7천 원으로 여성가족부 기준 보육료인 만 0세 35만원, 만 1세 30만8천원, 만 2세 25만4천원, 만 3세 이상 유아는 15만8천원과 비교해 저렴한 수준이다<sup>33)</sup>. 그러나 0세아의 경우도 최소 10만원, 최대 35만원으로 표준편차가 커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같은 면 혹은 인근 면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료가 저렴하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농어촌 보육 시설의 특징에서 보기 어려운 대기 아동수의 발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33) 조사대상 센터 중 1곳은 전 아동이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정해진 단가가 없으며, 극단 치 배제를 위하여 〈표 IV-2-7〉의 내용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IV-2-8〉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월 보육료

단위: 천원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만 0세 종일	100	350	200.6	91.8
반일	104	130	117.0	18.4
만 1세 종일	70	308	190.5	81.0
반일	104	308	188.4	79.2
만 2세 종일	30	254	168.8	74.9
반일	104	258	182.3	56.5
만 3세 이상 유아 종일	50	248	132.7	47.0
반일	40	198	139.0	48.3
방과후 아동	20	790	36.8	15.9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5) 교사 현황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1급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교사는 전 교사의 6%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2004년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중 무자격자 채용 비율은 읍면 소재 민간보육시설 평균 6.3%이다.

〈표 IV-2-9〉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보육교사 자격, 연수 및 급여

단위: 명, 년, 만원

구분	자격					경력 (표준편차)	급여 (표준편차)
	1급	2급	3급	무자격	계		
수	63.0	27.0	4.0	6.0	100.0	2.9 (2.4)	110.9 (22.8)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교사의 경력 연수는 최하 3개월에서 최장 14년으로 평균 2.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육교사 1인이 월 실 수령하게 되는 급여는 평균 110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보육교사 653명을 대상으로 한 서문희 외(2005)의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 평균 106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앞의 농어촌 보육시설 조사에서의 교사 급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보육시설이 민간시설임을 감안하여 타 민간시설과 비교한다면 임금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인 82.4%의 센터에서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이 가장 큰 이유가 되며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열악한 환경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및 전화 등을 통해서 시설장들은 특히 보육교사 1급 및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자 등 전문성 있는 교사의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여 농어촌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의 수급의 어려움이 단적인 양 수급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0〉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교사 수급의 어려움과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교사채용 어려움			어려움 있는 경우 이유				
	없음	있음	계	열악한 환경	출퇴근 장시간	열악한 근무조건	기타	계
수	6	28	34	5	5	14	4	28
비율	17.6	82.4	100.0	17.9	17.9	50	4.3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센터장들은 반면, 현 실정으로도 교사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맞는 상근 교사 채용과 시설, 인력 유지비 등의 운영비 등을 어려움으로 응답하면서 교사수급과 재정 지원의 대안과 함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건물 기준 및 아동수대 보육 교사 수의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6) 등·하원 차량의 운행 및 관할 면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은 전 개소 모두 1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133km를 운행하고 있는데, 최대 80명의 아동들까지 등하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 마을 곳곳에 살고 있는 많은 아동들을 모두 등하원시키다 보니 장시간 타를 타는 아동이 평균 44.6분을 차량 속에서 보내고 있으며 최장 120분 동안 차를 탄다는 아동도 있다.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이 관할하고 있는 면은 인근 면을 위주로 하여 평균 2~3개이지만, 최대 11개의 면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센터도 있다. 이러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평균 164만4천원이고 최대는 400km 운행 시는 300만원의 차량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위하여 차량 운영을 해야 하지만 아동과 보육시설 모두 차량 운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1〉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차량 운행 현황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차량수(개소)	1	2	1.4	0.5
차량거리(km)	20	400	133.1	92.3
관할 면 수(개)		11	2.5	1.8
차량등원아동(명)	1	80	34.3	21.3
장시간이용(분)	10	120	44.6	23.1
차량유지비(원)	72,000	3,000,000	1,643,609	652,156.9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아동이 등하원을 위해 차량에서 장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보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선행연구(지성애, 1999; 서문희 외, 2004)는 차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차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12.1%로 많지 않으며,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바뀌는 차량 외부 풍경이나 고장의 역사 설명 등 일상생활을 반영한 조직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2-12〉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차량 프로그램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있음	4	12.1	
없음	29	87.9	
합계	33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은 인근 2~3개 아동을 보육하지만 최대 11개의 면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센터도 있는데, 센터장은 센터의 보육시설이 관할하지 못하는 주변 다른 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1.8%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시설이 설치되면 가까운 곳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할 수 있고 여성 및 젊은 층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차량 운행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표 IV-2-13〉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인식한 인근지역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단위: 개소, %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21	13	100.0	
비율	61.8	38.2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7)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8.8%가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치가 도시 보육시설에 적합한 내용으로, 실내 내부 환경 등의 기준을 맞추려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악한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엄두조차 할 수 없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화되는 시점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는 센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표 IV-2-14〉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및 평가인증의 어려움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평가인증 실시		
계획 있음	12	35.3
계획 없음	20	58.8
이미 받았음	2	5.9
계	34	100.0
평가인증 기준 충족시 어려운 점		
주변환경	2	5.9
실내 내부 환경	15	44.1
안전 장치	2	5.9
인력 자격	3	8.8
프로그램 운영	1	2.9
교사 대 아동 비율	2	5.9
기타	9	26.5
계	34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8) 국공립 전환

현재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찬성 50%, 반대 47.1%로 찬반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5〉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의견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찬성	17	50
반대	16	47.1
무응답	1	2.9
계	34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국공립시설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예산의 지원이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교사 인건비의 85%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시설로 전환시 인건비 및 지원 금액이 현 85%에서 30~50% 수준으로 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육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국공립시설의 위탁제도에 대한 우려이다. 시설장을 2~3년마다 재임용하는 현 위탁제도는 보육사업을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다. 즉, 재정 및 운영권 등에 대한 우려가 주된 반대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 9) 특별활동

대다수의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에서는 영어, 체육, 논술, 과학, 예능, 가베 등 다양한 특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기교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은 79.4%이다. 과반수

이상 시설에서는 추가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실시하고 있고,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한다는 비율은 20.6%이다.

〈표 IV-2-16〉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특별활동

단위: 개소, %

구분	수	비율
실시하지 않음	7	20.6
실시하나 추가비용 없음	20	58.8
추가 비용 받고 실시함	7	20.6
계	34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다. 보육 아동 특성

##### 1) 아동의 가정환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가정 현황에 대한 항목에서는, 보육아동 중 아동의 보호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평균 65.8%로 현원 평균 평균 21.7명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가정이 농어촌에 거주하기는 하나 농업 직군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또한 아동의 실제 양육자인 모나 조모 등 주 보호자가 미취업이어서 낮 동안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경우는 평균 23.6%로 개소당 7.8명 정도에 불과하다. 농어촌의 아동모의 취업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일을 가지고 있다.

조손가정 아동도 많아서 조손가정 아동 비율이 평균 6.3%이고 최대 42.9%인 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용 아동 특성은 여성농업인센터가 타 보육시설에 비하여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내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다수의 가정에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및 발달을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표 IV-2-17〉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아동 대비 비율			아동수	
	평균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농업종사보호자	65.8	11.4	58.8	21.7	12.5
미취업양육자	23.6	-	91.3	7.8	9.2
조손가정	6.3	-	42.9	5.2	6.3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2)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보육료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만 0~4세에게 지급되는 차등 보육료 경우 41.2%의 아동이 전액지원자이고 24.8%의 아동이 일부 감면자이며 28.2%가 농어촌 지역 5ha 미만 가구에 대해서 농림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양육비 지원자이

다. 취학 전 학교 준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및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 5세 무상 보육비는 평균 12.6%, 평균 4.0명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아동은 현원 평균 33명의 약 82%를 차지한다.

〈표 IV-2-18〉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아동대비 비율			아동수	
	평균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차등 보육료 교육비 지원				13.6	15.0
전액 지원	41.2	-	54.4	8.2	8.3
일부 지원	24.8	-	36.0	5.4	6.7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	28.2	-	51.4	9.3	7.5
만5세아 무상보육	12.6	-	40.8	4.0	6.7
장애아 무상보육	0.6	-	4.4	0.2	0.6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아동 가정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하여 장기간 보육료를 미납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센터는 22곳으로 64.7%이며, 미납 아동이 있는 경우 평균 2.5명의 미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9〉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보육료 미납 아동 및 지원 비해당자

단위: 개소, 명

구분	유무			있는 경우 아동수	
	없음	있음	계	평균	표준편차
보육료 미납					
수	12	22	34	2.5	0.5
비율	35.3	64.7	100.0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비해당자					
수	11	23	34	3.8	6.7
비율	32.4	67.6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나 부모의 직종이 농어업군이 아니어서 혹은 주소지가 읍면이 아니어서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센터가 67.6%이었는데, 센터 당 3.8명씩의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비해당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위에서와 같이 영유아 보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도,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센터장이 64.7%로 많았다. 있다는 경우 평균 아동수는 3.8명이었고, 표준편차가 10명 이상으로 크다.

〈표 IV-2-20〉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인식한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단위: 개소, %, 명

구분	보육료 부담 아동			있는 경우 아동수	
	없음	있음	계	평균	표준편차
수	10	22	32	3.8	10.4
비율	29.4	64.7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또한 보육시설이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센터장도 54.5%로 나타나서, 지역 사정과 주변 보육시설 설치 면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IV-2-21〉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인식한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단위: 명, %

구분	원거리 부담 아동			있는 경우 아동수	
	없음	있음	계	평균	표준편차
수	14	18	32	3.4	6.7
비율	42.4	54.5	100.0		

자료: 본 「여성농업인센터 조사」 결과임.

### 3.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과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의 특성 및 보육서비스 공급과 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육시설이 부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농촌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최대 15개,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최대 11개의 면을 한 개의 보육시설이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는 아동의 이동시간이다. 편도에 최대 2시간 차를 타는 아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부모들에게는 장시간 차량 탑승의 피로와 안전에 대한 위험 감수를 안겨주고 있었다. 아동이 거주지와 근거리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의 부담이다.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거리는 편도 133km로 월 16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보육시설에는 차량 유지비로 인하여 보육시설에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안겨주어 보육시설 운영 자체에 근본적인 위협을 준다.

둘째, 보육 수요와 욕구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조사 결과 영아반은 유아반보다 정원미달이 적고 정원초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반의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다고 보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 및 교사인력 등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아 보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아의 보육을 맡고 있는 소수의 시설에 영아가 집중됨으로써 정원초과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보육 역시 정원초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 면

담 및 기타 응답에서 방과후 보육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아 및 방과후 보육의 수요에 근거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을 융통적으로 가능케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 보육시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료보다 낮은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보육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많았으며,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또한 많았다. 이는 일정수준 소득 이하의 가정에 차등보육료가 지원되고, 또한 농어업인 자녀에게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필요 아동을 모두 지원하지는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농어촌에 거주하나 농어업 직군에 속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읍면 소재지가 아닌 등의 이유로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보육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용 부담도 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농촌 아동 보육료 정책의 개선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문화환경과 급여 등의 근무조건이 교사채용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라고 응답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높은 교사가 열악한 생활환경과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농어촌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아동대 교사 비율, 평가인증 기준 등의 탄력적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은 담당부처의 이원화로 부담을 진다. 여성농업인센터는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이 구분되지 않고 소득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미취업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을 할 수 없는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림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곳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어촌 지역의 열악함을 반영하지 못한 시설 지침, 교사대 아동 비율 등의 기준, 교사 자격, 농림부와 여성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행정업무 과다 등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아 보육의 수요는 많지만 시설 환경의 구비 조건 누락으로 영아반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센터가 많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있어서도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채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시사점으로서, 주 양육자가 일을 하지 않아 아동을 실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정은 매우 적었으며, 특히 조손가정의 수가 매우 많았다. 또한 현장답사 및 시설장 면담 결과 국제 결혼 가정의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낮에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 조손 가정의 아동, 국제 결혼 가정의 아동 등 특별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이고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특수성으로는 재정상의 문제로서, 여성농업인센터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시설추가 지원과 교구비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시설 운영비 지원이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는 여성농업인센터 전 개소에 대하여 일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 및 보육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집행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운영상의 문제로서, 본 실태조사 결과 개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임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시설 개보수를 시도하려고 하여도 현실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보육사업 운영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농어촌 보육시설은 조사 결과 지역이 도시보다 교류와 접근성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으며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많으므로,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수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의 보육시설과는 차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 V. 보육서비스 이용과 욕구: 의성군과 화순군의 사례

제5장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실시한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농어촌 거주 아동의 보육 이용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두 지역의 일반적 지리, 가구,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경험과 현재 이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개인양육서비스와 방과후보육의 이용 실태와 욕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일반적 특성

#### 가. 지역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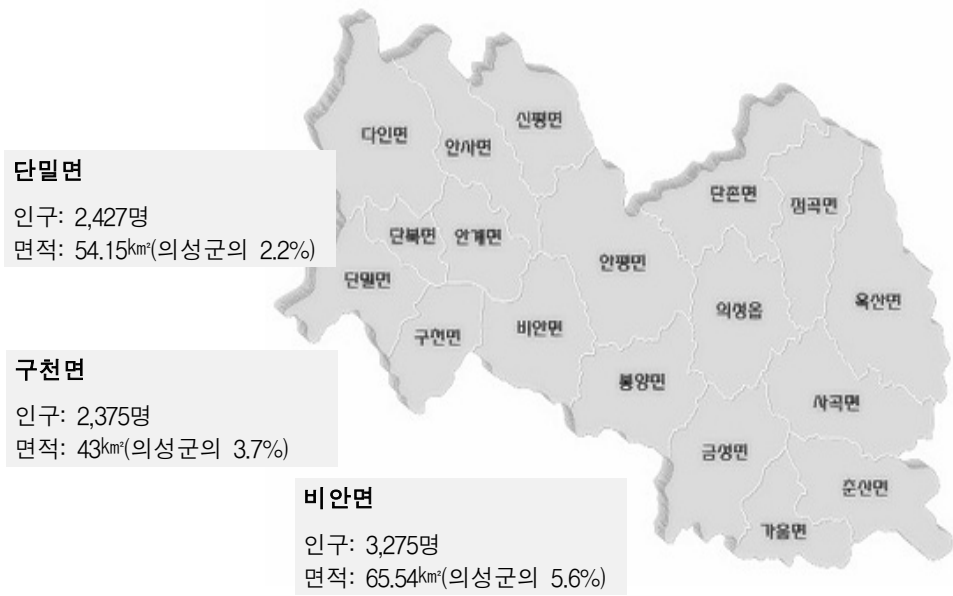
##### 1) 경북 의성군 비안면, 단밀면, 구천면

경상북도 의성군은 경상북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1,175km<sup>2</sup>의 면적에 1읍 17리 182법정리, 399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7,077세대에 총 64,457명이 등록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17.2%이다.

비안면(比安面)은 군 소재지로부터 서쪽으로 24.1Km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부락으로 형성된 군 서부 지역의 관문이다. 위천과 쌍계천이 합해져서 북서쪽으로 흐르면서 광활한 평야를 열어 가면서 남북으로 먼 전체를 양분하였고 국도 28호선이 강줄기를 따라 연해 관통해 가며 소재지에서 군위 소보간(15호), 쌍계리에서 안계 안정간(14호) 군도가 내륙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다. 관내에는 해망산, 병산정, 백학서당, 석불사 3층석탑 등의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단밀면(丹密面)은 의성군의 서단에 위치하며 면 가운데 만경산(525m)이 솟아 있고 위천과 낙동강이 서북을 둘러싸고 있다. 미맥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면으로 산이 많고 연평균 강수량은 적으나 위천과 낙동강이 흘러 그 유역은 땅이 비옥하고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으며 낙동강이 흐르는 낙정지역은 옛 나루터로 관수루와 함께 휴양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다. 관내에는 만경산의 성터, 용암사지, 박효문의 묘, 10개소의 효열각과 유서 깊은 낙정나루의 옛터를 끼고 있는 강변절경과 주선리 산4번지의 지식묘 2기가 유명하다.

구천면(龜川面)은 의성군청으로부터 서남방 32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저수량 3,596.8천톤 조성지로 인한 수리안전 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황토에서 생산된 일품미, 고품질 산사과로 농가고수득을 올리고 있으며, 만수면적 60ha, 해발700.7m의 장엄한 청화산과 조계종 제 16교구인 천년고찰 정수사, 속칭황물탕등의 문화 관광자원 보유하고 있다.



<그림 V-1-1> 경북 의성군 특성

<표 V-1-1> 경상북도 의성군 조사지역 일반현황

구분		비안면	단밀면	구천면
인구(명)	0~5세아	56	42	38
	6~11세아	86	98	71
행정구역(개)	법정리	14	8	10
	행정리	23	18	24
보육·교육 기관(개소)	보육시설	-	-	-
	유치원	1	1	1

자료: 의성군청 홈페이지

<표 V-1-2> 경북 의성군 조사지역 영유아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구분	비안면	단밀면	구천면
주민등록	56	42	38
실제 거주	36	37	32
비율	64.4	88.1	84.2

자료: 의성군청 홈페이지

이 지역에는 보육시설은 없으나 각각 면마다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비안면은 초등학교가 2개소인데, 1개소가 병설유치원이 있으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비안면에 있는 비안초등학교와 속암초등학교중 하나가 폐교될 예정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차량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밀면과 구천면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차량을 운행한다. 구천면은 특히 초등학교도 차를 오래 타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부

모들이 등하교 시키는 경우가 많다. 차량이 마을 입구까지만 운행이 되어 부모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주민등록상 아동과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안면은 주민등록상 영유아가 56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 아동은 36명이다. 그 이외 두 지역도 주민등록 아동 대비 88.1%, 84.2%의 아동만이 실제로 거주한다. 그 이외 아동을 조부모 등 친인척 주민등록에 올려 있으나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타 지역에 거주한다. 이러한 아동이 많은 이유는 농어촌 출산 장려금 및 농어민 자녀 양육비 지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전남 화순군 남면, 동북면, 한천면

전라남도 화순군은 전남 총 면적의 6.6%인 787km<sup>2</sup>의 면적에 1읍 12리 187 법정리, 334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8,916세대에 73,256명이 등록되어 있다. 재정자립도는 17.2%이다.

남면(南面)은 화순군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산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sup>34)</sup> 마을은 거의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인구는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90년 주암호의 건설때문에 장전리, 절산리, 사수리, 주산리, 남계리, 북교리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 수몰되어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북면(同福面)은 화순군에서 일곱 번째로 큰 면으로, 화순군 동북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운알산에서 모후산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순천시와 나뉘어 있고, 서쪽으로는 웅성산 줄기가 남으로 이어지면서 적벽과 묘치제, 주로 제를 형성하여 이서면, 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모후산이 서쪽으로 뻗어 구암리로 연결되면서 남면과 경계가 된다. 옛부터 벼농사를 많이 지어 천변리, 독상리 등지의 평야지대가 발달하였으며 유천제, 구암저수지, 독상제 등 많은 곳에 보와 저수지가 두고 있다. 소득사업은 벼농사와 밭농사가 대부분이고 1970년대에는 한때 석탄광산이 성행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특산물로 동북마포, 복삼, 복청, 목단등을 심어 소득을 올렸으나 지금은 새송이버섯과, 복분자, 복청, 배추, 무, 고추 등 청정채소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천면(寒泉面)은 화순군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뚝재가 한천면의 중앙부에 남북방향으로 가로 놓여 있어 영내와 영외로 나뉘어 영내 12개 마을은 능주면과 영외 6개 마을은 남면과 인접해 있다. 주요 농산물은 미곡위주에서 과수, 시설원에 등 소득 작목 전환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문화재로는 금오산성과 죽수서원, 포충사가 주요 관광지로는 2003년 개장한 한천휴양림과 함께 주변경관이 빼어난 용암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용소계곡 등이 있다.

34) 산세를 살펴보면 동쪽으로 모후산(母后山, 918.8m)에서 시작된 산등이 북으로 동북면 운월산과 이어져 있고 남으로는 말거리재를 형성하고 그 남쪽을 흐르는 동북천까지 뻗어 있는데 이 산등을 경계로 순천시와 나뉘어 있음. 북편은 모후산에서 뻗은 한 산등이 내리 북쪽으로 하여 동으로 이어져 동북면과 나뉘는데, 동북천에 이르면서 산세는 수그러든다. 서로는 위로부터 천왕산, 구봉산, 천운산에 이어지고 남으로는 동으로부터 까치봉, 말봉산, 일아리재, 골미산, 화산봉으로 이어지는 산등이 있음. 6.25를 전후한 때에는 모후산과 유마사가 공비들의 은거지로 이용되면서 부근의 자연마을이 토벌작전으로 폐촌된 곳도 있었음.



〈그림 V-1-2〉 전라남도 화순군 특성

〈표 V-1-3〉 전라남도 화순군 조사지역 일반현황

구분		남면	동북면	한천면
인구(명)	0~5세아	114	69	78
	6~11세아	114	75	70
행정구역(개)	법정리	16	12	11
	행정리	32	21	18
보육·교육 기관(개소)	보육시설	-	-	-
	유치원	1	1	2

자료: 화순군청 홈페이지

〈표 V-1-4〉 전라남도 화순군 조사지역 영유아 인구

구분	남면	동북면	한천면
주민등록	114	69	78
실제 거주	56	38	62
비율	49.1	55.1	79.5

단위: 명, %

자료: 화순군청 홈페이지 및 본 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보육시설은 없으나 각각 면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화순군 주민등록상 아동과 실제 거주하는 아동은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인다. 한천면은 주민등록 대비 거주 아동 비율이 44% 정도이나 이외 두 개 면은 주민등록상 아동수의 21~25%만이 실제로 면에 거주하고 있다.

나. 가구 특성

앞에서 제시한 이들 지역에서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4.76명이고 자녀수는 평균 2.26명이다. 화순군은 각각 4.86명, 2.32명으로 각각 4.76명, 2.26명인 의성군에 비하여 가구원수 및 자녀수가 약간 많다.

조사 대상 영유아의 가정이 농가인가를 조사하였다. 의성군 영유아 가구의 농가 비율이 77.8%이고, 화순군은 농가가 66.7%로 나타났다.<sup>35)</sup>

〈표 V-1-5〉 가구원수 및 자녀수

구분	가구원수		자녀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76	1.29	2.26	
의성군	4.62	1.33	2.17	0.93	81
화순군	4.86	1.25	2.32	0.97	111

자료: 본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1-6〉 영유아 가구의 농가여부

구분	농가여부			계(수)
	농가	비농가	비율(%)	
전체	71.4	28.6	100.0(192)	
의성군	77.8	22.2	100.0(81)	
화순군	66.7	33.3	100.0(111)	

자료: 본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1-7〉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구분	월 평균 소득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55.3	69.8	30	400	261
의성군	164.7	63.9	70	400	105
화순군	149.0	73.0	30	300	156

자료: 본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5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최소 30만원, 최대 400만원으로 표준편차가 70만원 정도가 된다. 의성군이 화순군보다 평균 15만원 정도 월평균 소득이 높다(표 참조).

영유아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의성군은 2.5%, 화순군은 7.2%가 대상 가구로 조사되었다. 전남 화순군이 경북 의성군에 비하여 주민들 생활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실태 조사시 읍면 아동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비율이 3.6%이었음(서문희 외, 2005)을 감안한다면 두 지역의 생활 수준이 각각 평

35) 농가원부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는 농가로 분류하였음.

균 이상과 이하로 가름할 수 있다.

〈표 V-1-8〉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단위: %(가구)

구분	해당	비해당	계(수)
전체	5.2	94.8	100.0(192)
의성군	2.5	97.5	100.0( 81)
화순군	7.2	92.8	100.0(111)

자료: 본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다. 아동특성

조사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를 보면 첫째아가 32.6%이고 둘째아 36.4%, 셋째아이상이 31.0%이다. 비율이 화순 31.0%이고 의성군은 25.6%이다(표 V-1-9 참조).

이는 2004년도 전국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전체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7.4%, 둘째아 43.4%, 셋째 이상아 10.0%와 비교하여 본 조사 지역에 출생순위가 높은 아동이 많다.

〈표 V-1-9〉 영유아의 출생순위

단위: %(명)

구분	1	2	3	4	5	
전체	32.6	36.4	22.2	8.0	0.8	100.0(261)
의성군	31.4	41.9	19.0	5.7	1.9	100.0(105)
화순군	33.3	32.7	24.4	9.6	-	100.0(156)

자료: 본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4-1-10〉은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 동거 상태를 나타낸다. 이를 살펴보면 의성군 35.7%, 화순군 19.9%의 아동이 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산다는 아동이 의성군 21.9%, 화순군 13.7%로 모두 16.9%이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산다는 비율이 높다. 편모와 사는 아동은 의성군은 1.0%이나 화순군에서 5.1%로 높고, 편부와 사는 아동은 의성군에서 비율이 더 높다.

〈표 V-1-10〉 영유아별 부모와의 거주 현황

단위: %(명)

구분	부모와 함께	편모와 함께	편부와 함께	부모없이 조부모와 함께	계(수)
전체					
영아	84.5	4.1	1.0	10.3	100.0( 97)
유아	73.8	3.0	2.4	20.7	100.0(164)
계	77.8	3.4	1.9	16.9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78.9	2.6	2.6	15.8	100.0( 38)
유아	71.6	-	3.0	25.4	100.0( 67)
계	74.3	1.0	2.9	21.9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88.1	5.1	-	6.8	100.0( 59)
유아	75.3	5.2	2.1	17.5	100.0( 97)
계	80.1	5.1	1.3	13.5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부 또는 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직장 때문이 가장 많다. 특히 영아가 직장 때문에 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표 V-1-11〉 영유아별 부 또는 모와 거주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부				모			
	직장 때문에	기타 이유로	이혼 및 사망	계(수)	직장 때문에	기타 이유로	이혼 및 사망	계(수)
전체								
영아	71.4	14.3	14.3	100.0(14)	81.8	18.2	-	100.0(11)
유아	71.8	12.8	15.4	100.0(39)	60.5	10.5	28.9	100.0(39)
계	71.7	13.2	15.1	100.0(53)	65.3	12.2	22.4	100.0(49)
경북 의성군								
영아	71.4	28.6	-	100.0( 7)	71.4	28.6	-	100.0( 7)
유아	76.5	5.9	17.6	100.0(17)	52.6	15.8	31.6	100.0(19)
계	75.0	12.5	12.5	100.0(24)	57.7	19.2	23.1	100.0(26)
전남 화순군								
영아	74.4	-	28.6	100.0( 7)	100.0	-	-	100.0( 4)
유아	68.2	18.2	13.6	100.0(22)	68.4	5.3	26.3	100.0(19)
계	69.0	13.8	17.2	100.0(29)	73.9	4.3	21.7	100.0(23)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4-1-12〉는 영유아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 경우에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가를 나타낸다. 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낸다는 응답은 의성군 50.0%, 화순군 69.6%이고, 의성군의 34.6%, 화순군의 26.1%는 전혀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2〉 영유아별 부모와 별거 가정의 부모 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기적으로 보냄	가끔 보냄	전혀 안 보냄	계(수)
전체				
영아	66.7	16.7	16.7	100.0(12)
유아	56.8	8.1	35.1	100.0(37)
계	59.2	10.2	30.6	100.0(49)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53.5	12.5	25.0	100.0( 8)
유아	44.4	16.7	38.9	100.0(18)
계	50.0	15.4	34.6	100.0(26)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75.0	25.0	-	100.0( 4)
유아	68.4	-	31.6	100.0(19)
계	69.6	4.3	26.1	100.0(23)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 라. 부모특성

〈표 V-1-13〉은 조사된 아동 부모의 학력을 나타낸다. 부의 학력은 경북 의성군은 중학교 이하가 9.7%이고, 66.0%가 고등학교 학력이고 그 외 24.3%가 대학이상이다. 전남 화순군은 중학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고등학교가 50.3%이며 대학이상은 17.2%이다. 아동 모의 학력은 의성군은 중학교 이하가 12.0%이고, 81.00%가 고등학교 학력이고 7.0%가 대학이상이다. 화순군은 중학교 이하가 20.7%를 차지하고, 고등학교가 49.3%이며 대학이상은 30.0%이다.

〈표 V-1-13〉 영유아별 부모의 최종 학력

단위: %(명)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3년제 이하)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계(수)
부						
전체	23.2	56.7	6.3	12.6	1.2	100.0(254)
경상북도 의성군	9.7	66.0	13.6	8.7	1.9	100.0(103)
전라남도 화순군	32.5	50.3	1.3	15.2	0.7	100.0(151)
모						
전체	17.2	62.0	10.8	10.0	-	100.0(250)
경상북도 의성군	12.0	81.0	3.0	4.0	-	100.0(100)
전라남도 화순군	20.7	49.3	16.0	14.0	-	100.0(150)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아동 부의 직업은 무직이 의성군 2.9%, 화순군 6.0%로 모두 4.7%를 제외한 95.3%가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이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농임어업 종사자가 의성

군 47.6%, 화순군 32.5%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이외는 두 지역이 차이를 보인다. 의성군은 기능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11.7%이고 단순노무자가 8.7%이다. 화순군은 농업종사자 이외에 단순노무자가 21.2%로 많고 다음이 기능종사자 13.9%의 순이다.

〈표 V-1-14〉 영유아별 부의 직업 형태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전문가	-	3.8	2.4	-	4.6	2.9	-	3.2	2.0
기술공·준전문가	5.3	3.1	3.9	5.3	-	1.9	5.3	5.3	5.3
사무종사자	5.3	7.5	6.7	2.6	4.6	3.9	7.0	9.6	8.6
서비스 종사자	2.1	8.2	5.9	2.6	16.9	11.7	1.8	2.1	2.0
판매종사자	3.2	2.5	2.8	5.3	4.6	4.9	1.8	1.1	1.3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47.4	33.3	38.6	60.5	40.0	47.6	38.6	28.7	32.5
기능종사자	13.7	12.6	13.0	10.5	12.3	11.7	15.8	12.89	1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5.3	6.3	5.9	-	6.2	3.9	8.8	6.4	7.3
단순노무 종사자	14.7	17.0	16.1		7.7	8.7	17.5	23.4	21.2
무직	3.2	5.7	4.7	2.6	3.1	2.9	3.5	7.4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5)	(159)	(254)	(38)	(65)	(103)	(57)	(94)	(151)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1-15〉 영유아별 모의 직업 형태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전문가	-	1.3	0.8	-	-	-	-	2.2	1.3
기술공·준전문가	4.2	4.5	4.4	7.9	1.6	4.0	1.7	6.5	4.7
사무종사자	5.2	7.1	6.4	5.3	8.1	7.0	5.2	6.5	6.0
서비스 종사자	3.1	5.2	4.4	5.3	9.7	8.0	1.7	2.2	2.0
판매종사자	5.2	6.5	6.0	10.5	11.3	11.0	1.7	3.3	2.7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41.7	38.3	39.6	44.7	38.7	41.0	39.7	38.0	38.7
기능종사자	3.1	3.9	3.6	7.9	9.7	9.0	-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	-	-	-	-
단순노무 종사자	8.3	11.7	10.4	2.6	4.8	4.0	12.1	16.3	14.7
학생·재수생	1.0	-	0.4	2.6	-	1.0	-	-	-
주부·무직	28.1	21.4	24.0	13.2	16.1	15.0	37.9	25.0	3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6)	(154)	(250)	(38)	(62)	(100)	(58)	(92)	(150)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아동 모의 취업상태는 의성군은 15.0%, 화순군은 30.0%가 직업이 없고 나머지 각각 85.0%, 70.0%는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성군 영유아의 모는 41.0%가 농임업에 종사하고, 11.0%는 판매업에 종사한다. 화순군은 38.7%가 농임업에 종사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14.7%이다. 두 지역의 부의 직업 특성차이가 모의 직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표 V-1-15 참조).

이러한 조사대상지역의 영유아 모 취업률은 전국 평균은 33.2% 수준으로 조사된 영유아 모 취업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이다(표 V-1-16 참조).

〈표 V-1-16〉 아동연령 구분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전 체			최연소아동 기준			전체	(수)
	취업	미취업	모부재모름	취업	미취업	모부재모름		
미취학	33.2	64.7	2.1	35.1	62.7	2.2	100.0	(2,962)
0세	20.4	79.6	-	20.2	79.8	-	100.0	( 358)
1세	23.8	75.4	0.8	24.5	75.2	0.3	100.0	( 391)
2세	32.2	67.3	0.5	35.9	63.5	0.6	100.0	( 422)
3세	37.3	60.2	2.5	43.5	53.4	3.2	100.0	( 442)
4세	35.3	61.1	3.6	40.1	54.7	5.2	100.0	( 507)
5세	40.9	56.9	2.2	44.9	52.3	2.8	100.0	( 492)
6세	39.4	56.0	4.6	43.1	52.8	4.1	100.0	( 348)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미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마. 주 보호자

일반적으로 아동의 양육책임은 여성이 지게 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는 여성취업과 무관하게 일관된 것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2004년도 전국 표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83.9%가 주된 양육자가 아동의 모이고 다음이 친조부모로 7.1%이며, 외조부모 3.1%, 그 다음이 부 2.6%로 조사되었다(표 V-1-17 참조).

〈표 V-1-17〉 전국 아동구분별 현재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 자매	부의 형제 자매	모의 형제 자매	친조부 모	외조부 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계	(수)
영아	1.4	82.8	-	0.1	0.9	7.2	5.5	0.3	2.0	100.0	(1,172)
유아	1.8	82.5	1.6	0.6	0.5	8.4	3.5	0.1	1.1	100.0	(1,792)
소계	1.6	82.7	0.9	0.4	0.6	7.9	4.3	0.2	1.5	100.0	(2,963)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미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이번 농촌 조사결과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로 아동의 모가 가장 주된 양육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고 조부모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의성군은 모가 64.8%, 친조부모 23.8%, 외조부모 5.7%이고, 형제자매가 3.8%이고, 부는 1.9%이다. 화순군은 73.79%가 주된 양육자가 아동의 모이고

다음이 친조부모로 17.3%이며, 외조부모 6.4%, 그 다음이 부와 형제자매가 각각 1.3%로 조사되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아동의 형제자매가 아동을 돌보는 가장 주된 주체라는 응답이 의성군 3.8%, 화순군 1.3%라는 점이다. 화순군은 형제자매가 돌보는 영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은 다행이지만, 의성군은 영아도 2.6%가 형제자매로 응답하였다.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이 형제자매인 다른 아동을 돌보는 문제는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표 V-1-18> 영유아별 가정 내 보육 시간이 가장 많은 보호자 유형

단위: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계(수)
<b>전체</b>						
영아	1.0	77.3	1.0	17.5	3.2	100.0( 97)
유아	1.8	65.9	3.0	21.3	7.9	100.0(164)
계	1.5	70.1	2.3	19.9	6.1	100.0(261)
<b>경상북도 의성군</b>						
영아	2.6	68.4	2.6	26.3	-	100.0( 38)
유아	1.5	62.7	4.5	22.4	9.0	100.0( 67)
계	1.9	64.8	3.8	23.8	5.7	100.0(105)
<b>전라남도 화순군</b>						
영아	-	83.1	-	11.9	5.1	100.0( 59)
유아	2.1	68.0	2.1	20.6	7.2	100.0( 97)
계	1.3	73.7	1.3	17.3	6.4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2.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 가. 이용 경험 및 이유

<표 V-2-1>은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의성군은 영아는 15.8%가 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고, 나머지 84.2%는 어디에 다닌 적이 없으며, 유아는 71.6%가 어린이집, 19.4%가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있고 9.0%는 아무 경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순군은 영아는 이용 경험비율이 의성군에 비하여 낮으나 유아는 다양한 기회가 있음을 나타낸다. 영아는 10.2%가 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고, 나머지 89.8%는 어디에 다닌 적이 없으며,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에 놀이방, 선교원도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이 32.0%가 된다.

〈표 V-2-1〉 영유아별 보육·교육 기관의 경험 및 형태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선교원	다닌적 없음	계(수)	<i>x</i> 2(df)
전체							
영아	12.4	-	-	-	87.6	100.0( 97)	
유아	59.1	4.9	26.8	1.2	7.9	100.0(164)	n.a
계	41.8	3.1	16.9	0.8	37.5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15.8	-	-	-	84.2	100.0( 38)	
유아	71.6	-	19.4	-	9.0	100.0( 67)	60.03(2)***
계	51.4	-	12.4	-	36.2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10.2	-	-	-	89.8	100.0( 59)	
유아	50.0	8.2	32.0	2.1	7.2	100.0( 97)	n.a
계	35.3	5.1	19.9	1.3	38.5	100.0(15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부모 대리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사회성 발달, 전인적 발달 등이다. 의성군은 대리보호가 56.7%이고 사회성 발달 26.9%, 전인적 발달 11.9%이다. 일을 하지 않는 모의 비율이 높은 전남 화순군은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47.9%이고 사회성 발달이 36.5%로 의성군과 차이를 보인다(표 V-2-2 참조).

〈표 V-2-2〉 영유아별 기관의 첫 이용의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예체능 특기교육	부모대신 돌보기	사회성 발달	계(수)	<i>x</i> 2(df)
전체							
영아	-	-	-	75.0	25.0	100.0( 12)	
유아	12.6	4.0	0.7	49.7	33.1	100.0(151)	n.a
계	11.7	3.7	0.6	51.5	32.5	100.0(163)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	-	66.7	33.3	100.0( 6)	
유아	13.1	4.9	-	55.7	26.2	100.0( 61)	n.a
계	11.9	4.5	-	56.7	26.9	100.0( 67)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	-	83.3	16.7	100.0( 6)	
유아	12.2	3.3	1.1	45.6	37.8	100.0( 90)	n.a
계	11.5	3.1	1.0	47.9	36.5	100.0( 9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나. 이용 중단 경험 및 이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 둔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영아는 없고 유아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은 의성군 유아 27.9%, 화순군 유아의 23.3%가 다니다가 그만 둔 적이 있으며, 유치원은 의성군 유아 4.9%, 화순군 유아의 5.6%가 다니다 그만둔 적이 있다(표 V-2-3 참조).

〈표 V-2-3〉 영유아별 보육시설 이용 중 중단한 경험의 유무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있다	없다	계(수)	있다	없다	계(수)
전체						
영아	-	100.0	100.0( 12)	-	100.0	100.0( 12)
유아	25.2	74.8	100.0(151)	5.3	94.7	100.0(151)
계	23.3	76.7	100.0(163)	4.9	95.1	100.0(163)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100.0	100.0( 6)	-	100.0	100.0( 6)
유아	27.9	72.1	100.0( 61)	4.9	95.1	100.0( 61)
계	25.4	74.6	100.0( 67)	5.2	94.8	100.0( 67)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100.0	100.0( 6)	-	100.0	100.0( 6)
유아	23.3	76.7	100.0( 90)	5.6	94.4	100.0( 90)
계	21.9	78.1	100.0( 96)	5.2	94.8	100.0( 96)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2-4〉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중 중단한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전체	의성군	화순군	전체	의성군	화순군
너무 멀어서	10.5	11.8	9.5	37.5	66.7	20.0
비용이 비싸서	18.4	29.4	9.5	12.5	-	20.0
환경이 마음에 안들어서	5.3	-	9.5	-	-	-
원장/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2.6	5.9	-	-	-	-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15.8	17.6	14.3	12.5	-	20.0
시간이 안 맞아서	5.3	5.9	4.8	12.5	-	20.0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들어서	13.2	5.9	19.0	12.5	33.3	-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로	26.3	23.5	28.6	12.5	-	20.0
기타	2.6	-	4.8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8)	(17)	(21)	(8)	(3)	(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보육시설 중단 이유는 이사가 가장 많고, 이를 제외하고는 의성군은 비용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아이 부적응이 17.6%, 멀어서 11.8%,이다. 화순군은 프로그램이 19.0%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이외 비용, 거리, 환경이 각각 9.5%이다.

유치원 중단 이유는 의성군은 3명 중 2명은 떨어져 이고 다른 1명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화순군은 그만둔 아동 5명의 이유가 모두 제각각이다(표 V-2-4 참조).

### 3. 보육교육기관 이용

####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 기관

다음으로는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의성군은 영아는 84.2%는 안 다니고 15.8%의 아동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5.3%는 단체 및 법인외 시설, 10.5%는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유아는 83.6%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23.9%가 국공립유치원을 다니고 그 이외는 59.9%가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법인외 및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22.4%, 23.9%로 비중이 크다.

화순군은 영아의 10.2%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 유아는 91.8%가 기관을 이용하는데, 국공립유치원이 43.3%이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이 30.9%이다(표 V-3-1 참조).

〈표 V-3-1〉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 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 법인 보육시설	기타법인 ·단체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	선교원	안 다님	계(수)
전체									
영아	-	4.1	3.1	5.2	-	-	-	87.6	100.0( 97)
유아	1.8	22.0	11.6	15.2	1.2	35.4	1.2	11.6	100.0(164)
계	1.1	15.3	8.4	11.5	0.8	22.2	0.8	39.8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	5.3	10.5	-	-	-	84.2	100.0( 38)
유아	4.5	9.0	22.4	23.9	-	23.9	-	16.4	100.0( 67)
계	2.9	5.7	16.2	19.0	-	15.2	-	41.0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6.8	1.7	1.7	-	-	-	89.8	100.0( 59)
유아	-	30.9	4.1	9.3	2.1	43.3	2.1	8.2	100.0( 97)
계	-	21.8	3.2	6.4	1.3	26.9	1.3	39.4	100.0(156)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일반학원을 보기로 주었으나 다니는 아동 없었음.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조사 결과를 2004년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번 조사 결과가 이용률이 높고, 특히 유치원 이용률이 높다. 2004년 자료는 영유아의 경우 읍·면 지역은 보육시설 이용률이 39.1%로 도시지역 25~26%보다 13% 포인트 이상 크게 높고 반면에 유치원은 12.2%로 도시 16~18%보다 낮고, 반일제학원 및 일반학원 이용률은 도시에 비하여 낮

다.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은 동거조부모에 의한 비율이 읍·면이 14.5%로 도시 8.9%에 비하여 매우 높다. 또한 읍·면은 탁아모에 의한 보육도 1.9%이다. 안 다니는 아이 비율이 43.2%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차이도 있겠지만 그 동안의 비용 지원 등 정책의 효과로 이용률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표 V-3-2>는 이러한 기관 이용을 각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영아라고 하여도 대부분이 2세는 되어야 기관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의성군과 화순군 모두 0세아 이용은 없고 만1세아도 화순군에서 이용아동은 1명뿐이다.

<표 V-3-2> 연령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 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 법인 보육시설	법인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	선교원	안 다님	계(수)
<b>전체</b>									
0세	-	-	-	-	-	-	-	100.0	100.0( 29)
1세	-	2.9	-	-	-	-	-	97.1	100.0( 34)
2세	-	8.3	8.3	13.9	-	-	-	69.4	100.0( 36)
3세	-	24.2	15.2	12.1	6.1	6.1	-	36.4	100.0( 33)
4세	-	17.1	8.6	28.6	-	31.4	2.9	11.4	100.0( 35)
5세	2.3	27.3	9.1	11.4	-	45.5	2.3	2.3	100.0( 44)
6세	3.8	19.2	13.5	11.5	-	48.1	-	3.8	100.0( 52)
계	1.1	15.3	8.4	11.5	0.8	22.2	0.8	39.8	100.0(261)
<b>경북 의성군</b>									
0세	-	-	-	-	-	-	-	100.0	100.0( 8)
1세	-	-	-	-	-	-	-	100.0	100.0( 14)
2세	-	-	12.5	25.0	-	-	-	62.5	100.0( 16)
3세	-	-	33.3	16.7	-	-	-	50.0	100.0( 12)
4세	-	11.8	17.6	47.1	-	5.9	-	17.6	100.0( 17)
5세	6.3	12.5	12.5	18.8	-	50.0	-	-	100.0( 16)
6세	9.1	9.1	27.3	13.6	-	31.8	-	9.1	100.0( 22)
계	2.9	5.7	16.2	19.0	-	15.2	-	41.0	100.0(105)
<b>전남 화순군</b>									
0세	-	-	-	-	-	-	-	100.0	100.0( 19)
1세	-	5.0	-	-	-	-	-	95.0	100.0( 20)
2세	-	15.0	5.0	5.0	-	-	-	75.0	100.0( 20)
3세	-	38.1	4.8	9.5	9.5	9.5	-	28.6	100.0( 21)
4세	-	22.2	-	11.1	-	55.6	5.6	5.6	100.0( 18)
5세	-	35.7	7.1	7.1	-	42.9	3.6	3.6	100.0( 28)
6세	-	26.7	3.3	10.0	-	60.0	-	-	100.0( 30)
계	-	21.8	3.2	6.4	1.3	26.9	1.3	39.1	100.0(156)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나. 기관 이용 이유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국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 대리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사회성 발달, 전인적 발달인데, 지역별로는 보육시설의 부모 대리보호 기능이 읍·면보다는 도시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치원은 읍·면에서 초등학교 준비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서문희 외, 2005).

〈표 V-3-3〉 읍면지역 기관 이용 이유 비교: 2004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전인적 발달	27.3	22.7
초등학교 준비	8.8	39.4
예체능 특기교육	0.5	-
부모대신보호	32.7	15.2
사회성 발달	30.2	22.7
기타	0.5	-
계(수)	100.0(205)	100.0(66)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본 두 지역 조사에 의하면 대리보호의 비율이 2004년 조사에서 나온 농어촌 전체 비율보다 훨씬 높은데, 영아와 유아가 차이가 있다. 영아는 대리보호 비율이 58.3%이고, 유아는 41.4%이다. 다니는 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나누어 그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보육시설이 대리보호 이유가 다소 높고, 유치원이 전인적 발달과 초등학교 준비를 지적한 비율이 다소 보육시설보다 다소 높다(표 V-3-4 참조).

〈표 V-3-4〉 영유아 및 기관별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다니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부모대신 돌보기	사회성 발달	계(수)
전체	14.0	9.6	42.7	33.8	100.0(157)
영유아					
영아	8.3	-	58.3	33.3	100.0( 12)
유아	14.5	10.3	41.4	33.8	100.0(145)
기관					
보육시설	11.3	7.2	47.4	34.0	100.0( 97)
유치원	19.0	13.8	32.8	34.5	100.0( 58)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5> 지역별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다니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부모대신 돌보기	사회성 발달	계(수)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16.7	-	33.3	50.0	100.0( 6)
유아	17.9	16.1	37.5	28.6	100.0( 56)
계	17.7	14.5	37.1	30.6	100.0( 6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	83.3	16.7	100.0( 6)
유아	12.4	6.7	43.8	37.1	100.0( 89)
계	11.6	6.3	46.3	35.8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의성군은 대리보호가 37.5%이고 사회성 발달 30.6%, 전인적 발달 17.7%이다. 화순군은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46.3%이고 사회성 발달이 35.8%로 의성군에 비하여 대리보호 비율이 매우 높게 차이를 보인다(표 V-3-5 참조). 연령별로도 기관 이용은 대리보호와 사회성 발달이 주요 이용 이유이다(부록 참조).

다. 기관 선택이유

<표 V-3-6>은 현재 다니는 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차량, 거리, 프로그램 임을 나타낸다. 다니는 기관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나누어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면, 보육시설은 차량운행을 이유로 든 비율이 51.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육내용을 28.9%를 차지한다. 가까워서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다. 한편 유치원은 53.4%가 가까워서라고 응답하였고, 17.2%가 차량, 15.5%가 교육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은 10.3%이다(표 V-3-6 참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농어촌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V-3-6> 영유아별 현재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선택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적정한 비용	가까워서	차량 운행	종교	교육내용	기타	계(수)
전체	4.5	26.8	38.2	1.3	23.6	5.7	100.0(157)
영유아							
영아	-	16.7	41.7	-	25.0	16.7	100.0( 12)
유아	4.8	27.6	37.9	1.4	23.4	4.8	100.0(145)
기관							
보육시설	-	11.3	51.5	1.0	28.9	7.2	100.0( 97)
유치원	10.3	53.4	17.2	-	15.5	3.4	100.0( 58)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7〉 영유아별 현재 보육·교육 시설(기관)을 선택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적정한 비용	가까워서	차량 운행	종교	교육내용	기타	계(수)
경북 의성군							
영아	-	-	50.0	-	33.3	16.7	100.0( 6)
유아	7.1	12.5	48.2	1.8	26.8	3.6	100.0( 56)
계	6.5	11.3	48.4	1.6	27.4	4.8	100.0( 62)
전남 화순군							
영아	-	33.3	33.3	-	16.7	16.7	100.0( 6)
유아	3.4	37.1	31.5	1.1	21.3	5.6	100.0( 89)
계	3.2	36.8	31.6	1.1	21.1	6.3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조사 지역별로는 의성군은 차량이 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육내용 27.4%이고 가까워서 라는 응답은 11.3%이다. 한편 화순군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차량이 오기 때문 31.6%로 조사되었다. 교육내용 때문은 21.1%이다.

다음은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영아와 유아 모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지역 모두 차량운행이 단연 높다. 그 다음이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기관 선택이유와도 같은 맥락이다.

〈표 V-3-8〉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선택 기준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기관		
	영아	유아	계	보육시설	유치원	계
원장 및 교사	25.0	9.0	10.2	12.4	6.9	10.2
차량운행	33.3	35.2	35.0	45.4	19.0	35.0
집과의 거리	-	20.0	18.5	1.0	48.3	18.5
비용	-	4.1	3.8	1.0	8.6	3.8
프로그램	16.7	17.2	17.2	22.7	6.9	17.2
건강·영양	-	1.4	1.3	2.1	-	1.3
운영시간	-	2.8	2.5	3.1	-	2.5
내부 분위기	-	0.7	0.6	-	1.7	0.6
안전한 보호	16.7	4.1	5.1	4.1	6.9	5.1
주변의 평판	8.3	4.8	5.1	8.2	-	5.1
기타	-	0.7	0.6	-	1.7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	(145)	(157)	(97)	(58)	(157)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영아가 안전한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비율이 높다. 집과의 거리는 영아에게서 응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보육시설을 선택하여도 다 집으로부터 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각기 선택기준이 다르다. 보육시설은 차량운행, 프로그램, 교사와 원장인데, 유치원은 집과의 거리, 차량운행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선택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성군은 원장 및 교사, 프로그램이 각각 16.1%, 14.5%이고 다음이 집과의 거리 9.7%인 반면에 화순군은 집과의 거리가 24.2%, 프로그램 18.9%로 주요한 선택기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그 지역에서 보내는 기관이 어디인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성군은 타 면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이 주요 이용기관이고, 화순군은 병설유치원이 주요 이용기관인 데서 오는 차이이다.

〈표 V-3-9〉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선택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원장 및 교사	33.3	14.3	16.1	16.7	5.6	6.3
차량운행	16.7	41.1	38.7	50.0	31.5	32.6
집과의 거리	-	10.7	9.7	-	25.8	24.2
비용	-	7.1	6.5	-	2.2	2.1
프로그램	16.7	14.3	14.5	16.7	19.1	18.9
건강·영양	-	-	-	-	2.2	2.1
운영시간	-	3.6	3.2	-	2.2	2.1
내부 분위기	-	-	-	-	1.1	1.1
안전한 보호	16.7	1.8	3.2	16.7	5.6	6.3
주변의 평판	16.7	7.1	8.1	-	3.4	3.2
기타	-	-	-	-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	(56)	(62)	(6)	(89)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라. 이용 일수 및 등퇴원 시간

조사된 지역 영유아의 일주일 동안 기관을 이용하는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다수이다. 의성군은 72.6%는 주 5일을 이용하고 27.4%가 격주로 토요일을 쉰다. 주5일은 보육시설이용 아동이고 격주 쉰다는 아동은 대개가 유치원 이용아동임을 알 수 있다. 화순군은 3.2%의 아동만이 주 6일을 다니고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소수만이 토요일에 보육시설에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2004년 전국 실태조사와는 크게 다른 결과이다. 2004년 조사에서는 읍·면 아동의 36.4%가 주 6일을 이용하고, 63.6%는 주 5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었다(서문희 외, 2005).

〈표 V-3-10〉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격주 토요일 휴무	계(수)
전체	1.9	59.9	38.2	100.0(157)
의성군	-	72.6	27.4	100.0( 62)
화순군	3.2	51.6	45.3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 <표 V-3-11>는 등원시간을 나타내고 <표 V-3-12>는 하원 시간 분포를 나타낸다. 이 두 표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유치원 이용 아동에 비하여 등원시간을 늦고 퇴원시간도 늦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9시 이후에 가는 아동도 40%가 되지만 유치원 아동은 88%가 8시 30분까지는 집을 나선다. 하원시간은 유치원 아동은 4시 30분까지 91.8%의 아동이 집으로 오는데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9.3%가 5시 30분 이후에 집으로 온다.

〈표 V-3-11〉 영유아 이용 기관 등원시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전체
8:00 까지	8.2	34.5	23.4
8:01~8:30	21.3	53.4	33.5
8:31~9:00	27.7	10.3	17.0
9:01~9:30	29.9	1.7	19.2
9:31 이후	12.3	-	7.8
계	100.0(97)	100.0(58)	100.0(155)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12〉 영유아 이용 기관 퇴원시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전체
14:30 까지	-	15.5	5.7
14:31~15:30	17.5	5.2	12.9
15:31~16:00	18.4	27.6	21.8
16:01~16:30	27.8	41.4	33.9
16:31~17:00	14.5	8.5	12.2
17:01~17:30	12.3	1.7	8.3
17:31 이후	9.3	-	5.8
계	100.0(97)	100.0(58)	100.0(155)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13>은 등·하원 시간을 이용하여 등원으로부터 하원하기까지의 이용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보육시설은 평균 7시간 31분이고, 유치원이 평균 7시간 44분으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2004년도 전국 조사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평균이 7시간 20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6분이고, 유치원은 평균은 5시간 51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15분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조사에서는 유치원 이용시간이 다소 길게 산출되었다.

〈표 V-3-13〉 제 특성별 보육시설 등원부터 하원까지 시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평균이용시간	7시간 31분	7시간 44분
표준편차	1시간 4분	1시간 41분
최소	6시간	5시간 30분
최대	10시간 50분	9시간 20분
(수)	(96)	(57)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이처럼 유치원 이용아동의 등원시간이 이르고, 이용시간이 길게 산출된 것은 차량이 초등학생 등교 시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 특별활동

농어촌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의 특별활동 이수 실태는 한 종류 이상의 특별활동을 이수한다는 아동 비율이 의성군이 25.7%, 화순군 7.7%이다. 종류별로는 의성군은 외국어가 30.6%로 가장 많고, 미술이 14.5%, 한글(국어)과 교구 이용 프로그램이 모두 11.3%이다. 화순군은 수학이 8.1%로 가장 많다(표 V-3-14 참조).

이러한 특별활동 이수 비율은 2004년 전국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 특별활동 이수 비율인 47.1%, 42.3%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 기회도 차별적임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14〉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명)			
구분	의성군	화순군	전체
1개 이상 실시	25.7	7.7	14.9
특별활동 종류(중복응답)			
미술	14.5	-	5.6
음악	1.6	1.0	1.2
체육	-	-	-
과학	6.5	-	2.5
수학	1.6	8.1	5.6
한글(국어)	11.3	-	4.3
컴퓨터	3.2	1.0	1.9
교구 이용 프로그램	11.3	-	4.3
외국어	30.6	2.0	13.0
(수)	(105)	(156)	(261)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15〉 특별활동 이수시 비용 지불

단위: %(명)			
구분	의성군	화순군	전체
지불하지 않음	37.0	-	25.6
5,000원	3.7	-	2.6
10,000원	3.7	16.7	7.7
15,000원	-	8.3	2.6
20,000원	33.3	25.0	30.8
30,000원	18.5	50.0	28.2
50,000원	3.7	-	2.6
계(수)	100.0(27)	100.0(12)	100.0(39)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15〉는 특별활동 이수시 비용을 지불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인데, 의성군에서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아동이 37.0%이고 화순군은 모두 추가 비용을 내고 특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활동 비용은 최소 5천원으로부터 최대 5만원까지 분포한다.

#### 바. 보육료 및 보육료 지원

다음으로 보육교육비 지원 수혜 실태를 보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아동은 18%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군은 전액 지원아동이 64.5%이고 17.7%가 일부 지원아동이며 나머지 17.8%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아동이다. 화순군은 전액 지원아동이 70.5%가 되고 11.6%가 일부 지원 아동이며 나머지 17.9%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아동이다(표 V-3-16 참조).

〈표 V-3-16〉 영유아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실태

단위: %(명)				
구분	전액지원	일부지원	혜택 없음	계(수)
전체				
영아	50.0	33.3	16.7	100.0( 12)
유아	69.7	12.4	17.9	100.0(145)
계	68.2	14.0	17.8	100.0(157)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33.3	50.0	16.7	100.0( 6)
유아	67.9	14.3	17.9	100.0( 56)
계	64.5	17.7	17.7	100.0( 6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66.7	16.7	16.7	100.0( 6)
유아	70.8	11.2	18.0	100.0( 89)
계	70.5	11.6	17.9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17> 영유아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수급 대상 유형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7.6	7.0	-	2.1	1.9	-	11.1	10.4
모·부자가정자녀	-	5.9	5.4	-	6.4	5.8	-	5.6	5.2
기타 저소득층	30.0	29.4	29.5	-	21.3	19.2	60.0	34.7	36.4
만5세아무상	-	16.0	14.7	-	19.1	17.3	-	13.9	13.0
세 번째 자녀	-	0.8	0.8	-	2.1	1.9	-	-	-
두 자녀가 이용	10.0	1.7	2.3	20.0	4.3	5.8	-	-	-
장애아동	-	0.8	0.8	-	2.1	1.9	-	-	-
농어민자녀	60.0	37.8	39.5	80.0	42.6	46.2	40.0	34.7	3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	(119)	(129)	(5)	(47)	(52)	(5)	(72)	(77)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양육비 수급 대상 유형은 의성군과 화순군이 차이를 보인다. 의성군은 농어민 자녀가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9%이다. 화순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4%나 되고, 기타 저소득층이 36.4%, 농어민자녀가 35.1%, 만5세아 13.0%이다(표 V-3-17 참조).

다음 <표 V-3-18>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표 V-3-18> 영유아별 보육·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법인의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	선교원	전체
2세아								
평균	-	26.7	66.7	100.2	-	-	-	71.0
표준편차	-	5.8	85.5	67.7	-	-	-	65.8
최소	-	20	10	0	-	-	-	0
최대	-	30	165	190	-	-	-	190
(수)	-	3	3	5	-	-	-	11
만3세 이상아								
평균	106.7	56.9	38.3	93.1	55.0	28.3	30.0	50.0
표준편차	83.7	55.7	50.0	68.4	77.8	17.1	14.1	52.1
최소	10	0	5	10	0	0	20	0
최대	115	260	170	230	110	55	40	260
(수)	3	36	19	10	2	58	2	145

주: 연령은 조사 시점이므로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영아, 유아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이를 보면 2세아는 평균 71,000원, 최대 19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만3세 이상아는 전체 평균 50,000원 최대 260,000원이다. 여기서 연령분류는 조사 시점이므로 3월, 4월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연령과는 다른 개념이다. 만3세 이상아 보육료가 최대 2만원인 것도 이러한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보육료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매우 부담된다 5.8%, 부담되는 편이다 35.3%로 41.1%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영아와 유아의 차이가 있다.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영아가 18.2%로 유아보다 높다.

2004년 전국실태조사에서는 읍·면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고, 비율은 매우 부담, 부담이 각각 12.4%, 52.1%로 모두 64.5%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부담된다는 비율이 낮아진 것은 그 간의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확충 및 농어민 양육비 지원 등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V-3-19〉 영유아별 보육·교육료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되는 편	적당	전혀 부담안됨	계(수)
전체					
영아	18.2	36.4	27.3	18.2	100.0( 11)
유아	4.7	35.2	40.6	19.5	100.0(128)
계	5.8	35.3	39.6	19.4	100.0(139)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33.3	33.3	16.7	16.7	100.0( 6)
유아	3.7	46.3	31.5	18.5	100.0( 54)
계	6.7	45.0	30.0	18.3	100.0( 60)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40.0	40.0	20.0	100.0( 5)
유아	5.4	27.0	47.3	20.3	100.0( 74)
계	5.1	27.8	46.8	20.3	100.0( 79)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의성군은 매우 부담된다 6.7%, 부담되는 편이다 45.0%로 53.7%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30.0%는 적당하다, 18.3%는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화순군은 매우 부담된다 5.1%, 부담되는 편이다 27.8%로 32.9%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46.8%는 적당하다, 20.3%는 전혀 부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부담된다는 비율은 유아에 비하여 영아가 높다. 의성군은 이용 영아 6명 중 66.7%인 4명이 부담된다는 응답이었고, 화순군에서는 5명 영아 중 2명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였다. 영아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용아동 부모에 비하여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다.

〈표 V-3-20〉 영유아별 보육·교육료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된다	부담되는 편이다	적당하다	전혀 부담이 안된다	계(수)	
보육시설	7.8	45.6	32.2	14.4	100.0( 90)	
유치원	2.1	17.0	53.2	27.7	100.0(247)	15.0(3)**
계	5.8	35.3	39.6	19.4	100.0(139)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사. 이용기관의 접근성

1) 등원 방법 및 소요시간

다음은 등원하는 방법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등원 방법을 보면 차량이 용이 다수이고, 다음이 자가용 이용이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유치원은 62.1%가 기관 차량, 8.9%가 자가용이고 이외 29.0%는 걸어서 다닌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87.6%가 기관 차량을 이용하고, 12.4%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표 V-3-21〉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가족이 자가용으로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형제·자매와 걸어서	계(수)
보육시설	87.6	12.4	-	-	-	100.0( 97)
유치원	62.1	8.9	12.1	10.3	6.9	100.0( 58)
계	78.3	10.8	4.5	3.8	2.5	100.0(157)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의성군은 83.9%가 기관 차량, 12.9%가 자가용으로 걸어서 간다는 아동은 3.2%에 불과하다.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없다. 화순군은 74.7%가 기관차량, 9.5%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18.9%가 걸어서 다닌다. 화순군은 영아와 유아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용하는 기관이 거주지와 동일한 읍면에 위치하는 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원하는 방법도 등원방법과 유사하게 조사되었다(부록 참조).

이러한 등원 방법은 전국 조사에서 나타난 등원방법과 비교하면 유치원은 별 차이가 없으나 보육시설은 본 조사된 농어촌이 전국 조사 결과에 비하여 기관차량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22%p가 높다(표 V-3-22 참조).

〈표 V-3-22〉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가족이 자가용으로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형제·자매와 걸어서	계(수)
전체						
영아	83.3	16.7	-	-	-	100.0( 12)
유아	77.9	10.3	4.8	4.1	2.8	100.0(145)
계	78.3	10.8	4.5	3.8	2.5	100.0(157)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83.3	16.7	-	-	-	100.0( 6)
유아	83.9	12.5	-	1.8	1.8	100.0( 56)
계	83.9	12.9	-	1.6	1.6	100.0( 6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83.3	16.0	-	-	-	100.0( 6)
유아	74.2	7.0	7.9	5.6	3.4	100.0( 89)
계	74.7	9.5	7.4	5.3	3.2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23〉 기관별 아동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해서	가족과 자가용 으로	가족과 대중교통 으로	혼자 대중교통 으로	자녀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	(수)
보육시설	65.6	9.8	0.6	-	5.6	18.4	-		(820)
유치원	63.6	6.8	0.2	-	15.2	12.6	1.6	100.0	(486)

주: 경우의 수 분포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전국 평균 12.4분(서문희 외, 2005)에 비하여 10분 이상이 길다. 본 조사는 최소 2분 최대 90분인데 지역 차이는 거의 없다.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보육시설은 평균 32.78분이고 표준편차가 18분이다. 유치원은 평균 14분에 표준편차가 약 10분이다. 최대 시간은 40분이다. 유치원은 걸어가기도 하지만, 보육시설은 모두 차를 타야 하는데 편도 90분 동안 차를 타야 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이다.

<표 V-3-25>에서 등원시간 분포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17.5%의 아동이 1시간 이상 차를 타야 한다.

〈표 V-3-24〉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소요시간

단위: 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5.76	18.9	2	90	(157)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27.05	17.5	2	90	(62)
전라남도 화순군	24.92	18.1	3	80	(95)
기관					
보육시설	32.78	18.09	5	90	(97)
유치원	14.12	9.98	2	40	(58)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25〉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등원 소요시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전체
2분	-	1.7	0.6
3분	-	5.2	1.9
5분	1.0	27.6	11.0
8분	-	1.7	0.6
10분	9.3	15.5	11.6
15분	8.2	17.2	11.6
20분	16.5	13.8	15.5
25분	5.2	-	3.2
30분	25.8	13.8	21.3
40분	13.4	3.4	9.7
50분	3.1	-	1.9
60분	13.4	-	8.4
70분	1.0	-	0.6
80분	2.1	-	1.3
90분	1.0	-	0.6
계(수)	100.0(97)	100.0(58)	100.0(157)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2) 이용기관과 거주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거주지와 이용하는 기관과의 위치를 알아보았다. 기관과 같은 읍면이 영아는 없고 유아는 의성군 23.2%, 화순군이 48.3%로 조사되었다. 이들 면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일 읍면에 위치한 기관을 다니고 있다는 아동은 모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용 아동이다. 화순군에 초등병설유치원이 차량은 운행하고 있고, 또한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의성군은 일부는 동일 지역 내 초등병설유치원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또한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V-3-26〉 연령별 보육·교육 시설(기관)과 아동 거주지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전체			의성군			화순군		
	동일 읍·면	다른 읍·면	계(수)	동일 읍·면	다른 읍·면	계(수)	동일 읍·면	다른 읍·면	계(수)
1세	-	100.0	100.0( 1)	-	-	-	-	100.0	100.0( 1)
2세	-	100.0	100.0( 11)	-	100.0	100.0( 6)	-	100.0	100.0( 5)
소계	-	100.0	100.0( 12)	-	100.0	100.0( 6)	-	100.0	100.0( 6)
3세	9.5	90.5	100.0( 21)	-	100.0	100.0( 6)	13.3	86.7	100.0( 15)
4세	35.5	64.5	100.0( 31)	7.1	92.9	100.0( 14)	58.8	41.2	100.0( 17)
5세	46.5	53.5	100.0( 43)	43.8	56.3	100.0( 16)	48.1	51.9	100.0( 27)
6세	46.0	54.0	100.0( 50)	25.0	75.0	100.0( 20)	60.0	40.0	100.0( 30)
소계	38.6	61.4	100.0(145)	23.2	76.8	100.0( 56)	48.3	51.7	100.0( 89)
계	35.7	64.3	100.0(157)	21.0	79.0	100.0( 62)	45.3	54.7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27〉 영유아별 이용 시설(기관)의 근접도

단위: %(명)

구분	가장 가까운 기관임	아님	계(수)
보육시설	45.4	54.6	100.0( 97)
유치원	98.3	1.7	100.0( 58)
계	65.0	35.0	100.0(157)

44.7(1)\*\*\*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28〉 영유아별 이용 시설(기관)의 근접도

단위: %(명)

구분	가장 가까운 기관임	아님	계(수)
전체			
영아	50.0	50.0	100.0( 12)
유아	66.2	33.8	100.0(145)
계	65.0	35.0	100.0(157)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16.7	83.3	100.0( 6)
유아	50.0	50.0	100.0( 56)
계	46.8	53.2	100.0( 6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83.3	16.7	100.0( 6)
유아	76.4	23.6	100.0( 89)
계	76.8	23.2	100.0( 95)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3-27>, <표 V-3-28>은 이용하는 기관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유치원 이용 아동은 58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은 가장 가까운 시설을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45.4%로 그렇지

않은 비율 54.6%보다 낮다. 지역별로는 병설유치원 이용이 많은 화순군이 가장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높다.

가장 가까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의성군은 운영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4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환경이 열악하여서가 27.3%, 차량운행을 안해서 18.2%이다. 특히 영아는 운영시간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운영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4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차량운행을 안 해서 18.2%, 환경이 열악하여서가 9.13% 순이다. 화순군은 기타가 45.5%이다. 이는 차량은 운행하되 타고 내리는 곳이 큰 길가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 많이 걸어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표 V-3-29〉 영유아별 가까운 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차량 운행을 안해서	운영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등하차 위치 등 기타	계(수)
전체						
영아	-	66.7	16.7	-	16.7	100.0( 6)
유아	20.4	30.6	4.1	22.4	22.4	100.0(49)
계	18.2	34.5	5.5	20.0	21.8	100.0(55)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80.0	20.0	-	-	100.0( 5)
유아	21.4	35.7	3.6	32.1	7.1	100.0(28)
계	18.2	42.4	6.1	27.3	6.1	100.0(33)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	-	-	100.0	100.0( 1)
유아	19.0	23.8	4.8	9.5	42.9	100.0(21)
계	18.2	22.7	4.5	9.1	45.5	100.0(22)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아. 이용 부모 만족도

〈표 V-3-30〉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 기관이용 보호자 중 대체로 3/4 정도가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육시설 이용자와 유치원 이용자의 차이는 비율로는 유치원 이용자가 약간 높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표 V-3-30〉 영유아별 이용 중인 시설(기관)의 서비스 질적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계(수)
보육시설	2.1	71.1	17.5	9.3	100.0( 97)
유치원	3.4	75.9	17.2	3.4	100.0( 58)
계	2.5	73.2	17.2	7.0	100.0(157)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보면 영아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유아보다 대체로 낮지만, 그러나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은 없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의성군 4.8%, 화순군 8.4% 정도이다.

〈표 V-3-31〉 영유아별 이용 중인 시설(기관)의 서비스 질적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계(수)
전체					
영아	-	66.7	16.7	16.7	100.0( 12)
유아	2.8	73.8	17.2	6.2	100.0(145)
계	2.5	73.2	17.2	7.0	100.0(157)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66.7	33.3	-	100.0( 6)
유아	1.8	73.2	19.6	5.4	100.0( 56)
계	1.6	72.6	21.0	4.8	100.0( 6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66.7	-	33.3	100.0( 6)
유아	3.4	74.2	15.7	6.7	100.0( 89)
계	3.2	73.7	14.7	8.4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이 이용시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기관선택시 이미 불만요인이 작용하여 만족하는 이용자만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3-32〉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계(수)
보육시설	3.1	66.0	30.9	-	100.0( 97)
유치원	1.7	81.0	15.5	1.7	100.0( 58)
계	2.5	73.2	17.2	7.0	100.0(157)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영아와 유아를 비교하면 영아보다는 유아가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두 지역이 매우 유사하게 71~72% 수준이고 불만이라는 비율이 24~25% 수준이다(표 V-3-33 참조).

〈표 V-3-33〉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한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계(수)
전체					
영아	8.3	58.3	33.3	-	100.0( 12)
유아	2.1	73.1	24.1	0.7	100.0(145)
계	2.5	72.0	24.8	0.6	100.0(157)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16.7	66.7	16.7	-	100.0( 6)
유아	-	73.2	26.8	-	100.0( 56)
계	1.6	72.6	25.8	-	100.0( 6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	50.0	50.0	-	100.0( 6)
유아	3.4	73.0	22.5	1.1	100.0( 89)
계	3.2	71.6	24.2	1.1	100.0( 9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이용시간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이유는 다양하다. 유치원 이용자는 10.0%가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고, 그 이외는 시작이 너무 늦거나,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아니면 둘 다를 불만의 사유로 생각하고 있다(표 V-3-34 참조).

〈표 V-3-34〉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불만족의 이유

단위: %(명)

구분	시작시간이 늦고 끝나는 시간이 이릅니다	시작시간이 늦음	끝나는 시간이 이릅니다	끝나는 시간이 늦음	계(수)
보육시설	16.7	16.7	56.7	10.0	100.0(30)
유치원	10.0	-	50.0	40.0	100.0(10)
계	15.0	12.5	55.0	17.5	100.0(40)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의성군은 6.3%는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다고도 하였고, 87.5%가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하고 6.3%는 시작 시간이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화순군은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다는 불만도 25.0%가 되었다. 이외 25.0%의 보호자가 시작 시간이 너무 늦고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고, 33.3%는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16.7%는 시작시간이 너무 늦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 지역의 차이는 모의 경제활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표 V-3-35 참조).



〈표 V-3-35〉 영유아별 보육·교육 시설(기관) 이용시간관련 불만족의 이유

단위: %(명)

구분	시작시간이 늦고 끝나는 시간이 이름	시작시간이 늦음	끝나는 시간이 이름	끝나는 시간이 늦음	계(수)
전체					
영아	50.0	-	25.0	25.0	100.0( 4)
유아	11.1	13.9	58.3	16.7	100.0(36)
계	15.0	12.5	55.0	17.5	100.0(40)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	100.0	-	100.0( 1)
유아	-	6.7	86.7	6.7	100.0(15)
계	-	6.3	87.5	6.3	100.0(16)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66.7	-	-	33.3	100.0( 3)
유아	19.0	19.0	38.1	23.8	100.0(21)
계	25.0	16.7	33.3	25.0	100.0(24)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자. 계속 이용

〈표 V-3-36〉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언제까지 보낼 계획인가를 질문하여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그만 들 생각이 있는 경우, 이후에 어디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의성군은 다수가 유치원이고 보육시설은 없다. 화순군은 일부 보육시설이라는 응답도 있다.

〈표 V-3-36〉 영유아별 이용중인 시설(기관)을 그만둔 후 선호기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영아	20.0	80.0	-	100.0( 5)
유아	4.0	82.0	4.0	100.0(25)
계	6.7	90.0	3.3	100.0(30)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100.0	-	100.0( 2)
유아	-	90.9	9.1	100.0(11)
계	-	92.3	7.7	100.0(13)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33.3	66.7	-	100.0( 3)
유아	7.1	92.9	-	100.0(14)
계	11.8	88.2	-	100.0(17)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4. 개인양육 지원

<표 V-4-1>은 부모 부재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두 지역을 합한 결과를 보면 동거조부모 35.2%, 비동거조부모 10.0%로 조부모가 45.2%를 차지하고 이외 비동거 친인척과 탁아모 등 성인이 3.8%이다. 그러나 20.3%는 형제자매로 응답하였고, 아예 아무도 없다는 응답도 30.7%이었다. 특히 영아를 형제자매가 돌본다는 비율도 10% 정도가 된다.

두 지역을 구분해 보면 의성군에 비하여 화순군이 형제자매가 본다는 비율이 13.6%로 의성군 5.3%의 약 3배이다. 또한 아무도 없다는 비율도 높다. 영아의 경우도 각각 13.6%, 39.0%이다.

부모 부재시 아이를 돌보는 곳은 아이의 집과 돌보는 사람의 집이 각각 반반 정도인데, 의성군은 돌보는 사람의 집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화순군은 아이집이라는 응답비율이 높다(표 V-4-2 참조).

<표 V-4-1> 영유아별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유형

단위: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비동거 친인척	이웃 탁아모 등	형제자매	없음	계(수)
전체							
영아	42.3	9.3	2.1	2.1	10.3	34.0	100.0( 97)
유아	31.1	10.4	1.8	1.8	26.2	28.7	100.0(164)
계	35.2	10.0	1.9	1.9	20.3	30.7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52.6	10.5	-	5.3	5.3	26.3	100.0( 38)
유아	31.3	14.9	3.0	-	20.9	29.9	100.0( 67)
계	39.0	13.3	1.9	1.9	15.2	28.6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35.6	8.5	3.4	-	13.6	39.0	100.0( 59)
유아	30.9	7.2	1.0	3.0	29.9	27.8	100.0( 97)
계	32.7	7.7	1.9	1.9	23.7	32.1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4-2〉 영유아별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장소

단위: %(명)

구분	아이집	돌보는사람집	계(수)
전체			
영아	46.2	53.8	100.0(13)
유아	52.2	47.8	100.0(23)
계	50.0	50.0	100.0(36)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50.0	50.0	100.0( 6)
유아	41.7	58.3	100.0(12)
계	44.4	55.6	100.0(18)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42.9	57.1	100.0( 7)
유아	63.6	36.4	100.0(11)
계	55.6	44.4	100.0(18)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조부모 등 개인이 아이를 돌보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지는 조사한 결과, 의성군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16.9%이고, 3.4%는 부정기적으로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화순군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부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응답도 1.5%에 불과하다(표 V-4-3 참조).

〈표 V-4-3〉 영유아별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비용의 지불 유형

단위: %(명)

구분	정기적으로 지불	부정기적으로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전체				
영아	13.2	1.9	84.9	100.0( 53)
유아	8.2	2.7	89.0	100.0( 73)
계	10.3	2.4	87.3	100.0(126)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23.1	-	76.9	100.0( 26)
유아	12.1	6.1	81.8	100.0( 33)
계	16.9	3.4	79.7	100.0( 59)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3.7	3.7	92.6	100.0( 27)
유아	5.0	-	95.0	100.0( 40)
계	4.5	1.5	94.0	100.0( 67)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4-4> 영유아별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집을 비우는 경우의 유무

단위: %(명)

구분	보통때					농번기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영아	22.7	47.4	29.9	100.0( 97)		34.2	43.8	21.9	100.0( 73)	
유아	34.1	51.8	14.0	100.0(164)	10.6(2)*	48.2	46.4	5.4	100.0(112)	12.3(2)*
계	29.9	50.2	19.9	100.0(261)		42.7	45.4	11.9	100.0(185)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31.6	47.4	21.1	100.0( 38)		41.2	41.2	17.6	100.0( 34)	
유아	35.8	55.2	9.0	100.0( 67)	3.1(2)	54.2	41.7	4.2	100.0( 48)	n.a
계	34.3	52.4	13.3	100.0(105)		48.8	41.5	9.8	100.0( 82)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16.9	47.5	35.6	100.0( 59)		28.2	46.2	25.6	100.0( 39)	
유아	33.0	49.5	17.5	100.0( 97)	7.5(2)*	43.8	50.0	6.3	100.0( 64)	8.3(2)*
계	26.9	48.7	24.4	100.0(156)		37.9	48.5	13.6	100.0(103)	

주: \*p <.05 \*\*p <.01,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4-4>는 보통때 취학전 아이들만 집에 두고 집을 비우는 빈도와 농번기 때 아이들만 집에 두고 집을 비우는 빈도이다. 의성군을 보면 아이들만 집에 둔다는 비율이 보통때는 자주 34.3%, 가끔 52.4%이고 없다는 비율이 13.3%이다. 농번기 때는 각각 48.8%, 41.5%로 자주라는 비율이 증가하고, 없다는 비율은 9.8%로 감소한다.

화순군은 아이들만 둔다는 비율이 의성군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보통 때는 자주와 가끔 아이들만 둔다는 비율이 각각 26.9%, 48.7%이고 농번기 때는 37.9%, 48.5%이다. 특히 농번기때는 영아만 집에 두는 적이 자주 있다는 응답도 의성군에서는 41.2%, 화순군 28.2%로 조사되었다. 농번기때 아이들만 둔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특히 농번기를 위한 추가적 양육지원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5. 보육 관련 요구 및 의견

### 가. 보육시설의 충분성

지역내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지역 가구 전부를 대상으로 주변에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충분한지를 질문하였고, 이어서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충분한지를 질문하였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이 거의 대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지역차이는 없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역차이가 있어서, 의성군에서는 99.0%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화순군은 91.7%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고 7.1%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5-1〉 영유아별 일반적 보육시설 설치수의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충분	불충분	잘모름	계(수)	충분	불충분	잘모름	계(수)
전체								
영아	1.0	99.0	-	100.0( 97)	4.1	94.8	1.0	100.0( 97)
유아	0.6	98.8	0.6	100.0(164)	4.9	94.5	0.6	100.0(164)
계	0.8	98.9	0.4	100.0(261)	4.6	94.6	0.8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100.0	-	100.0( 38)	-	100.0	-	100.0( 38)
유아	1.5	98.5	-	100.0( 67)	1.5	98.5	-	100.0( 67)
계	1.0	99.0	-	100.0(105)	1.0	99.0	-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1.7	98.3	-	100.0( 59)	6.8	91.5	1.7	100.0( 59)
유아	-	99.0	1.0	100.0( 97)	7.2	91.8	1.0	100.0( 97)
계	0.6	98.7	0.6	100.0(156)	7.1	91.7	1.3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 <표 V-5-2>는 주변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V-5-2〉 주변에 아이를 위탁할 만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수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많음	1~2곳	없음	잘모름	계(수)	많음	1~2곳	없음	잘모름	계(수)
전체										
영아	-	7.2	91.8	1.0	100.0( 97)	2.1	89.7	8.2	-	100.0( 97)
유아	0.6	6.7	92.1	0.6	100.0(164)	1.2	87.2	11.0	0.6	100.0(164)
계	0.4	6.9	92.0	0.8	100.0(261)	1.5	88.1	10.0	0.4	100.0(261)
의성군										
영아	-	-	100.0	-	100.0( 38)	2.6	76.3	21.1	-	100.0( 38)
유아	1.5	4.5	94.0	-	100.0( 67)	1.5	74.6	23.9	-	100.0( 67)
계	1.0	2.9	96.2	-	100.0(105)	1.9	75.2	22.9	-	100.0(105)
화순군										
영아	-	11.9	86.4	1.7	100.0( 59)	1.7	98.3	-	-	100.0( 59)
유아	-	8.2	90.7	1.0	100.0( 97)	1.0	95.9	2.1	1.0	100.0( 97)
계	-	9.6	89.1	1.3	100.0(156)	1.3	96.8	1.3	0.6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대체로 보육시설은 없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유치원은 1~2곳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의성군에서는 보육시설은 3.9% 정도만이 보육시설을 보낼 데가 있다고 한번에 유치원은 77.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화순군은 보육시설은 9.6%, 유치원은 98.1%가 주변에 보낼 곳이 있다는 응답이다. 즉, 유치원은 있는데, 보육시설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전국에 비하여 보육시설은 비율이 높고, 유치원은 낮다. 2004년 전국실

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일반적 충분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44.1%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6%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28.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반적 충분성에 대해서는 45.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6.9%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27.9%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V-5-3> 조사대상자 전체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충분성에 대한 의견 요약

단위: %, 가구

구분	일반			질 높은 곳				계	(수)
	충분	불충분	모름	많음	1~2곳	없음	잘 모름		
보육시설	27.6	44.1	28.4	15.3	30.7	20.8	33.1	100.0	(10,422)
유치원	26.9	45.2	27.9	15.0	32.0	20.6	32.4	100.0	(10,422)

자료: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나. 향후 이용 의사

<표 V-5-4>는 향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것이다. 다수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모두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역별로는 화순이 유치원만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표 V-5-4> 영유아별 취학전까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희망 이용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에만 보낼 것임	유치원에만 보낼 것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모두 보낼 것임	아무곳에도 안보낼 것임	잘모르겠음	기타(선교원 등)	계(수)
전체							
영아	26.8	18.6	50.5	-	4.1	-	100.0( 97)
유아	41.5	42.1	14.0	0.6	0.6	1.2	100.0(164)
계	36.0	33.3	27.6	0.4	1.9	0.8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23.7	7.9	63.2	-	5.3	-	100.0( 38)
유아	50.7	31.3	14.9	1.5	1.5	-	100.0( 67)
계	41.0	22.9	32.4	1.0	2.9	-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28.8	25.4	42.4	-	3.4	-	100.0( 59)
유아	35.1	49.5	13.4	-	-	2.1	100.0(97)
계	32.7	40.4	24.4	-	1.3	1.3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다. 미이용 이유

현재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있어서 필요를 못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지역과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표 V-5-5>와 같다.

경북 의성군은 영아는 아주 소수만이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였고 거의

대부분은 필요를 못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는 45.5%는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있어서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였고, 27.3%가 보낼 필요는 느끼나 이용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8.2%가 보낼 필요를 느끼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9.1%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전남 화순군은 영아는 기관 미이용 아동 53명 중 단 1명 보내고 싶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보낸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2명은 모두 집에서 돌볼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유아는 기관 미이용 아동 8명 중 5명은 집에서 돌볼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였고, 2명은 비용부담을 기관 미이용 이유로 들었다.

〈표 V-5-5〉 영유아별 현재 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집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서 필요를 못 느낌	보낼 필요는 느끼나 시설들이 집에서 너무 멀	보낼 필요는 느끼나 비용이 부담 됨	보낼 필요는 느끼나 이용시간이 안 맞음	기타	계(수)
전체						
영아	96.5	1.2	-	1.2	1.2	100.0( 85)
유아	52.6	5.3	21.1	15.8	5.3	100.0( 19)
계	88.5	1.9	3.8	3.8	1.9	100.0(104)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93.8	-	-	3.1	3.1	100.0( 32)
유아	45.5	9.1	18.2	27.3	-	100.0( 11)
계	81.4	2.3	4.7	9.3	2.3	100.0( 43)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98.1	1.9	-	-	-	100.0( 53)
유아	62.5	-	25.0	-	12.5	100.0( 8)
계	93.4	1.6	3.3	-	1.6	100.0( 61)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아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유아는 멀어서 차를 너무 오래 탄다는 이유가 가장 많다.

유아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보면 의성군은 비용부담이 37.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멀어서 차를 너무 오래 타서가 29.6%이다. 화순군은 34.7%가 멀어서 차를 너무 오래 타서이고 13.7%가 보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필요를 못 느낀다는 응답도 화순에서는 19.2%로 적지 않다.

이상을 요약하면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비용, 차 타는 거리, 프로그램이 3대 주요 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V-5-6〉 영유아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1.2	2.5	1.8	3.1	-	1.7	-	3.8	1.9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32.9	15.9	-	29.6	13.6	-	34.6	17.1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2.5	1.2	-	-	-	-	3.8	1.9
비용이 부담되어서	-	17.7	8.5	-	37.0	16.9	-	7.7	3.8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듦	1.2	6.3	3.7	-	3.7	1.7	1.9	7.7	4.8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듦	-	12.7	6.1	-	11.1	5.1	-	13.5	6.7
아이가 너무 어려서	94.1	7.6	52.4	93.8	11.1	55.9	94.3	5.8	50.0
필요를 못 느껴서	1.2	15.2	7.9	-	7.4	3.4	1.9	19.2	10.5
기타	2.4	2.5	2.4	3.1	-	1.7	1.9	3.8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5)	(79)	(164)	(32)	(27)	(59)	(53)	(52)	(10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5-7〉 연령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아동 연령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	3.0	-	-	6.3	-	3.7	1.8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	-	21.4	31.3	31.8	40.7	15.9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	-	-	6.3	-	3.7	1.2
비용이 부담되어서	-	-	-	21.4	12.5	22.7	14.8	8.5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듦	-	3.0	-	-	6.3	13.6	3.7	3.7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듦	-	-	-	-	12.5	13.6	18.5	6.1
아이가 너무 어려서	100.0	93.9	88.0	42.9	-	-	-	52.4
필요를 못 느껴서	-	-	4.0	14.3	18.8	18.2	11.1	7.9
기타	-	-	8.0	-	6.3	-	3.7	2.4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	(33)	(25)	(14)	(16)	(22)	(27)	(164)
경상북도 의성군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	7.1	-	-	-	-	-	1.7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	-	16.7	50.0	25.0	33.3	13.6
비용이 부담되어서	-	-	-	33.3	25.0	37.5	44.4	16.9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듦	-	-	-	-	-	-	11.1	1.7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듦	-	-	-	-	-	25.0	11.1	5.1
아이가 너무 어려서	100.0	92.9	90.0	50.0	-	-	-	55.9
필요를 못 느껴서	-	-	-	-	25.0	12.5	-	3.4
기타	-	-	10.0	-	-	-	-	1.7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14)	(10)	(6)	(4)	(8)	(9)	(59)



(표 계속)

전라남도 화순군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	-	-	-	8.3	-	5.6	1.9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	-	25.0	25.0	35.7	44.4	17.1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	-	-	8.3	-	5.6	1.9
비용이 부담되어서	-	-	-	12.5	8.3	14.3	-	3.8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듦	-	5.3	-	-	8.3	21.4	-	4.8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듦	-	-	-	-	16.7	7.1	22.2	6.7
아이가 너무 어려서	100.0	94.7	86.7	37.5	-	-	-	50.0
필요를 못 느껴서	-	-	6.7	25.0	16.7	21.4	16.7	10.5
기타	-	-	6.7	-	8.3	-	5.6	2.9
계(수)	100.0 (19)	100.0 (19)	100.0 (15)	100.0 (8)	100.0 (12)	100.0 (14)	100.0 (18)	100.0 (105)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5-8> 영유아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영아	유아	계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18.8	21.7	21.0	35.7	27.5	29.2	5.6	16.4	13.7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5.7	4.3	-	5.9	4.6	-	5.5	4.1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15.1	11.6	-	13.7	10.8	-	16.4	12.3
비용이 부담되어서	-	4.7	3.6	-	2.0	1.5	-	7.3	5.5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듦	-	7.5	5.8	-	7.8	6.2	-	7.3	5.5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듦	6.3	20.8	17.4	-	17.6	13.8	11.1	23.6	20.5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8	14.2	26.8	57.1	11.8	21.5	77.8	16.4	31.5
필요를 못 느껴서	3.1	7.5	6.5	7.1	9.8	9.2	-	5.5	4.1
기타	3.1	2.8	2.9	-	3.9	3.1	5.6	1.8	2.7
계 (수)	100.0 (32)	100.0 (106)	100.0 (138)	100.0 (14)	100.0 (51)	100.0 (65)	100.0 (18)	100.0 (55)	100.0 (73)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5-9> 연령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아동 연령					계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18.8	12.9	41.7	12.5	22.2	21.0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3.2	12.5	8.3	-	4.3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9.7	16.7	8.3	25.9	11.6
비용이 부담되어서	-	6.5	4.2	8.3	-	3.6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듦	-	3.2	-	12.5	14.8	5.8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듦	6.3	6.5	12.5	37.5	29.6	17.4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8	45.2	4.2	-	-	26.8
필요를 못 느껴서	3.1	9.7	8.3	12.5	-	6.5
기타	3.1	3.2	-	-	7.4	2.9
계(수)	100.0 (32)	100.0 (31)	100.0 (24)	100.0 (24)	100.0 (27)	100.0 (138)

(표 계속)

경상북도 의성군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35.7	16.7	50.0	12.5	20.0	29.2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	12.5	12.5	-	4.6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8.3	12.5	-	26.7	10.8
비용이 부담되어서	-	8.3	-	-	-	1.5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들	-	8.3	-	-	20.0	6.2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	-	6.3	50.0	26.7	13.8
아이가 너무 어려서	57.1	41.7	6.3	-	-	21.5
필요를 못 느껴서	7.1	8.3	12.5	25.0	-	9.2
기타	-	8.3	-	-	6.7	3.1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	(12)	(16)	(8)	(15)	(61)
전라남도 화순군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5.6	10.5	25.0	12.5	25.0	13.7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5.3	12.5	6.3	-	4.1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10.5	25.0	12.5	25.0	12.3
비용이 부담되어서	-	5.3	12.5	12.5	-	5.5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들	-	-	-	18.8	8.3	5.5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11.1	10.5	25.0	31.3	33.3	20.5
아이가 너무 어려서	77.8	47.4	-	-	-	31.5
필요를 못 느껴서	-	10.5	-	6.3	-	4.1
기타	5.6	-	-	-	8.3	2.7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8)	(19)	(8)	(16)	(12)	(73)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아는 아이가 너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유아는 운영시간이 안 맞는다는 응답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집에서 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서 이 세 가지 문제 해소가 주요 과제임을 나타냈다.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가 비용, 차타는 거리, 프로그램이었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프로그램과 집으로 부터의 거리는 동일한 과제이고, 이외 유치원은 운영시간, 보육시설은 비용이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보면 의성군은 운영시간, 프로그램, 차량 미운행이 각각 27.5%, 17.6%, 13.7%이다. 프로그램이 23.6%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차량 미운행과 운영시간이 각각 16.6%이다.

#### 라. 정책적 선호

<표 V-5-10>은 육아지원정책 선호도를 나타낸다. 자녀 양육지원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질문한 결과 보육비용지원과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많았고, 유치원차량운행 및 종일반 운영이 그 다음이었다.

의성군은 보육비용지원이 60.0%,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설치 23.8%이고 유치원 차량운행 및 종일반 운영이 12.4%이다. 이외 보육시설 이용시간 연장이 2.9%이다. 화순군은 보육비용지원이 44.9%,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설치 43.6%이고, 이외 유치원 차량운행

및 종일반 운영 3.2%, 보육시설 이용시간 연장이 3.2%로 소수이다. 두 지역 모두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크지 않다.

〈표 V-5-10〉 영유아별 자녀 양육지원 방안의 선호도

단위: %(명)

구분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설치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설 이용시간 연장	유치원 차량 및 종일반 운영	없음	모름	계(수)
전체							
영아	40.2	49.5	2.1	5.2	2.1	1.0	100.0( 97)
유아	32.9	51.8	4.3	7.9	2.4	0.6	100.0(164)
계	35.6	51.0	3.4	6.9	2.3	0.8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26.3	60.5	-	10.5	2.6	-	100.0( 38)
유아	22.4	59.7	4.5	13.4	-	-	100.0( 67)
계	23.8	60.0	2.9	12.4	1.0	-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49.2	42.4	3.4	1.7	1.7	1.7	100.0( 59)
유아	40.2	46.4	4.1	4.1	4.1	1.0	100.0( 97)
계	43.6	44.9	3.8	3.2	3.2	1.3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지역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 마. 취약보육의 필요성

현재 하루 12시간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정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야간 시간이나 휴일 또는 24시간 이용하는 야간보육, 휴일보육 또는 24시간 보육 등의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V-5-11〉은 전체 조사대상 중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종류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의 85.1%가 시간제 보육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야간보육 필요도 66.7%, 24시간 보육 필요도 39.3%, 휴일보육 필요도 54.4%이다. 취약보육 중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상시 필요에 대한 응답은 시간제 보육 44.1%, 야간보육 19.2%, 24시간보육 2.7%, 휴일보육 7.7%이다. 2004년 전국 조사에서 상시 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에 비하면 높은 것이다.<sup>36)</sup> 또한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시간제 보육 24.9%, 야간보육 29.5%, 24시간보육 11.1%, 휴일보육 17.2%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제보육은 화순군보다는 의성군에서 다소 요구도

36) 시간제 보육 17.8%, 야간보육 11.5%, 24시간보육 3.6%, 휴일보육 2.9%임.

가 높고,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화순군에서 영아 시간제보육이 상시 비율은 유아보다 낮고 농번기 때나 가끔 필요하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표 V-5-11〉 취약보육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상시 필요	농번기때 필요	가끔 필요		
시간제 보육	44.1	24.9	16.1	14.9	100.0(261)
야간 보육	19.2	29.5	17.6	33.7	100.0(261)
24시간 보육	2.7	11.1	24.5	61.7	100.0(261)
휴일 보육	7.7	17.2	29.5	45.6	100.0(261)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5-12〉 영유아별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단위: %(명)

구분	상시 필요	농번기때 필요	가끔 필요	필요치 않음	계(수)	$\chi^2(df)$
전체						
영아	40.2	26.8	16.5	16.5	100.0( 97)	
유아	46.3	23.8	15.9	14.0	100.0(164)	1.01(3)
계	44.1	24.9	16.1	14.9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47.4	28.9	5.3	18.4	100.0( 38)	
유아	47.8	23.9	11.9	16.4	100.0( 67)	1.44(3)
계	47.6	25.7	9.5	17.1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35.6	25.4	23.7	15.3	100.0( 59)	
유아	45.4	23.7	18.6	12.4	100.0( 97)	1.59(3)
계	41.7	24.4	20.5	13.5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야간보육은 의성군보다 화순군에서 요구도가 높다. 의성군은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영아 시간제보육이 상시 비율은 유아보다 낮고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화순군은 영아 시간제 보육이 가끔 필요하다는 비율이 유아보다 높다.

〈표 V-5-13〉 영유아별 야간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단위: %(명)

구분	상시 필요	농번기때 필요	가끔 필요	필요치 않음	계(수)	$\chi^2(df)$
전체						
영아	15.5	32.0	21.6	30.9	100.0( 97)	
유아	21.3	28.0	15.2	35.4	100.0(164)	3.19(3)
계	19.2	29.5	17.6	33.7	100.0(261)	

(표 계속)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7.9	42.1	13.2	36.8	100.0( 38)	
유아	19.4	25.4	14.9	40.3	100.0( 67)	4.40(3)
계	15.2	31.4	14.3	39.0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20.3	25.4	27.1	27.1	100.0( 59)	
유아	22.7	29.9	15.5	32.0	100.0( 97)	3.15(3)
계	21.8	28.2	19.9	30.1	100.0(156)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24시간보육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의성군과 화순군이 유사하다. 그러나 의성군은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없고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17.1%이다. 유아보다는 영아가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다. 화순군에서는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4.5%이고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7.1%이며 다수가 가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5-14〉 영유아별 24시간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단위: %(명)

구분	상시 필요	농번기때 필요	가끔 필요	필요치 않음	계(수)	$\chi^2(df)$
전체						
영아	3.1	12.4	24.7	59.8	100.0( 97)	
유아	2.4	10.4	24.4	62.8	100.0(164)	n.a
계	2.7	11.1	24.5	61.7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	21.1	21.1	57.9	100.0( 38)	
유아	-	14.9	22.4	62.7	100.0( 67)	0.64(2)
계	-	17.1	21.9	61.0	100.0(105)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5.1	6.8	27.1	61.0	100.0( 59)	
유아	4.1	7.2	25.8	62.9	100.0( 97)	n.a
계	4.5	7.1	26.3	62.2	100.0(15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5-15〉 영유아별 휴일 보육서비스의 필요도

단위: %(명)

구분	상시 필요	농번기때 필요	가끔 필요	필요치 않음	계(수)	$\chi^2(df)$
전체						
영아	8.2	16.5	29.9	45.4	100.0( 97)	
유아	7.3	17.7	29.3	45.7	100.0(164)	0.13(3)
계	7.7	17.2	29.5	45.6	100.0(261)	
경상북도 의성군						
영아	2.6	23.7	34.2	39.5	100.0( 38)	
유아	4.5	17.9	32.8	44.8	100.0( 67)	n.a
계	3.8	20.0	33.3	42.9	100.0(105)	

(표 계속)

전라남도 화순군						
영아	11.9	11.9	27.1	49.2	100.0( 59)	
유아	9.3	17.5	26.8	46.4	100.0( 97)	1.06(3)
계	10.3	15.4	26.9	47.4	100.0(15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휴일보육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화순군이 다소 높고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다. 의성군은 상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소수이고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이다. 유아보다는 영아가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다. 화순군에서는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10.3%이고 농번기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15.4%이다.

바. 보육기회 확충에 대한 의견

<표 V-5-16>는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다. 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다수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18% 정도이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의성군 32.4%, 화순군 30.8%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두 지역에서 모두 유아보다는 영아를 둔 보호자들의 보육시설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표 V-5-16> 영유아별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도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필요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b>전체</b>					
영아	35.1	50.5	12.4	2.1	100.0( 97)
유아	29.3	51.8	16.5	2.4	100.0(164)
계	31.4	51.3	14.9	2.3	100.0(261)
<b>경상북도 화성군</b>					
영아	36.8	42.1	18.4	2.6	100.0( 38)
유아	29.9	56.7	11.9	1.5	100.0( 67)
계	32.4	51.4	14.3	1.9	100.0(105)
<b>전라남도 화순군</b>					
영아	33.9	55.9	8.5	1.7	100.0( 59)
유아	28.9	48.5	19.6	3.1	100.0( 97)
계	30.8	51.3	15.4	2.6	100.0(15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보육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대안을 질문하였다.

첫째는 큰 보육시설에서 보육모를 마을로 파견하여 아동을 보육하는 방안이다. 상시 파견에 대하여 의성군에서는 8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화순군에서는 6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농번기 때 파견보육은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V-5-17 참조).

〈표 V-5-17〉 보육모 파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필요	필요한편	불필요한편	전혀불필요	계(수)	$\chi^2(df)$
상시 전체	31.8	42.5	21.8	3.8	100.0(97)	
의성군	37.1	45.7	10.5	6.7	100.0(105)	3.47(3)
화순군	28.2	40.4	29.5	1.9	100.0(156)	
농번기 전체	46.0	40.6	12.3	1.1	100.0(261)	
의성군	46.7	41.9	10.5	1.0	100.0(105)	n.a
화순군	45.5	39.7	13.5	1.3	100.0(15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둘째로 농어촌 주민을 단기교육하여 아동을 보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시에 의성군은 51.5% 화순군 3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외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번기 때는 의성군에서 59.2%, 화순군에서 5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5-18 참조).

〈표 V-5-18〉 주민 단기교육후 보육모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필요	필요한편	불필요한편	전혀불필요	계(수)	$\chi^2(df)$
상시 전체	19.9	24.5	37.5	18.0	100.0(261)	
의성군	26.7	24.8	35.2	13.3	100.0(105)	3.47(3)
화순군	15.4	24.4	39.1	21.2	100.0(156)	
농번기 전체	26.8	26.8	28.0	18.4	100.0(261)	
의성군	28.6	28.6	30.5	12.4	100.0(105)	n.a
화순군	25.6	25.6	26.3	22.4	100.0(15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셋째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에는 의성군에서 74.3%, 화순군에서 6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농번기 때는 의성군에서 80.0%, 화순군 7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5-19 참조).

〈표 V-5-19〉 이동식 보육차량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필요	필요한편	불필요한편	전혀불필요	계(수)	$\chi^2(df)$
상시 전체	31.8	36.8	24.5	6.9	100.0(261)	
의성군	34.3	40.0	18.1	7.6	100.0(105)	3.47(3)
화순군	30.1	34.6	28.8	6.4	100.0(156)	
농번기 전체	38.7	38.3	18.0	5.0	100.0(261)	
의성군	37.1	42.9	16.2	3.8	100.0(105)	n.a
화순군	39.7	35.3	19.2	5.8	100.0(15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6.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이용 및 요구

### 가. 방과후 이용 기관

농어촌에서의 보육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아동 또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서문희 외(2002)는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는 아동의 약 19%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하였으며, 또한 2004년 조사(서문희 외, 2005)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제한성으로 학원 등 교육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과후 보육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가정으로 조사대상이 되었던 가정에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 아동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농어촌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이 된 초등학생 아동은 경상북도 의성군 52명, 전라북도 화순군 76명으로 총 128명이다. 아동들은 82.9%가 오후 5시 이전에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오후 2시 경부터 오후 4시 이전까지 귀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1〉 초등학생 학년별 귀가 시간

단위: %(명)

구분	오후 2시 이전	오후 2~3시	오후 3~4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시 이후	계(수)
전체							
1학년	5.6	27.8	27.8	27.8	11.1	-	100.0( 18)
2학년	3.8	26.9	34.6	26.9	7.7	-	100.0( 26)
3학년	-	3.4	51.7	27.6	13.8	3.4	100.0( 29)
4학년	-	-	61.1	22.2	16.7	-	100.0( 18)
5학년	-	-	38.9	38.9	16.7	5.6	100.0( 18)
6학년	-	-	15.8	52.6	21.1	10.5	100.0( 19)
계	1.6	10.2	39.1	32.0	14.1	3.1	100.0(128)
경상북도 의성군							
1학년	-	16.7	33.3	37.5	-	-	100.0( 6)
2학년	10.0	30.0	30.0	20.0	10.0	-	100.0( 10)
3학년	-	7.1	42.9	21.4	21.4	7.1	100.0( 14)
4학년	-	-	57.1	28.6	14.3	-	100.0( 7)
5학년	-	-	33.3	44.4	11.1	11.1	100.0( 9)
6학년	-	-	16.7	50.0	33.3	-	100.0( 6)
계	1.9	9.6	36.5	28.8	19.2	3.8	100.0( 52)
전라남도 화순군							
1학년	8.3	33.3	25.0	33.3	-	-	100.0( 12)
2학년	-	25.0	37.5	31.3	6.3	-	100.0( 16)
3학년	-	-	60.0	33.3	7.7	-	100.0( 15)
4학년	-	-	63.6	18.2	18.2	-	100.0( 11)
5학년	-	-	44.4	33.3	22.2	-	100.0( 9)
6학년	-	-	15.4	53.8	15.4	15.4	100.0( 13)
계	1.3	10.5	40.8	34.2	10.5	2.6	100.0( 7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아동들은 학교에서 귀가 후 학원에 다니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보내는 경우도 1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 의성군과 전남 화순군의 조사 양태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경북 의성군의 경우 기관의 공부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36.5%이고, 학원에 다니기 48.1%이며, 방과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 비율이 5.7%인데 비하여 화순군은 방과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 비율이 14.4%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돌봄이 많이 요구되는 저학년의 아동들이 귀가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학원 이용 비율이 낮다. 초등학생의 총 일반학원 이용률은 읍·면에 비해 도시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훨씬 높으며, 농어촌도 안 다닌다가 34.6%이고 나머지 65.4%가 학원을 다닌다고 조사된 것에 비하면 본 조사된 면의 학원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V-6-2〉 초등학생 학년별 귀가 후 활동

단위: %(명)

구분	학원에 다님	공부방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집에서 과외	다른 곳에 가서 과외	집에서 보냄 (보호자 있음)	집에서 보냄 (보호자 없음)	계(수)
<b>전체</b>							
1학년	38.9	38.9	5.6	-	11.1	5.6	100.0( 18)
2학년	42.3	30.8	3.8	7.7	15.4	-	100.0( 26)
3학년	37.9	44.8	3.4	-	10.3	3.4	100.0( 29)
4학년	61.1	38.9	-	-	-	-	100.0( 18)
5학년	55.6	33.3	5.6	-	5.6	-	100.0( 18)
6학년	42.1	47.4	-	-	5.3	5.3	100.0( 19)
계	45.3	39.1	3.1	1.6	8.6	2.3	100.0(128)
<b>전라남도 의성군</b>							
1학년	33.3	50.0	16.7	-	-	-	100.0( 6)
2학년	40.0	30.0	10.0	20.0	-	-	100.0( 10)
3학년	35.7	50.0	7.1	-	7.1	-	100.0( 14)
4학년	85.7	14.3	-	-	-	-	100.0( 7)
5학년	55.6	33.3	-	-	11.1	-	100.0( 9)
6학년	50.0	33.3	-	-	-	16.7	100.0( 6)
계	48.1	36.5	5.8	3.8	3.8	1.9	100.0( 52)
<b>경상북도 화순군</b>							
1학년	41.7	33.3	-	-	16.7	8.3	100.0( 12)
2학년	43.8	31.3	-	-	25.0	-	100.0( 16)
3학년	40.0	40.0	-	-	13.3	6.7	100.0( 15)
4학년	45.5	54.5	-	-	-	-	100.0( 11)
5학년	55.6	33.3	11.1	-	-	-	100.0( 9)
6학년	38.5	53.8	-	-	7.7	-	100.0( 13)
계	43.4	40.8	1.3	-	11.8	2.6	100.0( 76)

주: na는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6-3〉 초등학생의 총 일반학원 이용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계	(수)	$\chi^2(df)$
대도시	24.9	41.7	23.3	7.7	2.4	100.0	(1,596)	55.3(8)**
중소도시	26.7	42.1	23.4	6.6	0.9	100.0	(1,234)	
읍·면	34.6	45.1	17.0	2.7	0.6	100.0	( 619)	

주: \*\* p<.01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방과 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소재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아동이 거주지와 동일한 면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경북 의성군은 55.0%, 전남 화순군 59.4%이고, 거주지와 다른 인근 면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이 각각 51.1%, 40.7%이다. 동일 지역은 대체로 학교이고 타 지역은 학원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역내 방과후 보육·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표 V-6-4〉 초등학생 학년별 방과 후 활동 소재지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수)	
<b>전체</b>								
거주지와 동일 면	71.4	59.1	58.3	50.0	37.5	52.9	55.0	
인근 면	28.6	40.9	37.5	50.0	62.5	47.1	44.1	
인근 읍	-	-	4.2	-	-	-	0.9	
계(수)	100.0(14)	100.0(22)	100.0(24)	100.0(18)	100.0(16)	100.0(17)	100.0(111)	
<b>경북 의성군</b>								
거주지와 동일 면	60.0	60.0	58.3	28.6	37.5	40.0	48.9	
인근 면	40.0	40.0	41.7	71.4	62.5	60.0	51.1	
인근 읍	-	-	-	-	-	-	-	
계(수)	100.0(5)	100.0(10)	100.0(12)	100.0(7)	100.0(8)	100.0(5)	100.0(47)	
<b>전남 화순군</b>								
거주지와 동일 면	77.8	58.3	58.3	63.6	37.5	58.3	59.4	
인근 면	22.2	41.7	33.3	36.4	62.5	41.7	39.1	
인근 읍	-	-	8.3	-	-	-	1.6	
계(수)	100.0(9)	100.0(12)	100.0(12)	100.0(11)	100.0(8)	100.0(12)	100.0(64)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경북 의성군과 전남 화순군의 전 초등학교 모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조사대상 중 대부분의 아동(76.6%)들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북 의성군이 전남 화순군보다 이용 비율이 높았는데, 경북 의성군은 저학년의 이용 비율이 높으며, 전남 화순군은 고학년의 특기적성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6-5〉 초등학교 학생 학년별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수)
전체							
이용	77.8	73.1	75.9	72.2	83.3	78.9	76.6
미이용	22.2	26.9	24.1	27.8	16.7	21.1	23.4
계(수)	100.0( 18)	100.0( 26)	100.0( 29)	100.0( 18)	100.0( 18)	100.0( 19)	100.0(128)
경북 의성군							
이용	100	90	85.7	57.1	77.8	83.3	82.7
미이용	-	10	14.3	42.9	22.2	16.7	17.3
계(수)	100.0(6)	100.0( 10)	100.0( 14)	100.0( 7)	100.0( 9)	100.0( 6)	100.0( 52)
전남 화순군							
이용	66.7	62.5	66.7	81.8	88.9	76.9	72.4
미이용	33.3	37.5	33.3	18.2	11.1	23.1	27.6
계(수)	100.0( 12)	100.0( 16)	100.0( 15)	100.0( 11)	100.0( 9)	100.0( 13)	100.0( 7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 나. 방과후 이용기관 필요성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공부방이나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학년 구분 없이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V-6-6 참조).

필요성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습 지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78.1%), 특히 전남 화순군은 귀가한 초등학교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교육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응답도 9.6%이었다(표 V-6-7 참조).

〈표 V-6-6〉 초등학교 공부방 및 보육기관의 필요성 인지도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전체	95.9	4.1	100.0( 98)
경상북도 의성군	95.7	4.3	100.0( 46)
전라남도 화순군	96.2	3.8	100.0( 52)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임.

〈표 V-6-7〉 초등학교 학생 학년별 공부방 및 보육기관을 원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돌봐줄 사람 (기관)이 없어서	학습지도가 필요해서	정서함양 및 사회성 교육 위해	집의 학습환경 및 여건이 열악해서	계(수)
전체					
1학년	5.9	82.4	11.8	-	100.0( 17)
2학년	-	84.6	11.5	3.8	100.0( 26)
3학년	7.1	75.0	14.3	3.6	100.0( 28)
4학년	-	93.8	6.3	-	100.0( 16)
5학년	5.9	76.5	11.8	5.9	100.0( 17)
6학년	5.3	88.2	5.9	-	100.0( 17)
계	4.1	82.6	10.7	2.5	100.0(121)
경상북도 의성군					
1학년	16.7	66.7	16.7	-	100.0( 6)
2학년	-	80.0	20.0	-	100.0( 10)
3학년	15.4	61.5	15.4	7.7	100.0( 13)
4학년	-	100.0	-	-	100.0( 7)
5학년	12.5	75.0	-	12.5	100.0( 8)
6학년	16.7	66.7	16.7	-	100.0( 6)
계	10.0	74.0	12.0	4.0	100.0( 50)
전라남도 화순군					
1학년	-	90.9	91	-	100.0( 11)
2학년	-	875	63	63	100.0( 16)
3학년	-	867	133		100.0( 15)
4학년	-	889	111		100.0( 9)
5학년	-	778	222		100.0( 9)
6학년	-	100.0	-	-	100.0( 11)
계	-	88.7	9.9	1.4	100.0( 71)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다. 아이들만 집에 두는 빈도

평소 및 농번기 시기에 초등학교 자녀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워 아동들만 집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평소 거의 대부분인 95.3%의 학부모가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아동들만 집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평소와 농번기 시기를 비교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의 부모와 기타 양육자 등 성인들이 농사일로 가장 분주한 농번기 때 자녀들만 집에 남게 되는 경우가 66.4%로 평소 시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번기 시기에 어린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기보다는, 양육자가 자녀들을 돌볼 시간을 낼 수 없어 성인들과 농사일을 돕게 하거나 논밭 근처에 놓아두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혼자 혹은 자녀들끼리만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평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V-6-8〉 초등학교 학생 학년별 아동들만 집에 남게 되는 경우

단위: %(명)

구분	보통 때				농번기 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학년	22.2	72.2	5.6	100.0( 18)	33.3	27.8	38.9	100.0( 18)
2학년	38.5	53.8	7.7	100.0( 26)	38.5	26.9	34.6	100.0( 26)
3학년	34.5	62.1	3.4	100.0( 29)	34.5	27.6	37.9	100.0( 29)
4학년	38.9	55.6	5.6	100.0( 18)	50.0	22.2	27.8	100.0( 18)
5학년	38.9	61.1	-	100.0( 18)	33.3	27.8	38.9	100.0( 18)
6학년	42.1	52.6	5.3	100.0( 19)	47.4	31.6	21.1	100.0( 19)
계	35.9	59.4	4.7	100.0(128)	39.1	27.3	33.6	100.0(128)
의성군								
1학년	16.7	83.3	-	100.0( 6)	66.7	16.7	16.7	100.0( 6)
2학년	50.0	50.0	-	100.0( 10)	70.0	20.0	10.0	100.0( 10)
3학년	21.4	78.6	-	100.0( 14)	28.6	42.9	28.6	100.0( 14)
4학년	42.9	57.1	-	100.0( 7)	42.9	14.3	42.9	100.0( 7)
5학년	44.4	55.6	-	100.0( 9)	55.6	22.2	22.2	100.0( 9)
6학년	66.7	33.3	-	100.0( 6)	66.7	-	33.3	100.0( 6)
계	38.5	61.5	-	100.0( 52)	51.9	23.1	25.0	100.0( 52)
화순군								
1학년	25.0	66.7	8.3	100.0( 12)	16.7	33.3	50.0	100.0( 12)
2학년	31.3	56.3	12.5	100.0( 16)	18.8	31.3	50.0	100.0( 16)
3학년	46.7	46.7	6.7	100.0( 15)	40.0	13.3	46.7	100.0( 15)
4학년	36.4	54.5	9.1	100.0( 11)	54.5	27.3	18.2	100.0( 11)
5학년	33.3	66.7	0.0	100.0( 9)	11.1	33.3	55.6	100.0( 9)
6학년	30.8	61.5	7.7	100.0( 13)	38.5	46.2	15.4	100.0( 13)
계	34.2	57.9	7.9	100.0( 76)	30.3	30.3	39.5	100.0( 76)

주: 빈도의 분포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임.

#### 라. 기타 요구사항

경북 의성군과 전남 화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알아본 결과, 대다수 아동들은 학교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고는 있었지만 접근성 및 학습지도에 대한 부모의 요구 사항 등에는 만족 수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자녀들만 집에 있거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줄 사람 혹은 기관이 부재하여 양육자의 일터에 함께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공부방이나 보육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 7.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은 농어촌 아동 가정의 특성 및 보육서비스 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어촌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등 퇴원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와 다른 면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아동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시 편도 차 타는 시간은 평균 33분이고 최대 90분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시설조사에서는 120분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 보육시설 아용 아동의 17%가 편도 1시간 이상 차를 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기관을 선택한 이유 중 의성군은 차량운행이 가장 많고, 화순군은 가까워서라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99%가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이이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가거나 불 일을 보러가는 비율이 30% 정도이고, 20.3%는 영유아를 형제자매한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대다수도 가까운 거리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농어촌의 유치원은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운영시간, 차량운행의 적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의 아동이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아직도 비용이 보육기회의 장애가 되는 아동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조사지역 아동의 65~70%가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이고 18% 정도만이 보육료·교육비 혜택이 없는 아동이다. 그러나 약 40%의 보호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다. 유아 미이용자 중 25.0%는 비용부담을 미이용 이유로 들었다. 의성군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아동 중 29.0%가 비용이 비싸서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제공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실태는 야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요구 비율이 높고, 특히 농번기 때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며, 휴일 및 24시간보육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농어촌에도 특수보육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농번기 등에는 별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농어촌에 보육대체 기관이 한정되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는 대리보호 이외에 자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어촌 부모의 아동 발달 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군에서는 아동 사회성 발달을 이유로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보다는 다른 면의 조금 큰 병설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확보 측면에서 일정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동거조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 기관 미이용 이유가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 집에서 돌볼 수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농어민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수요 발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시설에

영아보육 대기아가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바가 크다.

일곱째, 농어촌에는 모 및 부가 없는 아동의 비율이 높다.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산다는 아동은 의성군 21.9%, 화순군 13.5%로 높다. 또한 편부 편모의 비율도 높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비용 지원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덟째, 면 지역 아동 가구의 농가 비율은 71.4%이다. 농어촌 지역 아동 모의 일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전업주부가 의성군 15%, 화순군 30%이고 그 이외는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특성상 가족무급종사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하는 형태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농번기 등 시기별로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아홉째, 방과후 보육에서도 45.5%의 아동이 타 면에 위치한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의성군은 17.0%의 아동이 학교 정규 이후에 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고, 특히 학습지도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한다는 비율이 높다.

## VI. 농어촌 보육 정책방안

본 장은 앞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의 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등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기본방향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고 (affordability) 질 높은(quality) 보육 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accessability)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도시와 농촌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목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접근성 제고

읍·면 지역은 관할지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에의 접근성이 도시보다 떨어지므로 이를 제고하여야 한다. 면 지역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이 적절하게 운행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다. 면 단위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데, 보육시설이 없는 면 아동은 거주지와 다른 면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면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대부분이 운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인근 아동을 시설로 데려온다. 농촌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한 개의 보육시설이 최대 15개 면,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최대 11개의 면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 이동은 아동이 차를 타는 시간의 적절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차량 운행에서 오는 안전상의 위해요소 등이 문제가 된다. 가구 및 시설조사에서 등원하기 위하여 가장 긴 시간 동안 차를 타는 아동은 편도 120분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7%가 편도 1시간 이상 차를 탄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 오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하는 아동도 상당수 있어서, 시설장의 23% 정도가 이러한 아동이 주변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과 부모는 장시간 차량 탑승으로 피로와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이 거주지와 근거리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나. 부모 부담 완화

보육시설 및 유치원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갖거나 비용 때문에 시설 이용을 꺼리는 아동이 있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2006년에는 정부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수준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 보육시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료보다 낮은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가



구가 많다.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보육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는 시설들이 있으며,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또한 많았다. 조사지역 아동의 65~70%가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이고 보육료·교육비 혜택이 없는 아동은 18%이다. 그러나 약 40%의 보호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다. 유아 미이용자 중 25.0%는 비용부담을 시설 미이용 이유로 들었다.

의성군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아동 중 29.0%가 비용이 비싸서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정수준 소득 이하의 가정에 차등보육료가 지원되고, 또한 농어업인 자녀에게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필요 아동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농어촌에 거주하나 농어업 직군에 속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읍면 소재지가 아닌 등의 이유로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보육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또한 기본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용 부담도 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농촌 아동 보육료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서비스 수준 제고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주요 결정요인인 보육교사의 확보가 제한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도 도시에 비하여 열악하다. 농어촌에는 보육 대체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농어촌이라고 다르지 않다. 실제로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는 대리보호 이외에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어촌 부모의 아동 발달 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군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이유로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보다는 다른 면의 조금 큰 병설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확보 측면에서 일정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고, 농어촌의 보육서비스가 도시에 비하여 열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문화환경과 급여 등의 근무조건이 교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라고 응답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교사가 열악한 생활 환경과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농어촌 보육 시설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 농어촌 특성의 반영

농어촌 보육정책은 농어촌의 여러 가지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아동 모의 취업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농어촌 여성은 대부분 일을 한다. 그러나 무급 가족종사자가 높아 취업모의 평균 소득은 낮다. 이는 모가 일을 하지만 보육료를 지불하고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낼 여유가 없는 가구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어촌에는 모 및

부가 없는 아동의 비율이 높고 조손가정의 수도 많다.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산다는 아동은 의성군 21.9%, 화순군 13.5%이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낮에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의 아동, 조손 가정의 아동, 국제 결혼 가정의 아동 등 특별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단순한 비용 지원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는 농번기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농번기는 농한기와는 달리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높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어촌의 아동 인구밀도 특성, 주변환경의 열악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아동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 2. 접근성 제고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설치, 초등학교에 보육시설 설치, 가정보육도우미, 유치원 활용성 증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 가.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시설의 설치

#### 1) 배경

지역에 미취학 아동이 일정수준 이상은 있지만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형태의 복합시설을 설치한다. 보육아동수가 너무 적은 보육시설을 단독 기능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어촌에 시설은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데, 아동수가 적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기도 쉽지 않다. 또한 아동수가 감소하고 농촌 아동수가 감소하므로 보육시설이 곧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수의 지속적 감소 예상도 보육 단독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닌 복합시설 설치로 보육기회를 확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 단독기능 보다는 복합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2~3개면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용하도록 한다.

#### 2) 설치 모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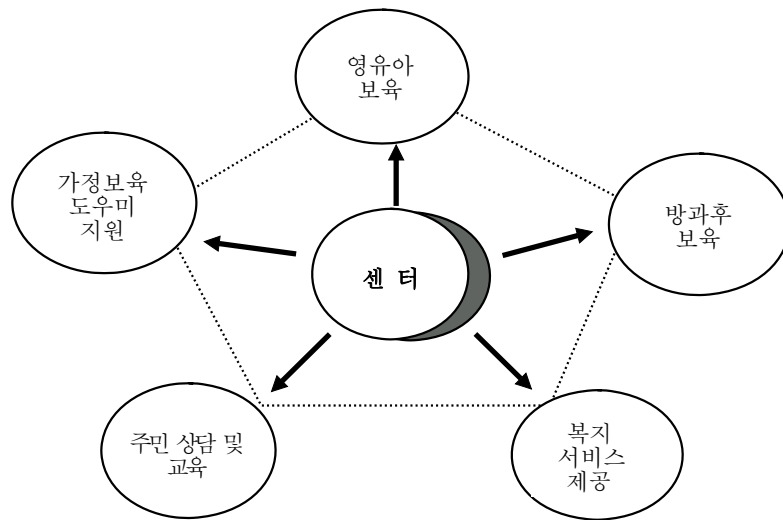
복합시설은 두 가지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합시설의 첫 번째 모형은 경북의 농촌보육·정보센터, 또는 여성농어민센터와 유사한 모델이다. 복합시설의 기능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동시에 이들 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모형으로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보육과 교육 기능, 주민 상담 기능 이외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두는 모형이다. 특성이 전혀 다른 아동과 노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농어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이나 정부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경기도의 G & H센터<sup>37)</sup>를 들 수 있는데, 경기도는 농촌지역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는 올해 1월말까지 안성, 용인, 화성, 파주 등 농촌지역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이 중 3곳을 선정하 뒤 40억원씩을 지원, 연말까지 시설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복합센터 설치의 어려움은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데, 모형이 무엇이건 정부가 센터의 인프라 초기 설치비와 설치 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로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도 좋지만 폐교나 학교의 빈 교실과 같은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복합센터를 구상한다면 초기 재정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교실은 정부가 설치 주체인 국공립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건물을 위탁체가 마련하고 정부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방식인 여성농어민센터보다는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 주고, 이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북의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더 바람직한 모형이다.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는 운영의 안정성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소재 시설에는 아동 1인당 운영비용도 도시 소재 보육시설보다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기관이 정부의 정책의도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가 바람직하다. 농어촌 지역에 민간이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부모들도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그림 VI-2-1〉 농어촌 복합 센터 주요 기능

37) 'G & H센터'는 Gyunggi(경기도), Glory(영광), Good(좋은)의 'G'와 Hope(희망), Health(건강), Happy(행복)의 'H'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센터 설치를 위한 재정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설치비는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일반적 보육사업 예산체계로 처리하기보다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복합센터의 설치에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여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나. 초등학교에 보육시설 설치

##### 1) 배경

농어촌 보육담당자의 상당수가 아동의 장거리 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보육시설 설치 필요를 느끼며, 일부 면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지 및 건축비 분담금 등 시설 신축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민들도 국공립시설 설치 장소로 가장 바람직한 곳이 초등학교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의 확충 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2/3가 초등학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의성군에서는 폐교를 이용하자는 응답도 15% 이상이 되었다.

외국에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수요를 만족시키는 일이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2) 설치 방안

이는 동일한 울타리 안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같이 두자는 방안이다. 최근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이 유사해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아직 프로그램은 물론 운영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영아는 보육시설을 필요로 한다. 농어촌에서 영아 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도 상당부분 작용하지만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주요 이유가 된다.

군 보육담당공무원들은 다수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듯이, 초등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두는 방안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부처의 이원화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활용방안은 부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부처의 이원화로 인하여 중앙정부 결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협력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한 울타리 안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함께 두는 방안은 우리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나누어진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한 유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 또는 보육소가 각각 고유한 역할 이외에, 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을, 보

육소는 3세이상 아동에게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법적 시설을 의미한다.

#### 다. 유치원의 활용성 증대

##### 1) 배경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녀발달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어촌 부모의 교육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농어촌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보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어촌의 대부분의 면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유치원은 종일반을 운영하고 차량 운영을 하는 유치원도 많지만 유치원이 주민들의 교육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활성화의 걸림돌은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의 문제이다. 미이용 이유의 21%는 운영시간으로, 운영시간이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처럼 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 이용자들의 불만 중 개원시간이 이르고 폐원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응답이 많다.

유치원 중에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차량은 운행하는 경우에도 초등학생과 같이 이용하여야 한다. 즉, 영유아가 초등학생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일찍 등원하여야 하고 하원시에도 초등학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이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등원으로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이 긴 것도 이러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 차량은 대개가 어린이집 차량처럼 집 가까이에서 오지 않고 큰 길가 정류장에 아이들을 내려놓는다. 큰길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일은 영유아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걸림돌을 없애고 유치원이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활용성 증대 방안

보육시설이 농어촌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차량운행은 유치원 영유아를 위한 별도의 소형 차량을 마련하여 초등학생과 분리하여 운행하고, 가능하다면 집 가까이까지 운행하여 부모가 쉽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가정보육도우미의 실시

##### 1) 배경

농어촌 일부 지역은 보육시설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아동도 소수여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권한의 특별한 조치로 소규모 가정보육도우미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 친인척보육 등 소규모 보육을 우선시하여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모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놀이집단이라는 정규 보육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 실시 방안

가정보육도우미는 해당 지역 거주 인력 중 일정 학력 이상자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보육도우미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파견되어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만들어 해당지역에서만 통용되도록 하는 자격이다.

이러한 제도는 농어촌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수의 아동을 위한 농어촌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농어촌 거주자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시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농번기만이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정보육도우미는 반드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하는 기구로는 복합 센터나 인근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을 경우 법인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지원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육교사를 파견하여 지도하고, 이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사가 순회 지도하는 방안, 또는 일주일에 한번 대규모 보육시설이나 복합 센터를 아동과 함께 방문하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 받는 것 등이 필요하다.

## 마. 차량 지원 및 안전관리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다니면 좋겠으나, 농어촌에서 실제로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차량을 운행 하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차량은 아동 집 가까이 운행하기는 하지만 너무 넓은 지역을 운행하므로 아동에게 부담을 준다. 아동의 차 타는 시간을 줄이려면 한번에 여러 지역을 다 돌지 말고 짧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돌아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비용 지원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거리는 편도 133km로 월 16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2004년 조사에서는 하루 6시간 운행에 월 200만원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량 유지비는 보육시설에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안겨주어 보육시설 운영 자체에 근본적인 위협을 준다. 따라서 유류비용을 현재 20만원에서 또한 차량수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여 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아동의 차타는 시간이 최대 30분 등 일정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주변의 여러 육아지원기관들이 차량은 통합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리 지도를 만들어 기관들이 지역을 분담하여 아동을 이동시킨다면 기관의 차량운행 시간과 아동의 차타는 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러한 방안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비용 이외에도 안전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2004년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보육시설도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는데 시설 중 26.2%가 지입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지입 차량은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어린이에게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차량 운행시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교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아동 승하차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장시간 차를 타는 아동을 위한 차량 내에서의 아동보호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차량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 1) 야간,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

농어촌 여성의 노동은 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탄력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특히 농번기에 야간, 공휴일 등 특수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번기 기간 동안에 한하여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한하여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및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2) 장애아동 보육

농어촌에도 장애아동이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다. 그러므로 일정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통합보육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을 선별하여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개별화된 보육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순회지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비용 부담 완화

대수의 아동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임에도 약 40%의 보호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고, 유아 미이용자 중 25.0%는 비용부담을 미이용 이유로 들었다. 의성군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이동 중 29.0%가 비용이 비싸서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가. 아동 보육비용 지원 확대

0~4세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보육료는 면제하고 있고, 그 이외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외되는 아동이 있으므로, 우선은 0~5세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차등 보육료나 교육비 면제 대상 이외는 농림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다. 농림부 농어민 자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농어민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거주 아동에 한하여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점차 전체 아동의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만5세아 무상보육은 농어촌 거주 모든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 나. 조부모·친인척 보호 아동 보육료 지원

조부모나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많은 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장 확인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방과후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설, 초등학교를 이용한 방과후 보육의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농어촌 아동의 교육 기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 라. 농번기 취약보육 비용 지원

농번기에는 보육이 활성화되도록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농번기와 농한기에 가정내 유희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 및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일반 보육서비스는 물론 특수보육 등 보육 수요가 농번기와 농한기에 차이가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계절적으로 수요와 요구가 크게 다르다. 농어촌의 특수보육서비스 실태는 야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요구 비율이 높고, 특히 농번기 때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며, 휴일 및 24시간보육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농어촌에도 특수보육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농번기 등에는 별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농번기에는 가정보육도우미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농어촌에서 0, 1세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는 비정형화된 여성 취업의 특성, 자녀 양육에 대한 전통적 인식, 비용 부담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과도한 이중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가정보육도우미를 파견하여 부모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정보육도우미 파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보육용으로 제작한 특별한 차량에 시설을 갖추고 파견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바 있다.

## 4.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지만 환경개선, 프로그램, 인력관리 세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 가. 환경 개선

농어촌 보육시설은 설비 등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반면, 부모들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는 농어촌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나 농어촌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하고 인프라 자체가 취약하므로 서비스 개선 측면도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은 법인 시설이 많은데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법인 전입금 등을 활용한 시설의 기능보강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의 지원 없이 열악한 시설을 단시일에 개선하기 어렵다.

### 나.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보육시설들이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보육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표준보육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시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여 온 편이다. 보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농어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은 더욱 더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육시설들이 앞으로 마련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에서의 특기교육은 화순군 아동 7.7%, 의성군 아동 25.7%로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이용아동 평균 47.1%나 유치원 이용아동 42.3%보다 훨씬 낮다. 농어촌 거주 영유아는 특별활동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는 아동도 한정되어 있다.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의 일반학원 이용비율은 대도시 8.5%, 중소도시 10.1%, 읍면 6.7%이었다.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학원 이용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전체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아동이 도시 아동과 같은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규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교사 강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활동 비용을 지원한 사례로는 과천시와 같은 경우가 있다.

### 다. 인력관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1차적인 접촉을 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보육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시설이 많다.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을 책임지는 시설도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의 보육인력 확보와 이

들의 사기양양 및 서비스의 질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교사가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며, 이외에 농어촌 근무 수당 등 처우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육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확보가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교사의 활용, 자원봉사의 활용 및 시설과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역시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 5. 보육시설 운영

농어촌은 아동의 밀도가 희박하여 소규모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 기준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 각종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가. 정원 및 교사대 아동 비율

현재 영유아보육사업 안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편성 원칙을 보면, 첫째, 보육시설은 총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sup>38)</sup>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 또는 유아만을 구분하여 보육할 수 있으나, 21인 이상 시설은 3세 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별 정원은 0세반 이외는 유동아동수를 감안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세반의 경우, 기준보육아동은 7명이지만 두 달 동안은 8명을 보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의 연령 분포 특성 때문에 각 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다. 보육 시설장들은 31.7%가 정원 미충족 이유로 아동 반별 정원 맞추기 등 시설의 사정을 어려움으로 들었다. 그러므로 농어촌에 한하여 아동 연령별 구분 반 정원보다는 총 정원의 개념으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원을 초과하는 범위도 1인 초과 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탄력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21인 이상 시설도 경우에 따라서 유아만을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나. 혼합반 운영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혼합반 운영시 연령 기준<sup>39)</sup>과 교사대 아동수 기준을

38) 정원은 2005. 1. 30. 이후 인가된 시설은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이 동일하므로 보육시설 인가증에는 총 정원만 표기하고 반별 정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영아와 유아의 면적기준이 상이(2세이하 : 2.64m<sup>2</sup>, 3세이상 : 1.98m<sup>2</sup>)하여 보육시설 신고증에 총정원 외에 반별 정원을 별도 표기(2세미만 : 00명, 2세 : 00명, 3세이상 : 00명)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기존 시설의 반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면적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함. 총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신규인가 시설 요건에 맞춰야 함.

준수하여야 한다. 영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혼합반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반과 유아(방과후 포함)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아동수의 제한 등 특수성은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혼합반 구성을 보다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 평가인증

농어촌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는 시설이 다수이다. 조사된 보육시설 중 25.0%는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1%, 34.2%로 높았고,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도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9~10%가 되었다.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도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8.8%가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 프로그램 등 평가인증을 위한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평가인증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대응하기 힘든 기준을 밝히려는 질문에 대해 내부환경 기준을 43.9%로 제일 많은 시설이 지적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이 어렵다고 답한 시설이 13.7%였고, 교사 등 인력 자격 7.6%, 프로그램 운영 7.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현재 평가인증 기준이 도시 보육시설에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열악한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실내 내부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화되는 시점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는 농어촌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는데, 정부 지원은 두 가지로, 한편에서는 별도의 조력팀을 구성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을 방문 조력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경우 농어촌 보육시설은 적용 시점을 몇 년 늦추어 도시와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시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라. 교사 자격

농어촌 보육시설에 무자격 교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의 질적

39)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아	1세와 2세아	0세와 2세아	영아와 유아	3세와 4세이상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 : 3	1 : 5	-	-	1 : 15

수준 제고와 상치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가 과제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조례를 통하여 해당 지역 보육시설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한적 교사를 두는 방안이다. 보육시설장 등 주변의 추천을 받아 일정 학력 이상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단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도 또는 군이 인정하는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로 인한 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보육교사 중 이러한 교사의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 6. 협력 및 지원체계

시설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촌거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처간,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 동일한 농어촌 아동을 대상으로 3개 부처가 각각 별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부처간의 상호 협력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육행정 인력이나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유치원은 물론 행정 관계자,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보건소 등 관련 기관들이 상호협조하여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 단위에 거의 모두 설치되어 아동의 접근성이 높은 초등학교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폐교의 활용 등은 주민 대부분이 희망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협력 부재로 실시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복합센터도 학교 공간을 이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학교가 단순하게 공간만 대여하지 않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아동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어촌에 유휴 건물을 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육과 유아교육 관계 부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보육도우미를 제안하였다. 가정보육도우미는 자격 기준이 기존 교사 자격에 미달되더라도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 해당지역에서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정하여 활용하자는 방안인데,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구가 있어야 한다. 제안한 복합센터나 인근 국공립보육시설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지원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육교사를 파견하여 지도하고, 이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회 지도하는 방안, 또는 일주일에 한번 대규모 보육시설이나 복합 센터를 아동과 함께 방문하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정보센터로부터 정보,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을 지원 받으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촌보육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을 이용한 놀이집단 등 정규 기준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농어촌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실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들을 참고하여야 한다.

〈표 VI-6-1〉 농어촌 보육정책 방향 개요

구분	과제	내용
접근성 제고	복합센터 설치	- 영유아 보육, 방과후 보육, 주민 상담 및 교육 기능을 하는 복합센터 - 또는 이외에 노인 주간보호 기능이 추가된 복합센터
	초등학교내 보육시설 설치	- 국공립시설 설치하여 영아보육 및 유아 유치원 시간외 보육 실시
	가정보육도우미 실시	- 지자체 법규로 해당 지역에 한정된 자격 부여 - 단기간 교육으로 자격 부여 - 보육시설에서 정보, 교재교구 등 지원 - 상시 불가능 하면 농번기에만이라도 실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 야간 및 시간제 보육 지원 - 장애아동 통합보육 가능하도록 개보수비 지원
	유치원 활용성 증대	- 운영시간, 차량 등이 주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차량 지원 및 안전관리	- 유류비 지원기준 상향 조정: 차량 1대 당 50만원 -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
비용 지원 확대	전액 지원 확대	- 우선 농어민 자녀 전액 지원하고, 점차 농어촌 거주자 전액 지원으로 확대
	방과후 비용 지원	- 방과후 교사 인건비 등 지원
	친인척·조부모 보호아동 지원	- 보육시설장 추천으로 무상 보육
	농번기 취약 보육 비용 지원	- 시간제, 야간보육
질적 수준 제고	환경개선	- 환경개선비 지원 - 보육과정을 활용하도록 보급
	프로그램	- 정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활동 실시토록 하고 비용 지원
	인력관리	- 근로기준법 준수 등 교사 근무여건 개선 - 농어촌 근무 수당 지급 - 교육기회 확충 및 대체교사 지원
탄력적 운영 허용	교사대 아동 비율	- 교사 1인당 아동수 탄력적 운영 허용
	혼합반	- 혼합반 탄력적 아동 구성 허용
	평가인증	- 조력팀의 방문 조력지원 및 환경개선비 지원 - 평가인증과 지원 연계 시점 차별 적용
협력 방안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집단의 협력으로 보육 지원 강화

주: ( )은 읍으로 전체에 포함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및 내부자료

## 7.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고려 지역(안)

보육시설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접근성이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이 없는 면에 모두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추가 공급하여 소수의 아동이라도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이 강조되는 정책 속에서 이러한 논의는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용의 효율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서비스 공급의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40)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는 1차적 기준은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의 접근성이다. 보육시설 미설치 면들이 2개 이상 인접해 있고, 이들 면 인접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된 읍면이 없거나 접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설치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인구수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아동수가 실제 거주 아동과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으므로 사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사용하여, 조건이 유사할 경우 아동수를 고려하여 상대적 우선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인근 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도 아동수가 일정수 이상이 되면 우선 검토 지역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VI-7-1>에 제시한 바와 같이 83개 시군구 140개 읍면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에 1개면, 인천시에 6개면을 제안하였다. 인천시 옹진군은 대부분이 섬지역으로 아동수가 적어도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는 강원도에 5개면, 충북에 11개면, 충남에 12개면에 조치가 요구되고, 전라도는 전라북도 19개면, 전라남도 30개면이고, 경상도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29개면, 27개면으로 모두 133개면을 우선 검토 지역으로 제안하였다.

<표 VI-7-1> 보육시설 미설치 및 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단위: 개, 명

구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시군구	읍면		시군구	읍면수
		읍면	아동		
총계	134	474(2)	35,753	83	140(1)
대구	1	1	179	1	1
인천	2	9	703	2	6
울산	1	2	161	-	-
경기	5	9	712	-	-
강원	10	24(1)	1,710	4	5
충북	8	35	2,251	7	11
충남	13	45	4,226	9	12
전북	13	65	4,605	11	19
전남	20	87(1)	7,200	17	30(1)
경북	24	107	7,651	18	29
경남	15	90	6,355	14	27

주: ( )은 읍으로 전체에 포함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및 내부자료

다음 <표 VI-7-2>는 각 군 단위별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여부를 검토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제시한 것이다.

40) 이는 각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제시된 검토 의견임을 밝혀 둠.

〈표 VI-7-2〉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b>대구광역시</b>				
달성군	- 하빈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가능하지만 아동수가 많아 1개소 설치	1	1	하빈면
<b>인천광역시</b>				
강화군	- 하점면, 내가면, 양사면, 송해면이 섬 북부 인접지역으로 2개소 설치 필요 - 화도면은 인근면의 시설 이용 - 서도면은 도서지역으로 별도 설치하되 아동 인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융통적인 운영이 요구	6	3	하점면 송해면 서도면
옹진군	-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각각 도서 지역으로 별도 시설 필요	3	3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b>울산광역시</b>				
울주군	- 두서면, 삼동면 2개 면이 인접 지역은 아님. 인근 면의 시설 이용	2	0	-
<b>경기도</b>				
안성시	- 서운면, 고삼면 2개 면이 인접 지역은 아님. 인근 면의 시설 이용	2	0	-
양평군	- 단월면, 청운면이 인접 지역이나 인근 면의 시설 이용 가능	2	0	-
연천군	- 미산면, 중면, 장남면 3개 면이 인접지역은 아님. 인근면의 시설 이용	3	0	-
파주시	- 군내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1	0	-
광주시	- 중부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1	0	-
<b>강원도</b>				
춘천시	- 남면, 북산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2	0	-
삼척시	- 하장면, 미로면에 1개소 설치 - 가곡면, 노곡면. 신기면은 도계읍 시설 이용 가능	5	1	미로면
홍천군	- 두촌면, 내촌면 두 지역 인접지역에 1개소 설치 - 서면은 인근 면 이용	3	1	내촌면
영월군	- 상동읍과 하동면에 1개소 설치 - 수주면은 평창군의 보육시설 부재면인 방림면과의 협의 하에 설치 검토 필요 - 북면, 남면은 영월읍 시설 이용	5	2	하동면 수주면
평창군	-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이 각각 인접 면에 보육시설 있음	3	0	-
양양군	- 서면과 현북면에 1개소 설치	2	1	현북면
강릉시	- 왕산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1	0	-
철원군	- 근남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1	0	-
화천군	- 하남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1	0	-
정선군	- 동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1	0	-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b>충청북도</b>				
충주시	- 살미면, 노은면, 소태면은 인근 면의 시설 이용. 다만 살미면은 제천시의 한수면, 청풍면과의 인접성 고려하여 제천시와의 협의 하에 1개소 설치 고려 가능	3	0	-
제천시	- 청풍면, 한수면이 인접지역. 충주시의 살미면과의 인접성 고려하여 세 지역의 중간 지점인 청풍면에 1개소 설치	2	1	한수면
보은군	- 11개 읍면 중 9개 읍면(내속리면, 외속리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이 보육시설이 없어 보은읍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동북·서남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 고려	9	2	내속리면 수한면
옥천군	- 군북면, 군서면은 옥천읍 시설 이용 가능 -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동이면은 미설치 지역 밀집으로 4면 중 2개소에 우선 설치	6	2	안남면 청성면
영동군	- 양산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 용화면, 상촌면, 매곡면은 인접 지역으로 중간 지점인 상촌면에 1개소 설치	4	1	상촌면
괴산군	- 소수면은 괴산읍 시설 이용. - 감물면과 장연면에 1개소, 문광면과 칠성면에 1개소 설치	5	2	장연면 칠성면
음성군	- 원남면, 맹동면 두면 중 1개소 설치 - 원남면이 괴산군의 보육시설 부재인 면인 소수면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남면에 설치.	2	1	원남면
단양군	- 단성면, 적성면에 1개소 설치. - 가곡면, 어상천면에 1개소 설치	4	2	어상천면 단성면
<b>충청남도</b>				
공주시	- 이인면, 사곡면 주변 면에 보육시설 있음	2	0	-
보령시	- 주산면, 미산면 중 1개소 설치 - 오천면은 인근시설 활용 가능 - 남포면은 동 지역 인근에 위치	4	1	주산면
논산시	- 부적면과 가야곡면 중에 1개소 설치 - 벌곡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3	1	부적면
금산군	- 부리면, 제원면, 군북면 중 1개소 설치 - 남일면과 남이면 중 1개소에 설치 - 금성면은 읍 인근면 시설 이용	6	2	제원면 남일면
부여군	- 내산면, 구룡면 중에 1개소에 우선 설치 - 옥산면, 양화면, 초촌면은 각각 동, 서, 남쪽 끝에 분산 위치하여 추후 검토	5	1	구룡면
서천군	- 읍 동쪽에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의 5개면이 밀집되어 있어 2개소를 우선 설치 - 종천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6	2	마산면 화양면
청양군	- 운곡면, 대치면, 장평면, 남양면에 1개소 설치. - 목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5	1	대치면
홍성군	- 장곡면, 은하면, 서부면. 광천읍 등 인근 면 시설 이용	3	0	-
예산군	- 광시면, 대흥면 중 1개소에 우선 설치 - 봉산면은 예산읍에 인접	3	1	광시면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태안군	- 남면과 근흥면은 읍 인접 면이나 지형이 길어서 접근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1개소 설치 검토 - 이원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3	2	남면 근흥면
당진군	- 대호지면과 정미면에 1개소 설치 - 면천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3	1	정미면
천안시	- 동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1	0	-
연기군	- 전동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1	0	-
<b>전라북도</b>				
군산시	- 옥산면, 나포면, 인근 면 시설 이용	2	0	-
익산시	- 웅포면과 성당면 중 1개소, 낭산면, 망성면, 용동면 중 1개소에 우선 설치함. 낭산면에는 농공단지 있음	5	2	성당면 낭산면
정읍시	- 소성면과 산내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중 1개소 설치	5	1	덕천면
남원시	- 주천면, 수지면은 인접 지역이나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 대강면도 인근 면 시설 이용하거나 순창군의 인접 보육시설 부재 면과의 협의 하에 보육시설 설치 고려. -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에 1개소 설치	6	1	보절면
김제시	-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에 1개소 - 봉남면과 황산면에 1개소 - 광활면과 진봉면에 1개소 설치 검토 - 부량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8	3	백산면 봉남면 진봉면
완주군	- 비봉면, 경천면 인근면 시설 이용 - 백운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2	0	-
진안군	-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천면, 정천면, 주천면이 모두 인접 지역. 6개 면에 최소1개 보육시설 설치	7	1	안천면
무주군	- 적상면과 부남면 중 1개소에 설치 - 무풍면은 인근 지역 시설 이용	3	1	적상면
장수군	- 천천면과 계남면에 1개소 설치 검토 - 계북면은 인근 지역 이용	3	1	천천면
임실군	- 청웅면, 운암면, 강진면 중 1개소 - 신평면, 신덕면 중 1개소 - 성수면과 지사면에 1개소 - 삼계면과 덕치면 중 1개소 설치	9	3	운암면 신덕면 덕치면
순창군	- 적성면과 구림면은 읍으로부터 접근성 낮아 1개소 설치 - 인계면, 유등면 적성면 중 1개소에 설치 - 금과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하고 추후 검토	5	2	구림면 적성면
고창군	- 성내면과 신림면 중 1개소 - 부안면에 각 설치 검토 - 성송면은 인근 지역 이용	4	2	신림면 부안면
부안군	- 주산면, 보안면, 상서면 중 1개소에 설치 - 동진과 행안면은 읍 인접지역으로 추후 검토 - 위도면에 별도 설치	6	2	주산면 위도면
<b>전라남도</b>				
여수시	- 남면, 화정면, 삼산면은 모두 도서 지역으로 각각 별도 설치	3	3	남면 화정면 삼산면
순천시	- 승주읍, 송광면, 상사면, 월등면이 모두 인접지역으로 1개	4	1	승주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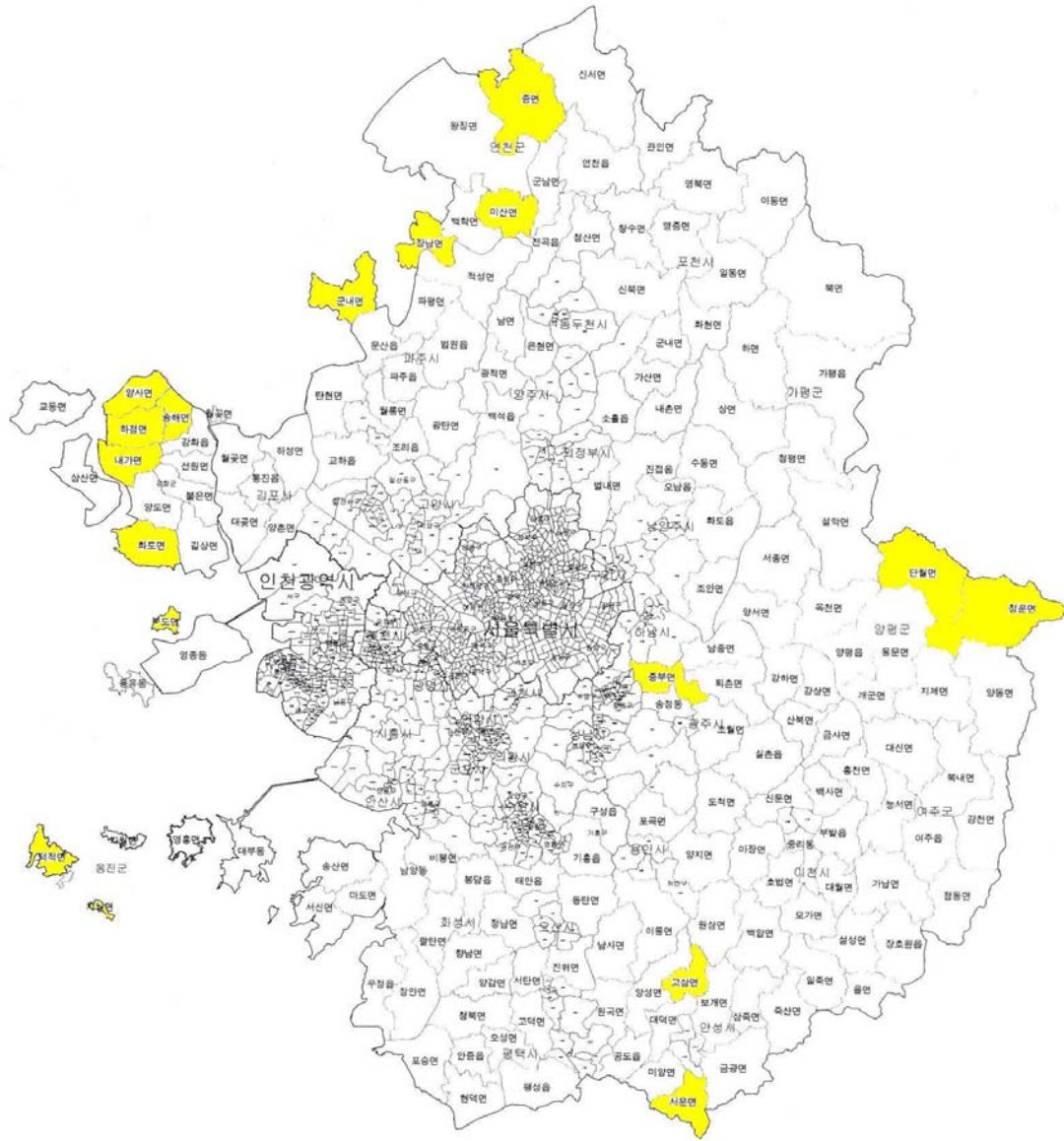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소 설치			
나주시	- 문평면, 산포면, 다도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3	0	-
광양시	- 진상면, 다압면에 1개소 설치	2	1	진상면
담양군	- 봉산면, 고서면, 대덕면, 무정면은 인접 지역이면서 아동 인구가 상당수이므로 최소 1개소 설치. - 금성면, 용면, 월산면은 담양읍 시설 이용 - 남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8	1	봉산면
곡성군	- 오곡면, 죽곡면, 목사동면, 고달면에 1개소 설치 - 검면, 오산면, 삼기면에 1개소 설치	7	2	오곡면 오산면
구례군	-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에 1개소 설치 - 광의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4	1	간전면
고흥군	- 포두면, 접암면, 영남면에 1개소 설치 - 남양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 동일면은 접근성 낮으므로 별도 설치	5	2	포두면 동일면
화순군	-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에 1개소 설치 - 이서면, 북면, 동북면, 남면에 1개소 설치	10	2	춘양면 동북면
보성군	- 읍 북부 및 북동부 5개 면에 미설치됨. - 노동면, 미력면, 검백면 중 1개소 - 울어면과 문덕면 중에 1개소 - 웅치면은 읍에 인접함.	6	2	미력면 문덕면
장흥군	- 장동면, 부산면, 유치면에 우선 1개소 설치 - 안양면은 읍 등에 인접.	4	1	부산면
강진군	- 마량면과 대구면에 1개소 설치 - 음천면과 작천면에 1개소 설치 - 신전면은 인근면 시설 이용	5	2	마량면 음천면
해남군	- 읍에서 멀리 떨어진 현산면과 계곡면에 우선 설치 검토 - 삼산면, 옥천면, 마산면은 추후 검토	5	2	현산면 계곡면
영암군	- 금서면과 서호면 모두 인근지역 시설 이용	2	0	-
무안군	- 몽탄면.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1	0	-
영광군	-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은 영광읍 시설 이용 가능 하나, 장성군의 삼서면이 보육시설 부재 면임을 감안할 때 1개소 설치 검토 - 낙월면은 도서로 별도 조치	5	2	묘량면 낙월면
장성군	- 서삼면에 우선 설치 검토 - 삼서면, 북일면, 북하면, 진원면은 읍 주변에 위치하여 추 후 검토	5	1	서삼면
완도군	-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은 모두 섬으로 각각 설치 검토	3	3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신안군	- 자은면, 하의면, 팔금면 모두 섬으로 각각 설치 검토	3	3	자은면 하의면 팔금면
진도군	- 군내면은 진도읍이나 인근면 시설 이용 - 조도면은 도서로 별도 설치 검토	2	1	조도면
<b>경상북도</b>				
포항시	- 북구 신광면, 기북면, 죽장면이 서로 인접함. 1개소 설치 요망	3	1	신광면
경주시	- 산내면, 서면은 시 외곽지역로 건친읍에 인접	2	0	-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김천시	- 부재 면 7개가 모두 지례면을 둘러싸고 있어 지례면의 시설 이용가능하나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 설치 요망 - 농소면, 감천면, 조마면의 3개면이 인접하여 이 지역에 1개소 설치 - 구성면과 부항면에 1개소 설치 - 대덕면과 증산면에 1개소 설치	7	3	감천면 부항면 증산면
안동시	- 일직면, 남후면, 도산면이 인접하여 이 지역에 1개소 설치 - 와룡면과 남선면에 1개소 설치	5	2	일직면 와룡면
구미시	- 무을면과 옥성면이 인접해 있으나 선산읍이나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2	0	-
영주시	- 평은면과 문수면, 안정면과 봉현면이 각각 인접해 있으나 인근 면·동 시설 이용 가능	4	0	-
영천시	- 부재 면들이 모두 동과 읍을 둘러싸고 있어 인근 시설 이용 가능하나 아동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 설치 필요 - 북부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의 3개 면 인접해 있어 1개소 설치 - 동쪽 임고면과 고경면에 1개소 - 남부 북안면과 대창면에 1개소	7	3	화남면 고경면 대창면
상주시	- 중동면과 낙동면 인접해 있어 1개소 설치 요망. 이 지역은 의성군과 구미시의 부재 면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함 -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의 3개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음. 다른 면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내서면과 외남면, 공성면의 경계 지점에 설치 - 화북면과 화남면, 은척면과 외서면은 각각 인접해 있으나 인근 면 시설 이용 - 사벌면은 인근 동 시설 이용	10	2	낙동면 내서면
문경시	- 영순면, 산양면, 동로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3	0	-
경산시	- 용성면과 남산면이 인접해 있고 인근 동 시설 이용 가능하나 아동수가 상당수임을 감안하여 1개소 설치	2	1	남산면
군위군	- 1읍 7면 중 6개면에 시설 미 설치 - 효령면과 우보면에 1개소 설치 - 부계면과 산성면에 1개소 설치 - 고로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 소보면은 군위읍 시설 이용 가능	6	2	효령면 부계면
의성군	- 단촌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은 의성읍 또는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에 1개소 -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은 안계면 시설 이용 가능	12	1	구천면
청송군	- 부동면과 부남면 중 1개소	2	1	부남면
영양군	-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은 영양읍 시설 이용 가능 - 석보면도 영양읍과 인접해 있으나 영덕군의 보육시설 부재 면들과도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개소 설치	4	1	석보면
영덕군	- 남정면과 달산면 중 1개소 설치 - 병곡면과 창수면 중 1개소 설치 - 지품면은 인접 면 시설 이용	5	2	달산면 병곡면
청도군	- 각남면, 각북면, 운문면, 매전면 4개 면이 서로 떨어져 있어 인근에 접근 가능하지만 1개소 정도는 별도 설치 추진.	4	1	운문면
고령군	- 덕곡면과 운수면은 고령읍 또는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4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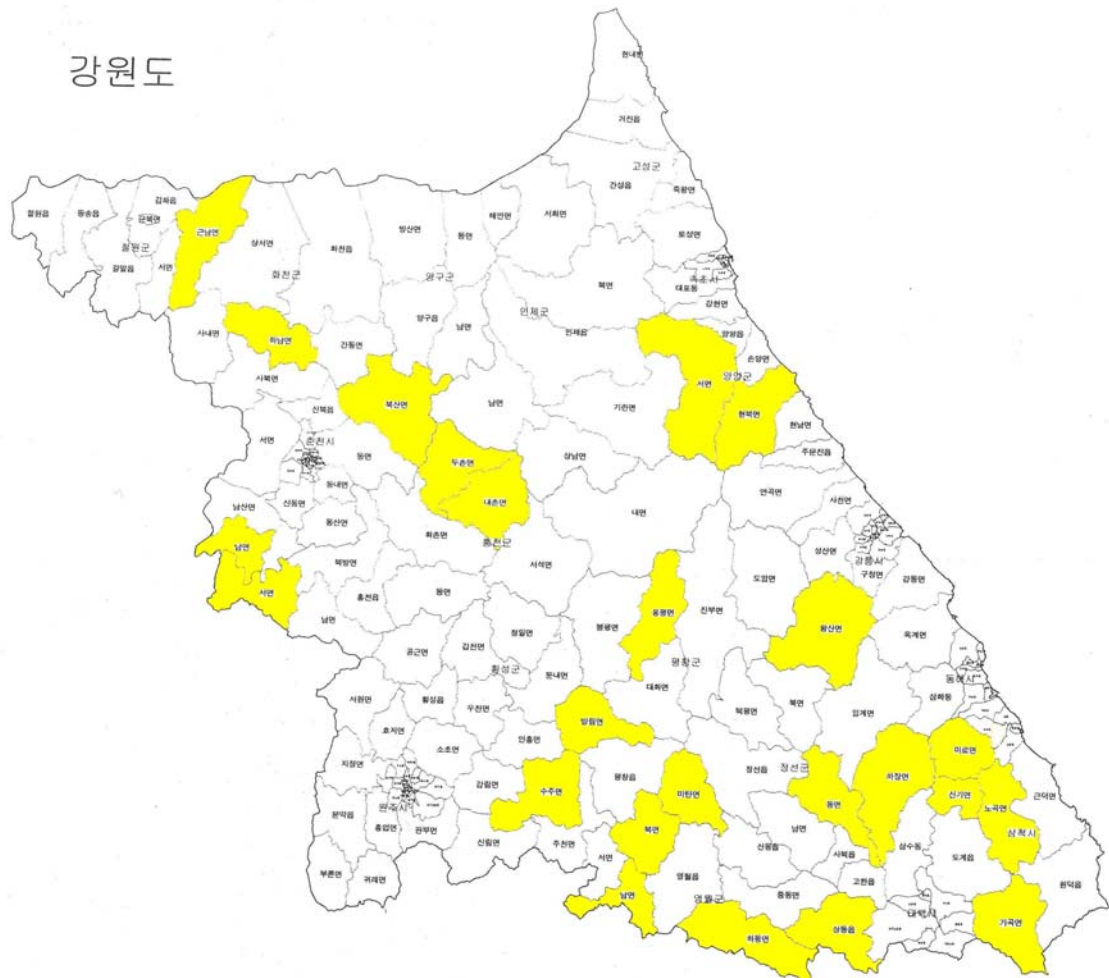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성주군	- 개진면, 우곡면은 고령읍 또는 대구광역시 시설 이용 가능 - 금수면, 대가면은 인근 시설 이용 가능하나 아동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최소 1개소 설치	2	1	대가면
칠곡군	- 기산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1	0	-
예천군	- 1읍 11면 중 10개면이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으로서 예천읍을 둘러싸고 있음. - 상리면과 하리면, 용문면, 감천면 중 1개소 - 유천면, 개포면 중 1개소 - 지보면, 풍양면에 1개소 - 호명면, 보문면은 예천읍 또는 풍산읍 시설 이용 가능	10	3	하리면 유천면 풍양면
봉화군	- 법전면, 상운면, 명호면의 3개 면 중 1개소 - 소천면과 재산면 중 1개소 설치 - 물야면은 인근 읍면 시설 이용	6	2	명호면 소천면
울진군	- 서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이 서로 인접하고 있음. 근남면과 기성면에 설치를 우선 검토	4	2	근남면 기성면
울릉군	- 서면과 북면에 1개소 설치 검토	2	1	북면
<b>경상남도</b>				
진주시	- 진성면과 사봉면 중 1개소 설치 검토 필요 - 내동면은 동과 인접	3	1	진성면
통영시	- 산양읍은 인근 동 시설 이용, 도산면은 고성읍 또는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 옥지면과 한산면은 도서지역으로 별도 조치	4	2	옥지면 한산면
사천시	- 축동면은 사천읍 또는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 - 곤명면도 인근 면 시설 이용 가능하나 아동수와 하동군의 부재시설 면들이 연속적으로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개소 설치	2	1	곤명면
밀양시	- 상동면, 산외면이 시 인접지역이지만 접근성 낮아 1개소 설치 - 청도면은 인접 면 사설 이용	3	1	산외면
거제시	- 동부면은 신현읍 이용 가능하나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부면이 읍과의 접근성 낮음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1개소 설치 - 둔덕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 - 하창면, 장목면은 인근 면 동 시설 이용 가능하나 장목면이 남북으로 길고 두 지역의 아동수를 고려할 때 1개소 설치	5	2	동부면 장목면
양산시	- 원동면은 인근 읍 또는 면 시설 이용	1	0	-
의령군	- 1읍 12면에 10개면이 미설치 면이고, 읍이 의령군 남쪽에 위치 - 동쪽으로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중 1개소 - 북쪽으로 봉수면, 공류면, 유곡면, 정곡면 중 2개소에 우선 설치 검토함. - 화정면과 지정면, 낙서면은 인근 읍이 설치 지역임.	10	3	칠곡면 공류면 정곡면
함안군	- 함안면, 법수면, 여항면은 모두 읍 인접 지역으로 읍 시설 이용 가능	3	0	-
창녕군	- 북서쪽에 고암면과 성산면은 읍 인접 지역이나 밀양시의 부재면인 청도면과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1개소	9	3	고암면 이방면 도천면

시·군·구	검토결과	수	우선 지역 수	우선 검토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동쪽에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중 1개소</li> <li>- 남쪽에 도천면, 길곡면 중 1개소에 우선 설치를 검토함.</li> <li>- 계성면, 장마면은 읍 남쪽에 인접함.</li> </ul>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읍 13개면 중 9개면이 미설치 면임.</li> <li>- 하일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에 1개소</li> <li>-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에 1개소</li> <li>- 동해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li> <li>- 삼산면은 고성 읍 시설 이용</li> </ul>	9	2	상리면 마암면
남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li> <li>- 서면, 고현면, 설천면은 남해읍에 인접해 있으나 아동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1개소 설치</li> </ul>	4	1	고현면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면, 양보면, 북천면이 인접해 있으므로 3개 면 중 1개소에 우선 설치</li> <li>- 청암면은 북쪽에 따로 위치하여 인근 면 시설 이용</li> </ul>	4	1	양보면
산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미설치 면이 산청읍을 둘러싸고 있어 산청읍 시설 이용 가능하나, 아동수가 많은 면 3개에 보육시설 설치하여 접근성을 좀 더 높이도록 함</li> <li>- 동쪽에 금서면, 서쪽에 신등면, 남쪽에 단성면에 각각 1개소씩 설치</li> <li>- 생초면, 오부면, 차황면, 생비량면, 삼장면은 인근 시설 이용</li> </ul>	8	3	금서면 신등면 단성면
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전면, 병곡면, 지곡면은 함양읍과 인접해 있으나 서상면, 서하면의 경우 접근성 떨어지므로 중간 지점에 보육시설 1개소 설치 필요</li> <li>- 휴천면, 유림면은 함양읍 시설 이용 가능</li> </ul>	7	1	서하면
거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쪽 북상면, 고제면, 웅양면, 가북면이 보육시설 설치 면과 인접해 있기는 하나 북서쪽으로는 경상북도 김천시의 대덕면과 증산면, 북동쪽으로는 전라북도 무주군의 무풍면이 모두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4개면 중 2개소 설치</li> <li>- 읍 남쪽에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3개면 중 1개소 설치.</li> <li>- 마리면은 거창읍 인접지역임.</li> </ul>	8	3	북상면 웅양면 남상면
합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묘산면은 합천읍, 쌍백면은 인근 면 시설 이용</li> <li>- 서쪽 인접 지역인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에 1개소 설치</li> <li>- 동쪽 인접 지역인 울곡면, 쌍채면, 적중면, 덕곡면, 청덕면에 2개소 설치</li> </ul>	10	3	용주면 울곡면 적중면
계		474	140	139

#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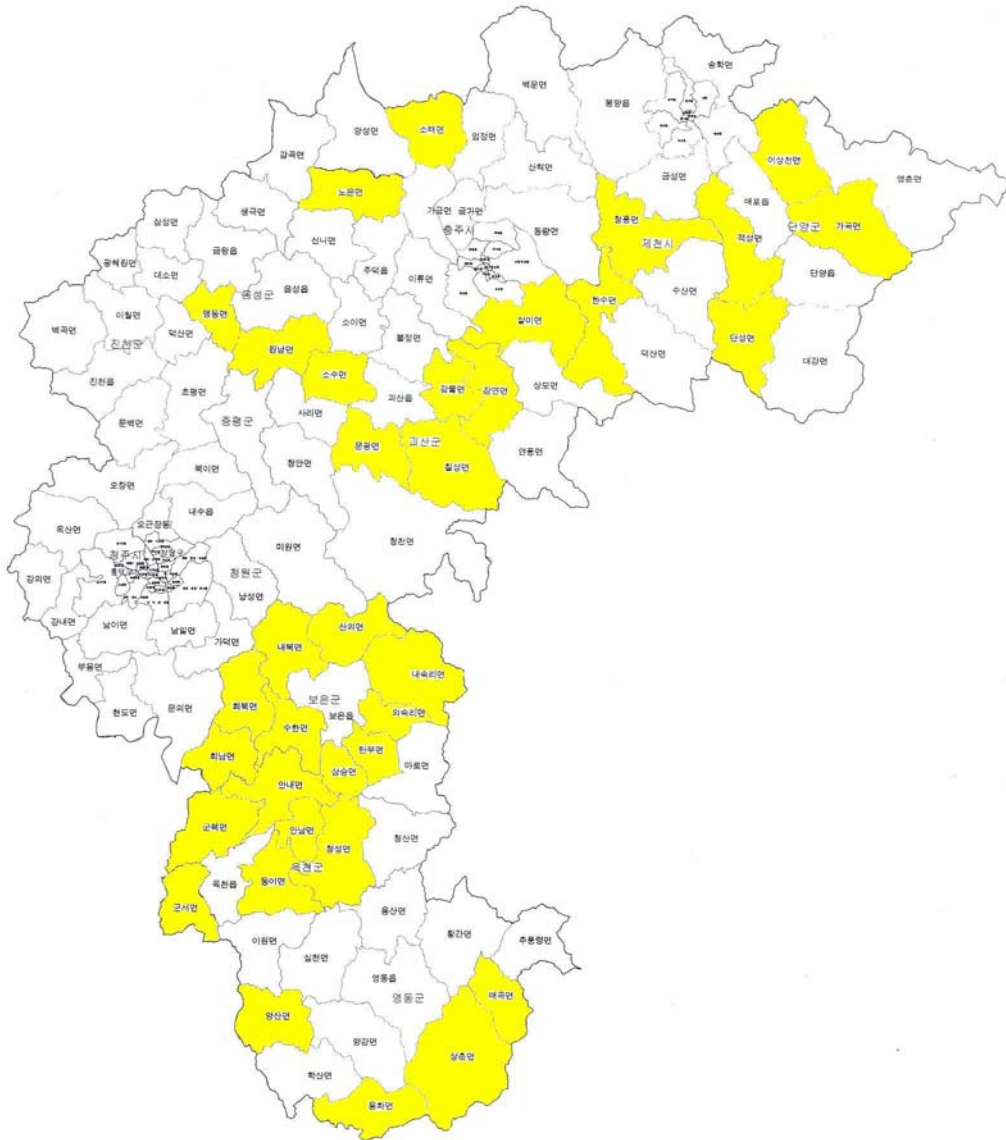


〈그림 VI-7-1〉 경기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그림 VI-7-2〉 강원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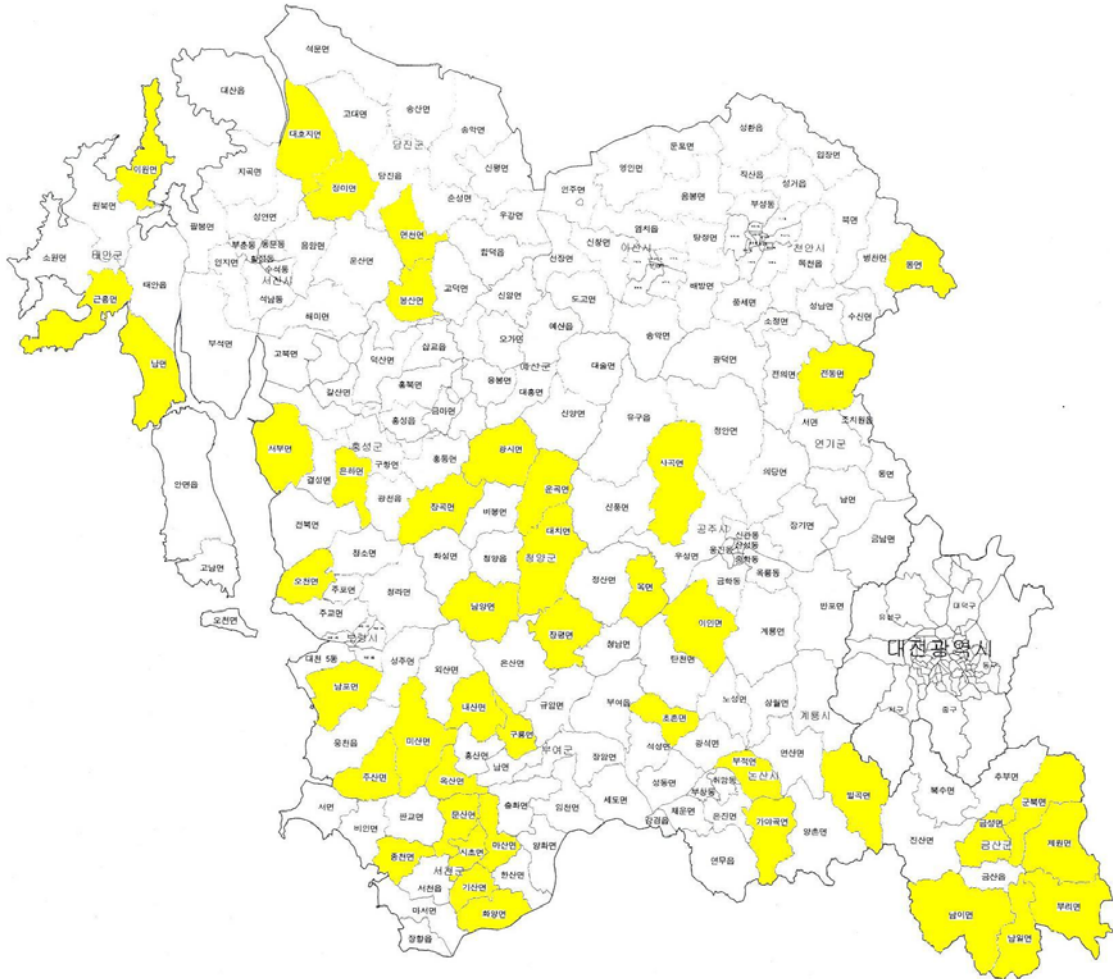
### 충청북도



〈그림 VI-7-3〉 충청북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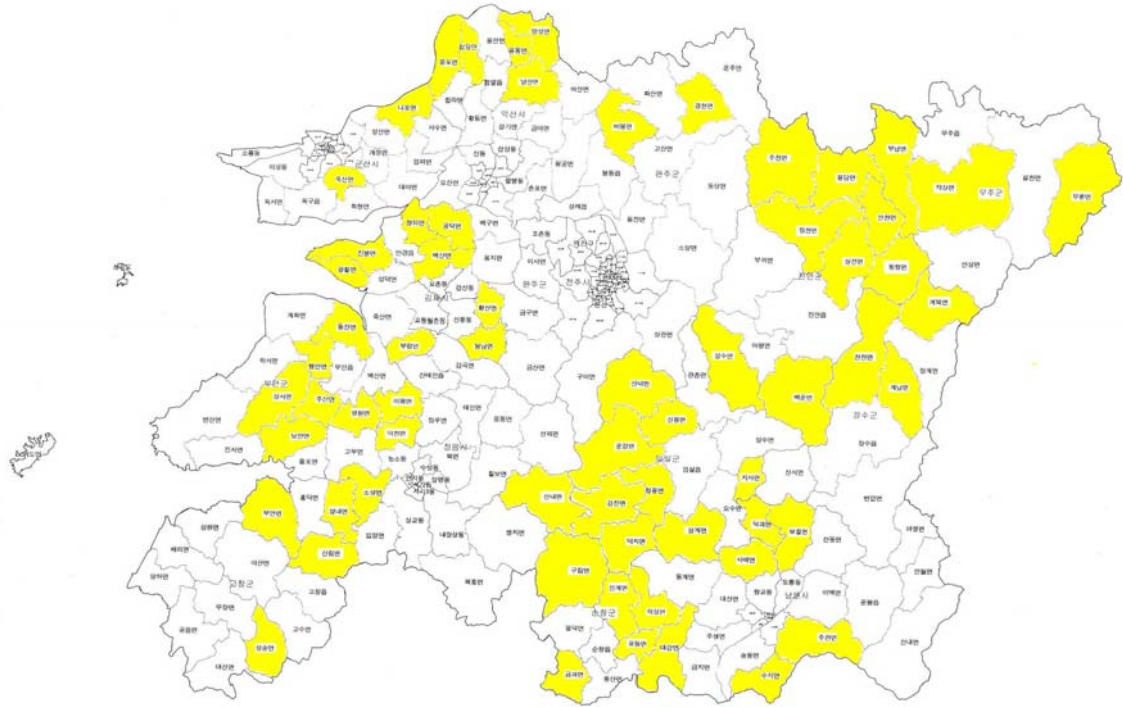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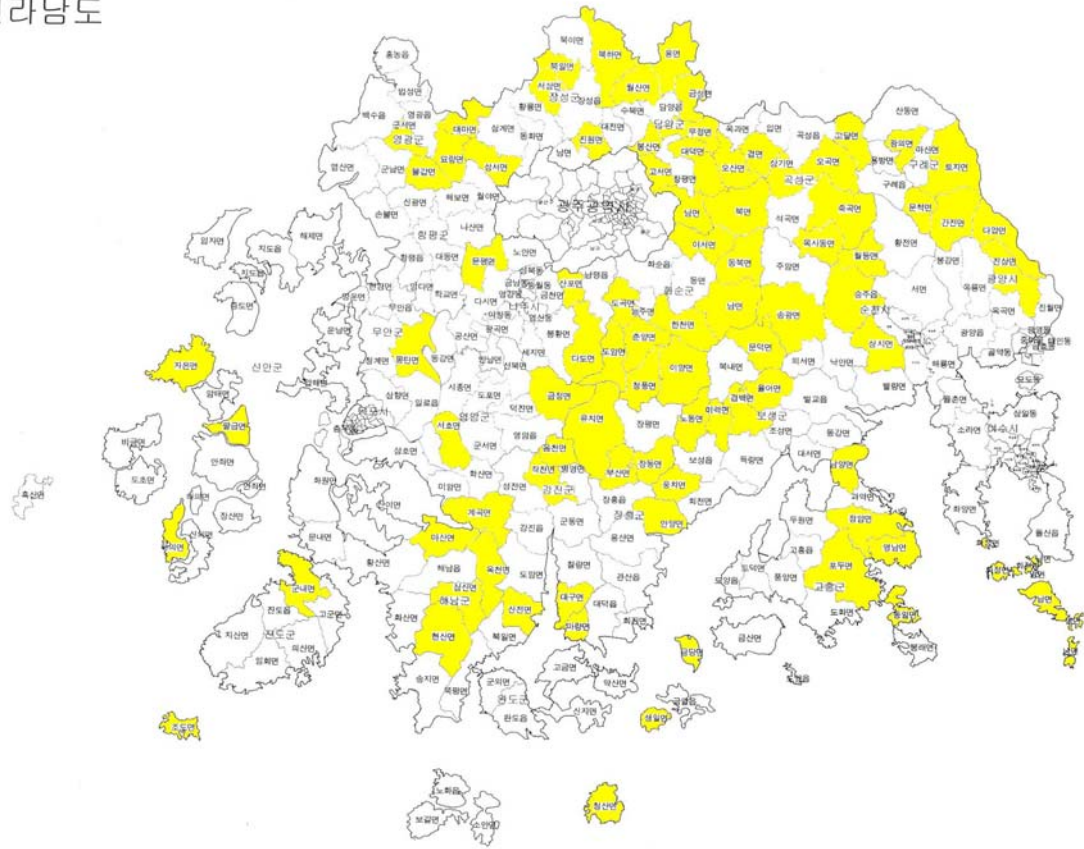
<그림 VI-7-4> 충청남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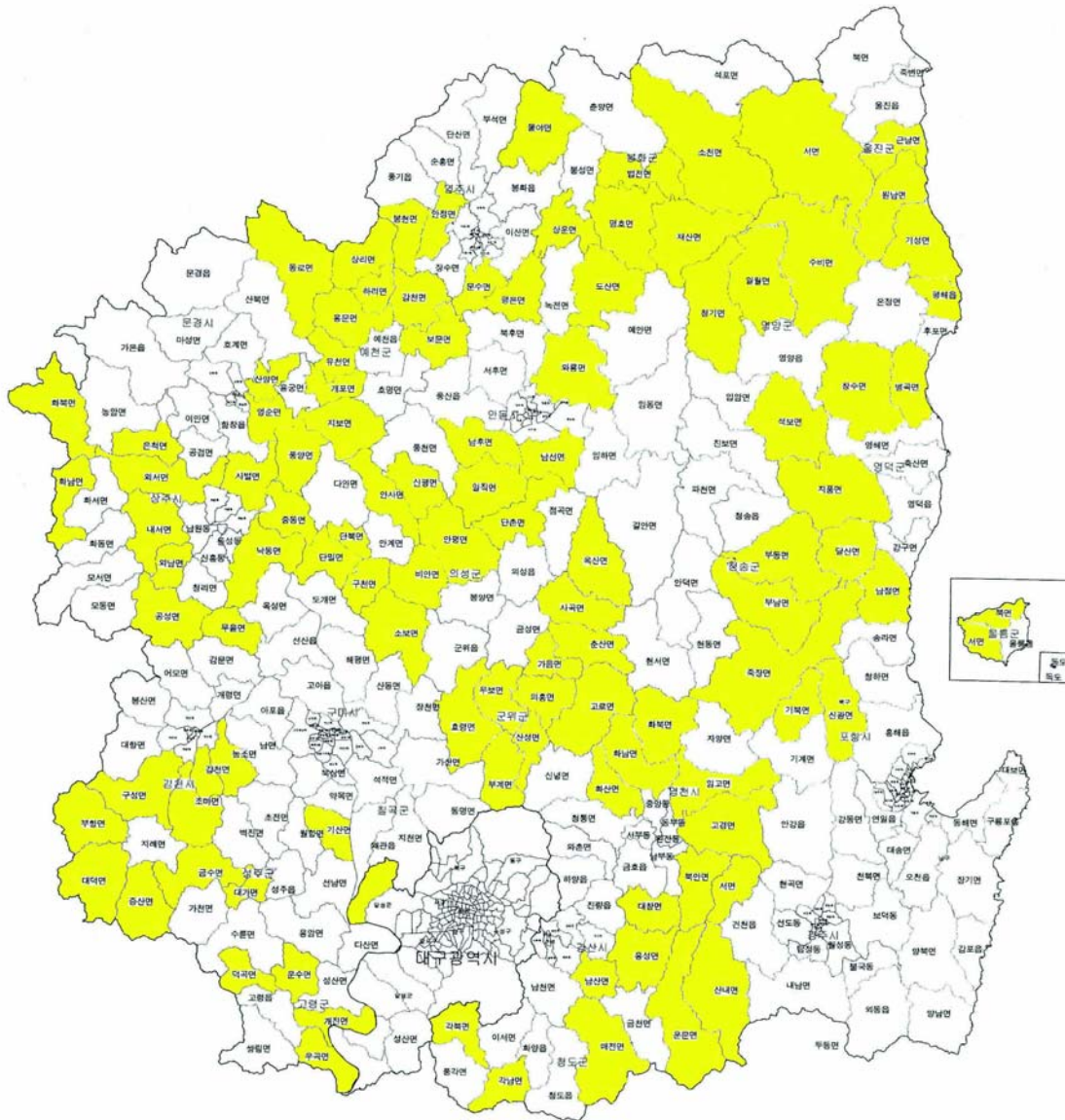
〈그림 VI-7-5〉 전라북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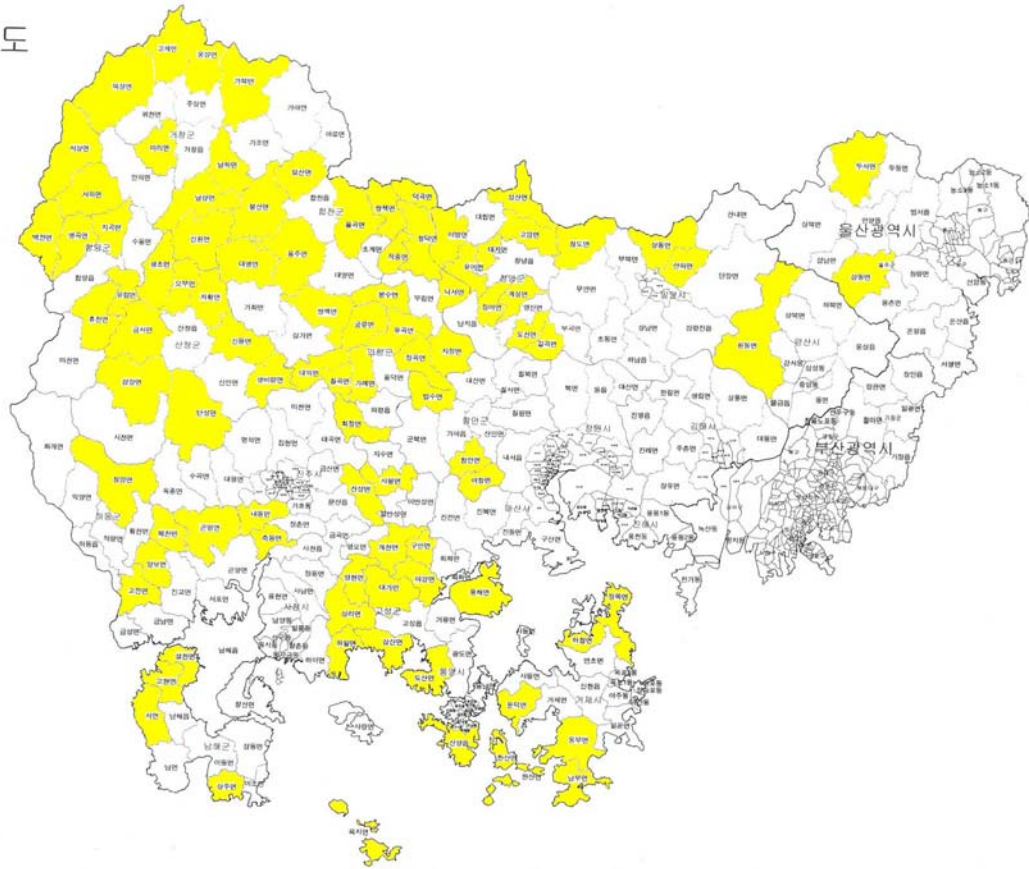
<그림 VI-7-6> 전라남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경상북도



<그림 VI-7-7> 경상북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경상남도



<그림 VI-7-8> 경상남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VII. 맺는 말

이 연구는 농림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과 보육 관련 제도 및 지원 현황 및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검토하고, 가구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및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 및 농어촌 아동의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방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서비스 공급의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보육시설은 도시보다 교류와 접근성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으며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수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의 보육시설과는 차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 과제가 접근성이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7%가 편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다닌다. 따라서 보육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 설치하는 보육 단독 가능보다는 복지나 교육 기능도 함께 하는 복합센터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 단위 병설유치원의 활성화나 초등학교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복합센터를 학교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보육과 유아교육 관계부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육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도시와는 다른 요구들이 존재한다. 보육시설의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원 방안, 농어촌 아동의 제한된 기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보육관련 제 규정의 탄력적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보육서비스 공급 검토가 필요한 면 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지리적으로 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들 지역에 보육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려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또한 면 단위 병설유치원 이용 실태가 어떠한 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지역 통계자료와 지역 수요에 근거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 유치원 현황□□.
- 김경희·박분희·양미경(2000).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 농림부.
-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2002), 한국의 인구. 통계청.
- 김영옥 외(1997). 농어촌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농림부(2006).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부 여성정책과(2006). 여성농업인 정책 2005년 추진내용 및 2006년 시행계획.
- 농림부(2004). 농정에 관한 연차 보고서.
-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2006). 경북도청.
- 박대식·정기환·최경환 외(2001).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정명채·송미령 외(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2005).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백화중 외(2003). WTO체제하의 농어촌 복지수요와 대응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서문희 외(2004). 농어촌 보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외(2004). 농어촌 보육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육사회연구원.
- 서문희 외(2006).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 \_\_\_\_\_. 보육사업안내. 각 연도.
-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플랜.
- 오내원·서진교,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2.9.
- 이미화 외(2004). 2004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이숙희·서영숙·김미숙(2001). 인터넷을 이용한 농촌 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 정명채·최경환·허장(1991). 농어촌 복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영숙(1991). 농촌의 취약전 자녀양육환경실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학 17(3).
- 조홍식·김태성·남기철(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조홍식·남기철·장영진(200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및 운영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성애 외(1999). 농촌보육사업의 실태와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8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지성애(1997). 농어촌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제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지성애 외(2003). 농어촌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지성애·박희숙(2000). 도시와 농어촌의 보육 만족도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지성애·김영옥·홍혜경(1998). 농어촌 보육시설의 안전점검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5집.
-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연보.
- 홍혜경·지성애·김영옥(1997). 농어촌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현황. 1997년추계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발표논문집. pp53-75, 1997.
- Commonwealth Dep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0). Planning to Succeed in Child Care.
- Bruner, J.,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Eyestoe, Rovert,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 Graue, E. M., & Walsh, D. J.,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Thousand Oaks, CA: SAGE, 1998.
- Kozulin, A. Vygotsky's psychology: A biography of idea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Pianta, R. P. & Walsh, D. J., High risk children in schools: Constructing sustaining relationships, New York: Routledge, 1996.
- 경북도청 신문.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2003. 11. 20).
- 서울신문. '경기도, 농촌 지역에 종합복지센터 건립' (2007. 10. 6).
- 경상남도 의성군청 홈페이지 [www.uiseong.go.kr](http://www.uiseong.go.kr)
- 전라남도 화순군청 홈페이지 [www.hwasun.go.kr](http://www.hwasun.go.kr)



# 부 록

---

부록 I. 농어촌 보육시설 조사표

부록 II.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표

부록 III.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표

## 부록 I.

시·도 번호		군 번호		읍·면 번호		일련번호	

(읍: 1, 면: 2)

## 농어촌 보육시설 조사표

## 1. 전화 설문조사 협조 요청

본 설문지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제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농어촌 보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자료로서만 활용되고 개별적 사항의 비밀은 반드시 유지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어린이집 이름, 주소, 원장 이름, 연락처, 어린이집 설립년도 확인

시설명		시설 설치일	( )년 ( )월
시설주소	( )시·도 ( )군 ( )읍·면		
원장명			
전화번호	(DDD: ) -	Fax번호	(DDD: ) -
조사담당자		조사표 작성일	2006년 ( )월 ( )일

## I. 어린이집 일반 현황

## 1. 00어린이집은 어떤 유형의 보육시설입니까? (예를 들어 읽어줌)

-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민간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보육시설       6) 부모협동보육시설

## 2. 00어린이집의 건물은 어떤 형태입니까? (예 제시)

- 1) 보육시설로 건축한 단독시설  
 2) 일반주택에 설치한 시설  
 3) 아파트에 설치한 시설  
 4) 상가에 설치한 시설  
 5) 타시설 부설(겸용) 시설  
 6) 기타(무엇: )

## 2-1. 부설인 경우, 어떤 건물(시설)에 부설되어 있습니까?

- 1) 종교시설       2) 공공기관  
 3) 사회복지관       4) 기타 사회복지시설  
 5) 교육시설(학교 등)       6) 의료시설(병원 등)  
 7) 일반사업장(기업)       8) 기타( )

## 3. 보육시설은 몇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1) 1층에만 위치       2) 1층과 2층 이상에 위치       3)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에만 위치  
 4) 기타 \_\_\_\_\_

## Ⅱ. 운영 관련 사항

4. 보육시설이 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 정원과 2006년 10월 30일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을 각 연령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아	유아	취학아동	총계
	소계	소계	방과후 아동	
보육 정원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보육 현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100% <input type="checkbox"/> ② 정원 미달 <input type="checkbox"/> ③ 정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① 100% <input type="checkbox"/> ② 정원 미달 <input type="checkbox"/> ③ 정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① 100% <input type="checkbox"/> ② 정원 미달 <input type="checkbox"/> ③ 정원 초과	_____명

4-1. 4번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다고 답하신 경우, 그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 1) 집에서 보육시설까지가 멀어서
- 2) 주변에 보육대상 아동이 적어서
- 3) 주변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이 많아서
- 4) 부모의 보육료가 부담 되어서
- 5) 특기교육 등 서비스 내용과 보육 환경이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 6) 집에 아동의 양육자가 있어 보육시설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함
- 7) 기타 \_\_\_\_\_

4-2. 4번 문항과 관련하여, 귀 시설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다음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이 있다면 몇 명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input type="checkbox"/> 1)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있음 → ( )명
2)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input type="checkbox"/> 1)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있음 → ( )명

5. 00어린이집에서는 아동 등·하원용 차량을 운영합니까? 운영한다면 차량수는 몇 대 입니까?  
(※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_\_\_\_\_대

5-1. 보육아동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1) 하루 중 아동 등·하원을 위하여 차량은 총 몇 km를 운행합니까?	km
2) 아동 등·하원을 위하여 몇 개 읍면을 운행합니까?	개
3)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아동 중 가장 오래 동안 차를 타는 아동은 어느 정도 차를 탑니까?	시간 분



12. 2006년 10월 현재 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미지원 아동 1인당 수납하는 월 보육료(기준이 되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구 분	종일반	반일반
1) 12개월미만	( )원	( )원
2) 12~24개월미만	( )원	( )원
3) 24~36개월 미만	( )원	( )원
4) 만3세 이상	( )원	( )원
5) 방과후 아동	( )원	

13. 2006년 10월 30일 현재 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 해당되는 아동이 없는 항목에는 괄호 안에 반드시 '0'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전액지원 아동수	일부지원 아동수	합계
1) 0~만4세 아동	( )명	( )명	( )명
2)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지원 아동			( )명
2) 만 5세아 무상보육대상아동			( )명
3) 무상보육 장애아동			( )명

14. 보육료 수납과 관련하여 귀 시설에 다음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2006년 10월 30일 현재 각각 몇 명입니까?

1) 보육료 장기 미납 아동(3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있음 → ( )명
2) 농어촌에 거주하나 부모의 직종이 농어업이 아니어서 (주소가 면 소재가 아니어서) 보육료 지원을 못받는 아동	<input type="checkbox"/> 1)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있음 → ( )명

15. 귀 00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 문	답변
1) 아동의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몇 명 정도입니까?	명
2) 아동의 양육자인 모(부재시 조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몇 명 정도입니까?	명
3) 조손가정 아동이 몇 명 정도입니까?	명

## 2006년도 농어촌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지역 번호			가구번호			아동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1-3			4-6			7-8		9-11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아파트·리	동·호·번지·호	통·반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아동성명		
방문횟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양호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양호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양호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전화번호 ( ) -

농 어 촌 보 육 아 정 책 개 발 센 터

**1. 조사대상 아동과 가구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미취학 아동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카드번호 12-13  
 01

- 이 자녀 (이름: )의 출생 연월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 )명
- 이 닥의 자녀수는 모두 몇 명이고, 이 자녀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자녀수 ( )명, ( )번째 자녀
- 이 자녀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부모와 함께       2) 편모와 함께       3) 편부와 함께  
 4)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5) 부모 없이 친인척과 함께     6) 기타( )

14-17  
 1   년   월

18-19  
 2

20-21  
 3  명  
 19  번째 자녀

22  
 4

**4-1. 부모와 함께 안 사는 경우 그 이유**  
 부 : ① 직장 때문에 별거 ② 기타 이유로 별거 ③ 이혼 및 사망 ④ 기타 ⑧ 비해당  
 모 : ① 직장 때문에 별거 ② 기타 이유로 별거 ③ 이혼 및 사망 ④ 기타 ⑧ 비해당

**4-2. 부모와 함께 안 사는 경우에 부모가 아이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보냄    ② 가끔 보냄    ③ 전혀 안 보냄    ⑧ 비해당

4-1  부  
 모

4-2

- 현재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                      ② 모                      ③ 아이의 형제자매      ④ 부의 형제자매  
 ⑤ 모의 형제자매      ⑥ 친조부모              ⑦ 외조부모              ⑧ 기타 친인척  
 ⑨ 비혈연
-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가                      ② 전세(질문 6-1로)      ③ 보증부 월세(질문 6-1로)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질문 6-1로)      ⑥ 기타(무엇:\_\_\_\_\_)  
 (질문 6-1로)

26  
 5

27  
 6

**6-1. (전세, 전·월세 및 월세인 경우) 가구원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⑧ 비해당

28  
 6-1

- 귀댁의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각종 정부 보조금, 친지·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006년 예상되는 연 소득을 추정 계산하여 12월로 나누어주십시오.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만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월 \_\_\_\_\_ 만원

29-31  
 7    만원

8.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귀댁의 재산(동산, 소유/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와 농축산물 등)은 얼마나 되는지요? (\* 재산 산정시 부채를 감안하여 계산하고, 0원 이하일 경우 0을 기입하십시오)

\_\_\_\_\_ 백만원

32-34

8  백만원

9. 귀댁은 현재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5

9

10. 귀댁은 농가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6

10

*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모
<p>11. 동 부모가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별거 상태인 경우에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01) 국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02) 전문가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사무 종사자                      05) 서비스 종사자                        06) 판매종사자                      07) 농, 임, 어업 숙련종사자        08) 기능 종사자                      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0) 단순노무 종사자                      11) 군인                                      12) 학생·재수생                      13) 주부(집안일, 가사)                14) 무직                      88) 비해당(부재)</p>		
<p>12. 아동의 부모는 학력은 어떻습니까? (* 부모가 별거 상태인 경우에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3년제 이하)                      4) 대학교(4년제 이상)    5) 대학원 이상                      8) 비해당, 모름</p>		

37-41  
11

부                                      모

42-43  
12

부                                      모

## II. 보육·교육 이용 경험

1. 아이가 어디 다닌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    ② 놀이방    ③ 유치원    ④ 선교원    ⑤ 학원(반일제 이상)  
 ⑥ 공부방    ⑦ 기타(    ) ⑧ 다닌 적 없음

44  
1

2.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한 것은 몇 개월 때부터입니까? (\*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은 비해당 88을 기입하십시오.)

(                                      )개월 때

45-46  
2  개월



3. 이 아이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③ 예체능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부모대신 적절하게 돌보기 위하여
- ⑤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⑥ 기타(                         )

47  
3

4. 이 아이가 전에 보육시설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4-1. 그때 다니던 보육시설을 중간에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시설을 중심으로 기입하십시오.)

01) 너무 멀어서                        02) 비용이 비싸서  
 03)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04) 원장 또는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05)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06) 시간이 안 맞아서  
 07)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다니려고  
 08)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로        09) 기타(                         )  
 88) 비해당(없다)

48  
4   
49-50  
4-1

5. 또한 이 아이가 전에 유치원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5-1. 그때 다니던 유치원을 중간에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4-1번 질문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유치원을 중심으로 기입하십시오.)

(                         )번

51  
5   
52-53  
5-1

### Ⅲ. 현재 보육·교육 이용

1. 현재 이 아이가 어디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③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 ④ 민간보육시설            ⑤ 가정보육시설            ⑥ 국공립유치원
  - ⑦ 사립유치원                ⑧ 선교원                  ⑨ 반일제 이상 학원
  - ⑩ 공부방                    ⑪ 일반 학원               ⑫ 기타(                     )
- 88) 아무 곳도 안 다님

54-55  
1

2.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의 이름과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 소재지와 아동의 집이 서로 다른 동·읍·면에 위치합니까?

2-1. 기관명	(                         )
2-2. 주소	(           )도 (           )군 (           )읍·면
2-3. 아동 거주지와와 관계	① 기관과 같은 읍·면 ② 기관과 같은 군 내 다른 읍·면 ③ 기관과 다른 군

56  
2-3



<b>카드번호</b>	12-13
02	

10. 이 아이는 국가로부터 보육, 교육비 또는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 ① 전액 지원
- ② 일부 지원
- ③ 아무런 혜택 없음(질문 12로)

10-1. 지원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② 모·부자가정자녀    ③ 기타 저소득층
- ④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 ⑤ 세 번째 자녀        ⑥ 두 자녀가 이용
- ⑦ 장애아동            ⑧ 농어민자녀
- ⑨ 비해당

14

10

15

10-1

11. 지난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다니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지불한 월 평균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 중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비 또는 교육비는 얼마이고, 이외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구분	비용
11-1 총 비용	(            )천원
11-2 순 교육·보육비	(            )천원
11-3 추가 비용	(            )천원

16-18

11-1		천원
11-2		천원
11-3		천원

12.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안내는 아동은 비해당 처리합니다.)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전혀 부담이 안된다      ⑧ 비해당

25

12

13. 이 아이는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등원시 (            )	하원시 (            )
<b>【보기】</b>	
①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② 가족이 자가용으로
③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④ 자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⑤ 자녀 혼자 걸어서	⑥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⑦ 형제 자매와 걸어서	

26-27

13

등원 하원

14. 위의 방법으로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등원 (            )분, 하원 (            )분

28-31

14

등원 하원 분

15. 이 시설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름

15

15-1 가까운 곳에 안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차량 운행이 안 해서                      ② 운영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③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④ 환경이 열악해서  
 ⑤ 기타\_\_\_\_\_                                ⑧ 비해당

15-1

16. 이 아이를 현재 다니는 기관에 몇 살 때까지 보내시겠습니까? (\* 조사원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기록하십시오.)

아이가 만 (            )세 (            )개월 될 때까지

16  개월

16-1. (만5세 이전에 그만 보내겠다는 경우) 그러면 다른 곳에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 (\*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보내겠다는 미취학 아동은 비해당입니다.)  
 ① 아무 곳도 안 보냄    ② (다른) 보육시설                      ③ (다른) 유치원  
 ④ (다른) 선교원            ⑤ (다른) 반일제 이상 학원            ⑥ 특기교육 학원  
 ⑦ 기타(            )    ⑧ 비해당

16-1

17.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기교육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있으면 1, 없으면 0을 기록합니다.)

- 01) 미술            02) 음악    03) 체육    04) 과학    05) 수학  
 06) 한글(국어) 07) 컴퓨터 08) 교구이용프로그램    09) 외국어

17 


17-1 또한 받고 있는 각 특기교육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내고 있다면 월 평균 얼마를 냅니까?

(\*조사원은 오른쪽에 천 단위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            )원

17-1 

--	--	--	--

 천원  
 46-48

18.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18

18-1. 불만인 경우 가장 불만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9. 다음 중 부모가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울 때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동거 조부모  
 ② 동거 친인척  
 ③ 비동거 조부모  
 ④ 비동거 친인척  
 ⑤ 이웃 탁아모 등  
 ⑥ 형제자매  
 ⑦ 없음

19-1.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아이 집    ② 돌보는 사람 집    ③ 비해당

19

19-1

20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지불
- ② 부정기적으로 지불
- ③ 현물로 지불
- ④ 숙식만 제공
- ⑤ 지불 안 함
- ⑧ 비해당

20-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 주십시오.(※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월 (                      ) 원

53  
20

54-56  
20-1  천원

21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없음
농번기 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없음    ⑨ 비해당

57-58  
21

**IV. 앞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1. 현재 주변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이들을 보낼만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① 충분    ② 불충분	① 많음    ② 1~2곳	③ 없음    ④ 잘 모름	
	③ 잘 모름			
1-1. 보육시설				
1-2. 유치원				

1  
1-1   59-60  
1-2   61-62

2.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계속 또는 새로이)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 ① 보육시설에만 보낼 것임
- ② 유치원에만 보낼 것임
- ③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모두 보낼 것임
- ④ 아무 곳에도 안 보낼 것임
- ⑤ 잘 모르겠음
- ⑥ 기타(선교원, 선교원+유치원)

63  
2

3. (현재 아무데도 안 다니는 모든 미취학아동에게) 현재 아무데도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 비해당으로 기입하십시오.)

- ① 집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서 필요를 못 느낌.
- ② 보낼 필요는 느끼나 시설들이 집에서 너무 멀.
- ③ 보낼 필요는 느끼나 비용이 부담됨.
- ④ 보낼 필요는 느끼나 이용시간이 안 맞음
- ⑤ 기타
- ⑧ 비해당(어디 다님)

64  
3

4. (현재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모든 미취학아동에게) 현재 보육시설에 안 다닌다고 하였는데,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 비해당으로 기입하십시오.)

- ①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                      ② 집에서 멀고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③ 집에서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④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⑤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⑦ 시설설비가 안 좋아서                      ⑧ 아이가 너무 어려서
- ⑨ 필요를 못 느껴서                          ⑩ 기타                      (88)비해당(보육시설 다님)

65

4

5. (현재 유치원에 안 다니는 3세 이상 미취학아동에게 )현재 유치원에 안 다닌다고 하였는데,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4번 질문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 기입하십시오

(※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비해당으로 기입하십시오.)

6. 다음 중 자녀 양육지원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설치              ② 보육비용 지원              ③ 보육시설 이용시간 연장
- ④ 유치원 차량 및 중일반 운영              ⑤ 없음                          ⑥ 모름

66

5

67

6

7. 현재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필요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구분	① 상시 필요              ② 농번기 때 필요	③ 가끔 필요함            ④ 필요성 못 느낌
7-1. 하루 중 잠깐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7-2.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야간보육		
7-3. 1박 2일 등 24시간 보육		
7-4. 휴일에 이용하는 휴일보육		

7-1  68  
 7-2  69  
 7-3  70  
 7-4  71

8. 귀 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 ③ 불필요    ④ 모르겠음

72

8

9. 귀 면에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폐교    ② 마을회관                      ③ 농협 건물
- ④ 초등학교                                      ⑤ 기타(어디:                      )                      ⑥ 모름

73

9

10. 귀 면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타 읍면의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상시	농번기
	① 매우 필요 ③ 불필요한 편	② 필요한 편 ④ 전혀 불필요
10-1. 큰 보육시설 보육모가 마을로 와서 아동 보육하기		
10-2. 이동식 보육시설 차량이 와서 아동 보육하기		
10-3. 농어촌 주민에게 단기 교육을 시켜서 마을 아동 보육하기		

10-1		74-75
10-2		76-77
10-3		78-79

11.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초등학교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는 질문을 마치고,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대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V.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육**

카드번호 03 <sup>12-13</sup>

1. 이 초등학생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 )학년
2. 이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에서 오후 몇 시 정도에 집에 옵니까?  
 ① 오후 2시 이전 ② 오후 2-3시 ③ 오후 3-4시 ④ 오후 4-5시  
 ⑤ 오후 5-6시 ⑥ 오후 6이 이후
3. 이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가 끝나고 귀가한 후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① (사설)학원에 다님 ② 기관의 공부방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③ 집에서 과외를 받음 ④ 다른 곳에 가서 과외를 받음  
 ⑤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냄(주로 보호자 있음)  
 ⑥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냄(주로 보호자 없음) ⑦ 기타( )

1  14

15  
2

16  
3

3-1. 어디 다니는 경우 그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① 거주지와 동일한 면 ② 다른 인근 면 ③ 읍

17  
3-1

4. 현재 이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나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아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분	실시여부	이용여부
5-1. 특기적성 프로그램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이용 ② 미이용
5-2.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이용 ② 미이용

4-1   18-19  
4-2   20-21

5.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주당 몇 회 및 1회당 몇 시간입니까?

주당 \_\_\_\_\_ 회, 1회당 \_\_\_\_\_ 시간

22-23  
5   회 시간

6. 귀 마을에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공부방이나 보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질문 6-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

24  
6

6-1. (필요하다는 경우) 공부방이나 보육기관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 ② 학습지도가 필요해서  
 ③ 정서함양 및 사회성 교육 때문에 ④ 집의 학습환경 및 여건이 열악해서  
 ⑤ 기타( ) ⑧ 비해당

25  
6-1

7. 초등학생 자녀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없음
농번기 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없음

26-27  
7

8. 농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이나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_\_\_\_\_



부록 Ⅲ

시·도번호		시·군·구번호		일련번호		

## 군 지역 보육현황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농림부와 저희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대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농어촌 보육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담당부서명	(        ) 시·도 (        ) 군 (        ) 국 (        ) 과 (        ) 계(팀)
작성자 성명	조사표 작성일 (        )년 (        )월 (        )일

### 농림부 · 육아정책개발센터

1. 귀하는 현재 군내 보육시설 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2. 군에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 )개인데 이들 면지역에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면에 설치가 필요하다(질문 2-2로)     ② 일부 면에 설치가 필요하다(질문 2-2로).  
 ③ 필요하지 않다(질문 2-1로)     ④ 잘 모르겠다

2-1.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 그 이유는 ?

- ① 아동이 없음     ② 아동은 있으나 다른 읍면 소재 시설을 이용  
 ② 아동은 있으나 병설유치원을 이용     ④ 아동은 있으나 소수이어서 설치하기는 어려움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무엇:                                )

2-2. 필요하다면 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 ① 부지 비용 및 건축비 부담금     ② 적절한 부지 확보 어려움  
 ③ 군의 의지 부족     ④ 민간보육시설의 반대  
 ⑤ 기타( 무엇:                                )

3.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 ① 폐교
- ② 기존 초등학교
- ③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 ④ 농협건물
- ⑤ 기타( 무엇: )
- ⑥ 활용할 시설 없음.

4. 귀 군내 병설유치원 안에 정원 10명 내외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① 매우 가능
- ② 가능
- ③ 어려움(질문 4-1로)
- ④ 매우 어려움(질문 4-1로)

4-1. 어렵다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장 부처가 달라서 협조 어려움
- ② 기타( )

5. 귀하가 보시기에, 군내 아동이나 보호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곳에 √표 해주십시오.

- ① 보육료 지원이 부족하다
- ②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 등하원이 어렵다
- ③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 ④ 시설환경이 열악하다
- ⑤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 ⑥ 질 높은 교사가 적다
- ⑦ 기타
- ⑧ 별 불편 없을 것임

6. 귀하가 보시기에, 군내 보육시설 운영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모든 시설이 어려움을 느낀다
- ② 반 정도의 시설이 어려움을 느낀다
- ③ 일부 시설이 어려움을 느낀다
- ④ 소수 시설만이 어려움을 느낀다

6-1.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곳에 √표 해주십시오.

- ① 아동모집
- ② 차량운행
- ③ 교사 부족
- ④ 보육료 미납
- ⑤ 연령별 정원 준수
- ⑥ 설치 기준 준수
- ⑦ 기타( )

7. 현재 농어촌 지역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는 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교사수당, 차량운영비, 신·개축·보수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신다면 무엇인지 기록해 주십시오.

---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